

발간등록번호

71-7530000-000110-14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2019. 12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차 례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건표 .....	5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6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 .....	7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신고절차 .....	8
제1장 평생교육시설 일반 .....	9
I.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11
1. 용어의 정의 .....	11
2. 평생교육시설 명칭 사용 .....	12
3. 건축물의 용도 .....	13
4. 교육과정, 교육대상 .....	20
5. 평생교육사 배치 .....	22
6. 설치자 자격 .....	23
7. 학습비 반환 .....	24
8. 권한의 위임 .....	29
II. 지도·점검 .....	31
1. 업무처리 절차 .....	31
□ 각종 서식 .....	33
2. 과태료 부과 .....	51
□ 각종 서식 .....	56
제2장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신고 대상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77
I.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79
II.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87
III.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94
IV.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106
V.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115
VI.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123
VII.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124
□ 각종 서식 .....	133

제3장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 대상) .....	181
I. 총칙 .....	183
II. 등록 및 지정 .....	184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184
2. 설립주체 및 설치자 변경 .....	184
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시설·설비기준 .....	185
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등록 .....	186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	189
III. 학습비 징수관리 .....	204
IV. 「1년 3학기제」 운영 .....	205
V. 지도·감독 .....	209
VI. 행정사항 .....	212
□ 각종 서식 .....	213
제4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응답 사례 .....	261
I. 평생교육시설 총괄 .....	263
II. 교육과정 .....	267
III. 평생교육사 .....	271
IV. 명칭 .....	272
V. 교육장 및 시설 .....	273
VI.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274
VII.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282
VIII.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283
IX.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287
X.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291
XI.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293
제5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	297
제6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원 판례 .....	333
제7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	343
I. 평생교육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345
II.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	433
제8장 기타 참고자료 .....	435
I. 평생교육 체계도 .....	437
II.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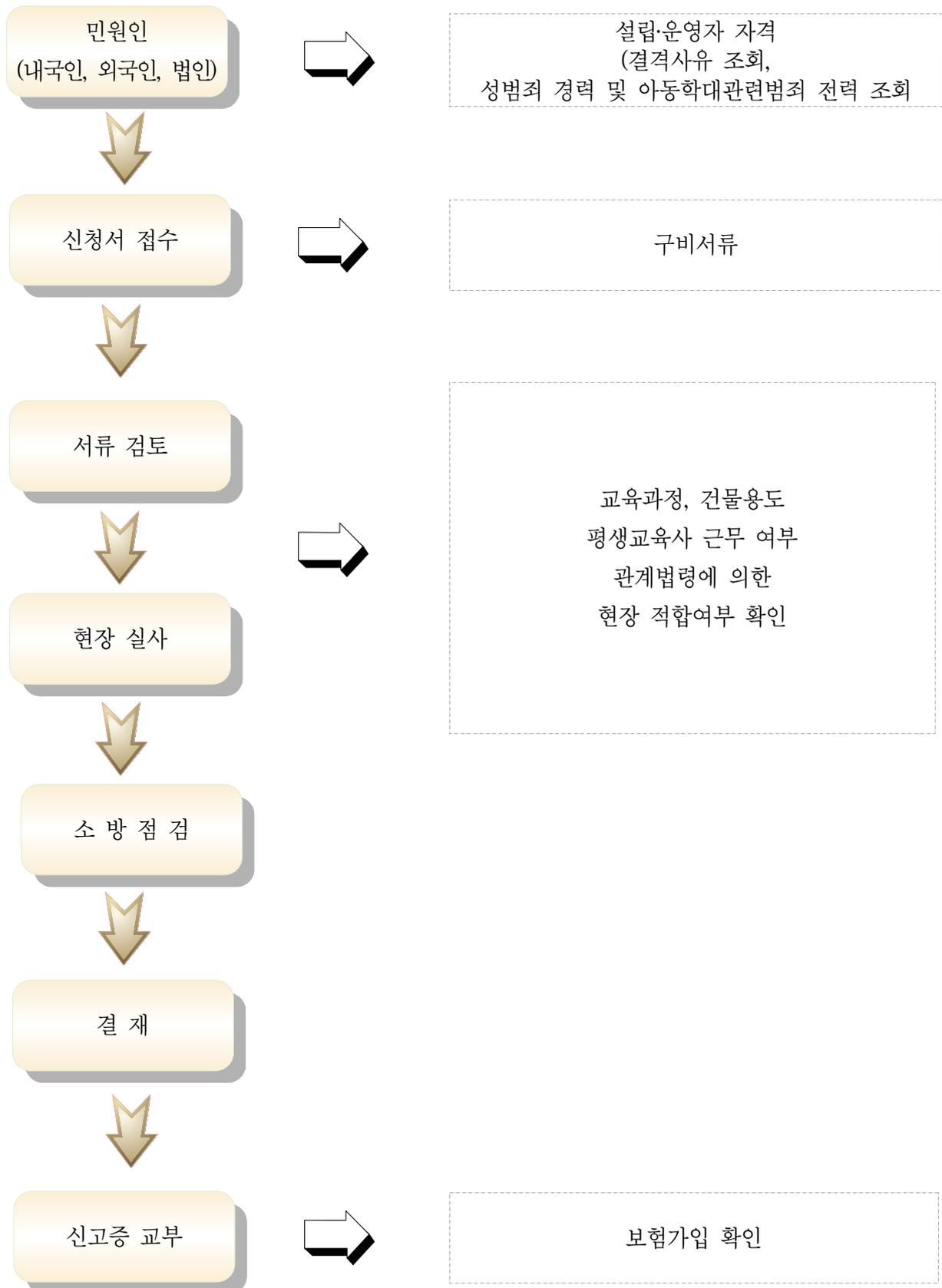
##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건표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법인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정관(학칙)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 비신고 대상)  -10인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 과정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 통신, CATV활용)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설치자 자격요건 ·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요건 ①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②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시민 사회 단체 ③회원수 300명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설치자 자격요건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 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설치자 자격요건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학습비 및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동영상강의 : 서버 등 2. 전화 : 전화 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 등도 가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비고	정보통신매체이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업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관련서류	신고요건 ①~③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④충족	신고요건 ①~④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⑤충족	신고요건 ①~④모두충족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시설유형		학력인정여부	설치요건	비고
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초·중등학교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보고	교육장에게 위임
	대학(교)	학력미인정	교육부장관에 보고	
②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초·중과정	교육감에 등록	교육장에게 위임
		고등과정	교육감에 등록	
③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학력인정	교육부장관 인가	
④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교육장에게 위임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교육부장관 인가	
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교육장에게 위임
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교육장에게 위임
⑦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교육장에게 위임
⑧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교육장에게 위임

##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



##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신고절차

민원인	신고서 작성				
접수·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종류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신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버</li> <li>- 자체소유: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서버 등</li> <li>- 임대계약: 관련계약서 징구 (콘텐츠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명부</li> <li>- 사업장내 직원 100명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li> <li>■ 마등록 시민단체인 경우</li> <li>1) 시민사회단체 회칙 (법인은 정관)</li> <li>2) 회원명부</li> <li>3) 최근 1년이상 공익 활동 실적</li> <li>■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기관등록증</li> <li>■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인력개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li> <li>■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이상</li> <li>■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li> <li>■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제출서류</li> <li>①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명단 및 자격증 사본)</li> <li>② 설치자 -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회의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본상 임원명단 -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li> <li>③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li> <li>④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li> <li>⑤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현황도)</li> </ul>				
변경신고	- 지위승계,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 및 설비, 평생교육사 등				
폐쇄신고	- 폐쇄신고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등)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법인인 경우 이사 및 임원 포함) - 전국 시·도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 결격사유 조회 의뢰(법인인 경우 이사 및 임원 포함)				
소방점검 의뢰	- 소방시설 점검 요청				
현장실사	- 면적 및 주요비품, 시설 등 확인, 검토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신고증 교부	- 신고증 교부 및 학습자 안전조치(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 여부 확인				

# 제1장 평생교육시설 일반





**I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1. 용어의 정의****가.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나. 평생교육기관이란?****<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평생교육법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다. 학습자**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경우 : 학습비를 받고 10인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 2. 평생교육시설 명칭사용

가. 평생교육시설 : 예시)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 ♣ 참고

민원인이 주식회사를 상징하는 단어인 ‘(주)’ 를 포함하여 평생교육시설 명칭에 ‘(주)○○평생교육원’, ‘(주)△△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민원인이 이를 사용을 주장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를 들어 반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주)0000’, ‘0000(주)’ 등의 표현은 한국사회에서는 주식회사를 표현하는 단어임. 『상법』에서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말하고(제169조),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이 있으며(제170조),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제19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제20조), 제23조에도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토록 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이나 학원의 명칭에 ‘(주)’ 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기도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학교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 : 학력인정 ○○고등학교

※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2830(2006.07.26)

라.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제외)의 명칭은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평생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3. 건축물의 용도

#### 가. 평생교육시설 용도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2)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 3) 해당 용도가 아닌 곳에 설치를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여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건축담당 공무원 및 건물소유자와 협의
- 4)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나.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

- 1)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은 원칙적으로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할 수 없음
- 2) 다만, 급수시설 및 화장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509(2018.11.2.)〉

질의 내용: 「평생교육법」 제35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시 건물 지하에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내용: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추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4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소관 교육장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건물 지하에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관한 최종 결정 역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교육청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참고 법령

### 1. 화장실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8]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4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채광 · 조명 · 환기 · 온습도

### ■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9]

####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호 관련)

##### 1.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인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조도(인공조명)

-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 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4.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 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3. 음용수

### ■ 먹는물관리법

-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 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 지사” 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①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3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 소음, 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개정 2010.6.30.>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시간대별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 성 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 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 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인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 4. 교육과정, 교육대상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해설】**

- 교육과정·방법·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실시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효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
- 특히, 보건·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함(참조-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업무 지침’, 2004. 3. 30)
- 교육대상은 불특정물 다수의 성인을 의미하며 유아, 장애인, 초·중·고 학생 대상이면 학원으로 등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수 없음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과정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법제36조에 따라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법제38조에 따라 해당 지식·인력개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 [참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해당 하는 사회복지사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미하므로 사회복지사 교습과정은 가능함
- 기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증)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의 학점을 인정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탁기관으로 봄
  - 단, 다른 법률과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이 연관된 것을 의미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시설로 이중 등록신고할 수 없음  
(○○직업전문학교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불가)
- 《교과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업무 지침’, 2004. 3. 30.》
  1. 목적 :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교육행정의 신뢰확보와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함
  2. 관련사항
    -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가능 여부 : 개설 불가
    - 이유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지(精緻)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임
    - ※ 특히, 보건복지부(한방65310-160, 침구시술 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회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음.
  -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관련 질의 회신, 교육과정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2270(2011.5.13.)
    1. 질의요지 :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시 기존 운영 중인 종교 관련 교과목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 신 :
      - 평생교육시설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을 운영할 수 없으나,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운영이 가능함
      -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이 없으며, 기존 운영 교과목이라 해도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의 계속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 단, 현재 운영 중인 교과목에 등록된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재 등록된 학생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종교 등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종교 등 해당 교과목에 기 등록된 학생의 교습은 가능하나, 신규 학생 모집은 불가
        - 해당 교과목의 폐지는 가능하나 신설은 불가
        - 기 등록된 학생의 학업 종료 시 해당 교과목 운영 금지



## 5.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법>

-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해설】

- 공공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이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적절한 평생교육사를 배치도록 하고, 민간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열악한 평생교육시설 난립에 따른 수강생들의 피해를 막고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

## 6. 설치자 자격

##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해설】

- 평생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평생교육기관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 강제화 및 학습비 반환 의무화를 통한 학습자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관련(법 제28조)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개인 및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결격사유 조회: 수형사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 선고사실 등
    -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공문시행하여 조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의무(역할)

- 평생교육시설별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특별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 운영
  - 지역에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 전문기술 습득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연계·협력체제 유지
  - 각급학교, 민간단체, 기업, 청소년·여성·노인교육기관 등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평생학습 진흥에 함께 노력
- 사회적·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주민  
을 위한 평생  
교육에 기여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4.>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7. 학습비 반환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해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718(2011.3.31.) -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규정 해석 알림〉

#### □ 학습비 징수기간의 해석

- ① 학습비 징수기간 :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해석사례① 참조)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 1개월 초과 :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 ② 1개월 산정 기준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해석사례② 참조)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 (역에 의한 계산은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될 수 있음)

※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예를 들어,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임

#### □ 학습비 반환 사례

#### 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해석사례③ 참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②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8주/15주)인 경우(해석사례④ 참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달’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까지로 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에 준하여 산출

#### ③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붙임] 해석 사례****① 학습비 징수기간**

- ① 수업기간이 3월 7일~4월 28일인 경우  
 1개월 이내 ⇒ 3월 7일~3월 30일, 4월 1일~4월 28일, 2회에 걸쳐 징수  
 1개월 초과 ⇒ 3월 7일~4월 28일분 학습비를 한 번에 징수
- ② 학습비 징수(수업)기간이 3월 7일~4월 6일 이내인 경우 ⇒ 1개월 이내  
 학습비 징수(수업)기간이 3월 7일~4월 8일 이후인 경우 ⇒ 1개월 초과

**② 역에 의한 계산**

- ① 학습비 징수(수업)기간이 2월 7일~5월 18일 ⇒ 3개월 12일로 계산  
 - 2월 7일~3월 6일 : 실제 일수 28일이나 1개월  
 - 3월 7일~4월 6일 : 실제 일수 31일이나 1개월  
 - 4월 7일~5월 6일 : 실제 일수 30일이나 1개월  
 - 5월 7일~5월 18일 : 실제 일수 12일
- ② 학습비 징수(수업)기간이 3월 7일~5월 5일 ⇒ 실제 60일이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 29일  
 - 3월 7일~4월 6일 : 실제 일수 31일이나 1개월  
 - 4월 7일~5월 5일 : 실제 일수 29일
- ③ 학습비 징수(수업)기간이 4월 7일~6월 5일 ⇒ 실제 60일이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 29일  
 - 4월 7일~5월 6일 : 실제 일수 30일이나 1개월  
 - 5월 7일~6월 5일 : 실제 일수 30일이나 29일로 계산(1개월이 안 되므로)

**③ 학습비 반환 사례(1개월 이하)**

학습비 징수(수업)기간 3월 7일~4월 6일, 학습비 10만원

- ① 3월 09일 학습 포기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100,000\text{원} \times \frac{2}{3} \Rightarrow 66,670\text{원}$  반환
- ② 3월 16일 학습 포기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100,000\text{원} \times \frac{1}{2} \Rightarrow 50,000\text{원}$  반환
- ③ 3월 22일 학습 포기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않음



#### ④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초과)

학습비 징수(수업)기간 3월 7일~6월 13일(3개월 7일), 학습비 30만원

1개월 학습비 약 92,780원, 마지막 7일은 약 21,650원

※ 계산법 : 300,000원 = [1개월 평균학습비×3개월] + (1개월 평균학습비× $\frac{7}{30}$ )

$$[1개월평균학습비] = 300,000원 \div 3 \frac{7}{30}$$

##### ① 3월 07일~ 4월 6일 중 포기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text{☞ } (92,780원 \times \frac{2}{3}) + 207,210원 = 269,060원 \text{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text{☞ } (92,780원 \times \frac{1}{2}) + 207,210원 = 253,600원 \text{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text{☞ } 207,210원 \text{ 반환}$$

※ 총 수업시간 : 1개월의 총 수업시간

##### ② 4월 7일~5월 6일 중 포기(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text{☞ } (92,780원 \times \frac{2}{3}) + 114,430원 = 176,280원 \text{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text{☞ } (92,780원 \times \frac{1}{2}) + 114,430원 = 160,820원 \text{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3월·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text{☞ } 114,430원 \text{ 반환}$$

※ 총 수업시간 : 1개월의 총 수업시간

## 8. 권한의 위임

**<평생교육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임)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4.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학력인정 포함)
15.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학교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해설】**

◆ 권한의 위임 구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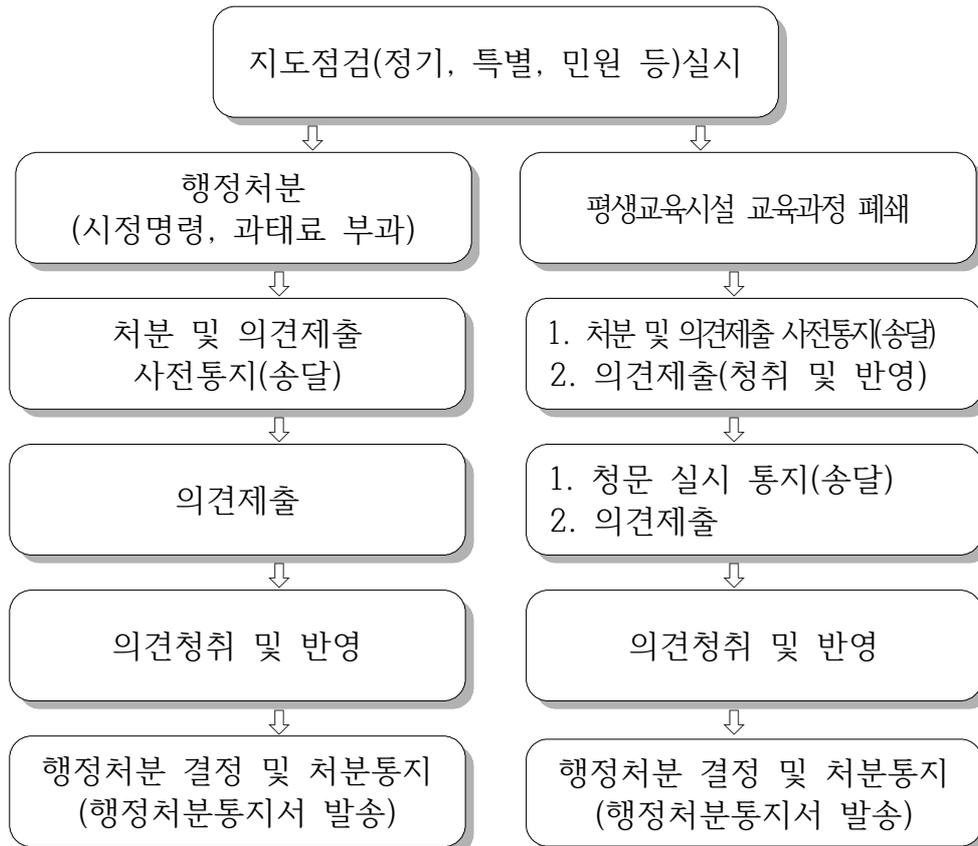
구분	인가, 등록, 신고	권한 (위임)	비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보고	학교장(관할청에 보고)	법 제3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교육장(초·중학교)	법 제31조
		교육감(고등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교육장(초·중학교)	법 제31조
		교육감(고등학교)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	교육부장관	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장	법 제33조제2항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	교육부장관	법 제33조제3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장	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장	법 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장	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장	법 제38조

◆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중) 등록, 원격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폐쇄, 변경등록·신고에 관한 사무

## II 지도·점검

### 1. 업무처리 절차



#### □ 관련 규정

#####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주요내용

사전통지 내용	청문대상 및 통지기한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③”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대상 : 평생교육시설 인가 또는 등록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 폐쇄 할 경우 - 통지기한 : 청문시작 10일전 까지

## □ 각종 서식

1.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표 .....	34
2.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안) .....	35
3.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	36
4.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39
5.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재실시 및 공고 .....	40
6.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42
7.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	43
8.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	46
9.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	48
10.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명단 알림 .....	50



## 【서식 2】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평생교육원 행정처분(안)

1. 관련: ○○○○○○○과 - ○○(20○○.○.○.)
2.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시설명 (등록번호)	설 립 운영자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비고
○○평생교육원 (제0000호)	○○○	- 학습비 징수 후 무단폐쇄	등록취소	

붙임 출장복명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서식 3】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1. 관련: ○○○○○○○과 - ○○(20○.○.○.)
2.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평생교육원에서는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에, 「평생교육법」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가. 건 명: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 나. 의견제출기일: 20○.○.○.(○) 14:00까지
  - 다. 청문일시: 20○.○.○.(○) 14:00
  - 라. 청문장소: 2층 소회의실
  - 마. 청문주재자: ○○교육지원청 ○○○○○○○과 행정6급 ○○○

시설명	설립자	시설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비고
		설립자주소			
○○평생교육원	○○○	○○시 ○○구 ○동 ○번지 ○층 ○호	- 학습비 징수 후 무단폐쇄	- 등록취소	
		○○시 ○○구 ○동 ○번지 ○층 ○호			

-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Tip.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주재자)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외부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우선 선정하여 청문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선상의 직원은 청문주재의 제척사항에 해당되므로 다른 소속 직원 중 당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주재자로 선정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안)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다.</p> <p>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p> <p>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small>「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다.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small>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5】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재 실시 및 공고

1. 관련: ○○○○○○과 - ○○(20○.○.○.)
2. 「평생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대상 운영자에게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청문 일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 아울러, 공시송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타시·도 지역교육지원청에 공시송달 게시 협조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 가. 건 명: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 나. 의견제출기한: 20○.○.○(○) 14:00까지
  - 다. 청문일시: 20○.○.○(○) 14:00
  - 라. 청문장소: 2층 소회의실

시설명	설립자	시설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비고
		설립자주소			
○○평생교육원	○○○	○○시 ○○구 ○동 ○번지 ○층 ○호	- 학습비 징수 후 무단폐쇄	- 등록취소	
		○○시 ○○구 ○동 ○번지 ○층 ○호			

-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Tip.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공고 제○○호

##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대상 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1. 청문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립자	위치	공시송달사유
○○평생교육원	○○○	경기도 ○○시 ○○로 ○○길	수취인불명-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습비 징수 후 무단 폐쇄, 강사수당 미지급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4.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42조
5. 청문실시 :
  -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교육지원청 ○○○○과
  - ② 일 시 : 20○년 ○월 ○일(○) 14:00
  - ③ 장 소 : 경기도○○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교육지원청 ○○○○과 ○○담당 ○○○
6. 공고기간 : 20○. ○. ○. ~ 20○. ○. ○.
7.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 불임과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 등록취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지원청 ○○○○과 (☎ 031-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 6】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처 참조

제 목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생교육법」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3. 우편물이 반송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서식 7】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결과보고

1. 관련: ○○○○○○과 - ○○(20○.○.○.)
2.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당사자에게 통지 및 공시송달 하였으나, 의견서 미제출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아,
3.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주재자의 청문절차를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청 문 조 서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열람·확인자 성명 :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margin-top: 10px;"> <span>청문주재자 성명 :</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서식 8】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1. 관련: ○○○○○○○과 - ○○(20○.○.○.)
2.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4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 ○:○부터 청문을 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20○.○.○.)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없어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처리 하고,
3. 「평생교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하고자 합니다.

시설명	설립자	주민등록번호	시설위치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평생교육원	○○○	700000-1234567	○○시 ○○로 ○○번길, ○층	등록취소	20○.○.○	- 학습비 징수 후 무단폐쇄

붙임 행정처분통지서(안)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5,6)

## 행정처분통지서(안)

문서번호: ○○○○과-0000호(0000. 00. 00.)

수 신: ○○평생교육원 설치자 귀하

제 목: 행정처분 알림

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사실이 있어 「평생교육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평생교육시설명	○○평생교육원	설치자	○○○
위치	경기도 ○○시 ○○대로○○번길 ○, ○○○호		
위반사항	학습지 징수 후 무단폐쇄		
처분내용	등록취소		
시행일	0000. 00. 00.		
알리는 사항	<p>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서면 또는 온라인: <a href="http://www.simpan.go.kr">www.simpan.go.kr</a>)할 수 있음.</p> <p>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p> <p>※ 문의처(○○○○과 담당 ☎031-000-0000)</p>		

0000. 00. 00.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 9】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귀하(○○시 ○○로 ○○길 ○층)

제 목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관련: ○○○○○○○과 - ○○(20○○.○.○.)
2. 귀하가 등록설립하여 운영해 온 ○○평생교육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하고자 「평생교육법」 제4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 ○:○부터 청문실시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20○○.○.○.)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없어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한 바,
3. 「평생교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4. 귀하께서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평생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으며,
5. 아울러,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 행 정 처 분 통 지 서

문서번호: ○○○○과-0000호(0000. 00. 00.)

수 신: ○○평생교육원 설치자 귀하

제 목: 행정처분 알림

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사실이 있어 「평생교육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평생교육시설명	○○평생교육원	설치자	○○○
위치	경기도 ○○시 ○○대로○○번길 ○, ○○○호		
위반사항	학습지 징수 후 무단폐쇄		
처분내용	등록취소		
시행일	0000. 00. 00.		
알리는사항	<p>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서면 또는 온라인: <a href="http://www.simpan.go.kr">www.simpan.go.kr</a>)할 수 있음.</p> <p>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p> <p>※ 문의처(○○○○과 담당 ☎031-000-0000)</p>		
<p>0000. 00. 00.</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p>			



【서식 10】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 목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명단 알림

「평생교육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된 평생교육시설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명	설립자	생년월일	시설위치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평생 교육원	○○○	0000.00.00	○○시 ○○로 ○○번길, ○층	등록취소	20○.○.○	-학습비 징수 후 무단 폐쇄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 전국시도교육청 교육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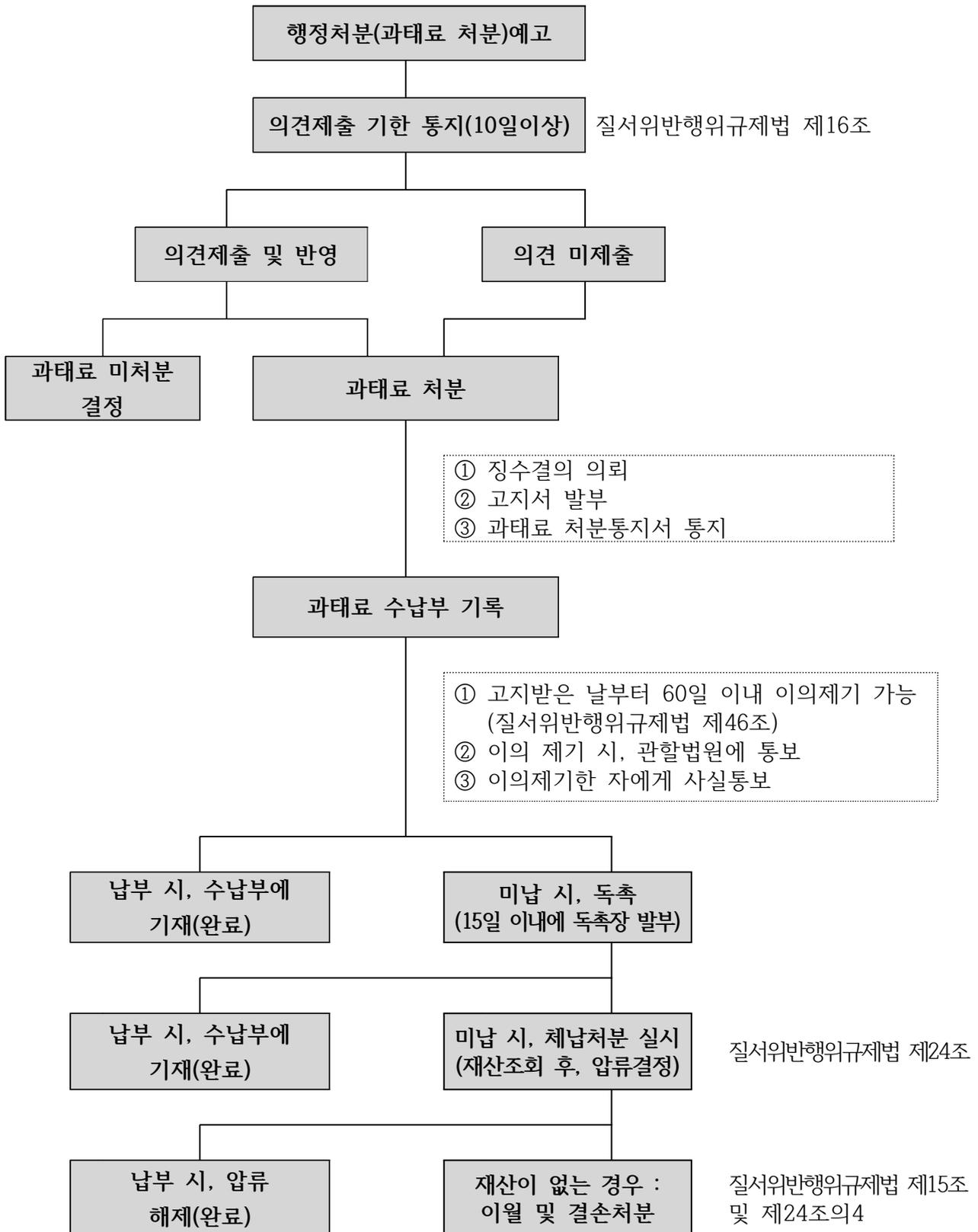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 2.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납부기간은 통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한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관련 규정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과태료의 시효 등

### ● 과태료 시효

-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 ●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 감면조건 : 감면대상 중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 당사자 제외)

- 감면율 : 50/100 이내

### ●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의 법원통보 및 재판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함

- 법원이 재판을 하고 필요시 행정청의 출석요구함, 재판 비용은 선고를 받은자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함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1호	100	200	400
나.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1호의2			
1) 반환할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500		
라.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마.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00 200 400		
사.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00 200 400		
아.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00 200 400		
자.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인력개발 사업과 관련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 6개월 이상 신고를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00 200 400		
차.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3호	100	200	300
카.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진흥위원회, 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또는 시·도문해교육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4호	500		



## □ 각종 서식

1. 평생교육시설 과태료 처분(안) .....	57
2. 평생교육시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 .....	58
3. 평생교육시설 과태료 부과(내부결재) .....	61
4.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알림 .....	64
5. 과태료 부과대상 징수결정 요청 .....	65
6. 과태료 납부 독촉 .....	66
7.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압류 등록촉탁(내부결재) .....	68
8.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압류(변경) 등록 촉탁 .....	71
9. 압류통지 .....	72
10.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압류 해제 의뢰 .....	73
11. 압류해제 통지 .....	76

## 【서식 1】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평생교육시설 과태료 처분(안)

1. 관련: ○○○○○○○과 - ○(20○○.○.○.)
2. 「평생교육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문사는 이를 태만히 하고 20○○.00.00.부터 현재까지 1개월 동안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바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하고자 합니다.

시설명 (등록번호)	설 립 운영자	위 반 사 항	과태료	비고
○○신문사 (제0000호)	○○○	- 설치신고 태만	일금일백만원 (₩1,000,000)	

붙임 출장복명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서식 2】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평생교육원 설립·운영자 귀하 (○○시 ○○구 ○○길)

제 목 평생교육시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7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평생교육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만히 한 사실로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20○.○.○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과태료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5,6)

## 과태료사전통지서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평생교육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0000. 00. 00.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시 설 명	○○평생교육원
	성 명	○ ○ ○
	주 소	○○도 ○○시 ○○대로○○번길 ○, ○○○호
2. 과태료	부 과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학습비 미 반환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위반)
	금 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경기도○○교육지원청	
4. 과태료의 감경	<p>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p> <p>나.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됩니다.</p> <p>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각 호</p> <p style="margin-left: 20px;">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p> <p style="margin-left: 20px;">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p> <p style="margin-left: 20px;">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p> <p style="margin-left: 20px;">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p> <p style="margin-left: 20px;">⑤ 미성년자</p> <p>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p> <p>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타서식 인용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3】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신문사 과태료 부과

## 1. 관련

가. ○○○○○○○과 - ○(20○○.○.○.)

나.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2.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태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신문사에 대하여 20○○.○.○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동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관계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안) 1부.  
2. 과태료 납부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5,6)



## 과태료 처분 통지서(안)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하였으며 법 위반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반일시 : 0000년 00월 00일  
 나. 위반내용 : 학습비 미 반환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금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0000년 00월 00일까지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 회계금고(000-0000-0000-00)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0000년 00월 00일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부과고지서)의 명시해야할 내용이 일부 없어 타서식 인용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납부금액					
일금			원정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 회계금고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납부자 ○○○ 귀하					

영수필통지서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 번호	C	
납부금액					
일금			원정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징수관 귀하 납 부 기 관 수입금출납원   경기도교육청					

영수증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 번호	C	
납부금액					
일금			원정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부자 ○○○ 귀하					



【서식 4】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신문사 대표 ○○○ 귀하 (○○시 ○○구 ○○길)

제 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알림

1. 관련: ○○○○○○○과 - ○(20○○.○.○.)
2. 「평생교육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사실로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고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금액의 5%가 가산되고,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되는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1부.  
2.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 【서식 5】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교현장지원과장

제 목 과태료 부과대상 징수결정 요청(○○신문사)

##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8조(징수결정 기준)

다. ○○○○○○○과 - ○○(20○○.○.○.)

2.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태만히 한 아래 기관의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니 징수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

기관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과태료	납부기한
○○신문사	○○○	○○시 ○○로○○번길○○,○층	일금팔십만원 (₩800,000)	20○○.○.○

나. 처분 과태료는 금1,000,000원이나, 행정처분 의견제출기간(20○○.○.○ ~ ○.○)내 납부시 20% 감면조치에 따라 금800,000원 징수결정을 요청함.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서식 6】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신문사 대표 ○○○ 귀하 (○○시 ○○구 ○○길)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

1. 관련근거

가.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독촉)

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독촉 등)

2. 평생교육시설의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어 2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통지 하였으나 납부 기간이 경과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금액(단위:원)			입금계좌	비고
		과태료	가산금	합계		
○○신문사 (○○○)	20○○.○.○ ~ 20○○.○.○	1,000,000	50,000	1,050,000	농협 000-00-000000 예금주:○○교육지원청	

붙임 1. 과태료 납부 독촉장 1부.

2. 납부통지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5,6)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시설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초 납부기한	
납 부 계 좌		농협 000-000-00000 (예금주: ○○교육지원청)		

위 시설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20○○년 ○월 ○일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0○○년 ○월 ○일

경기도○○교육지원청 징수관 (인)



【서식 7】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압류 등록촉탁

1. 관련

가. 「국세징수법」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나.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평생교육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사실로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재산압류 등록촉탁(안) 1부.

2. 압류조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5,6)

## 자동차 압류 등록촉탁(안)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변경)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

재산의 표시		
사용의 본거지		
재산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등록의 목적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록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7.4.10.>

<b>압류조서</b>					
체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연월일		2000년 0월 0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예) 자동차 00저 0000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p>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0년 0월 0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인)</p>					

## 【서식 8】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시장(교통과장)  
(경유)

제 목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 등록축탁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변경)등록을 축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

재산의 표시		
사용의 본거지		
재산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록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첨 부 서 류		압류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축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서식 9】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신문사 대표 ○○○ 귀하

제 목 압류 통지

1. 관련: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 (압류)
2. 「평생교육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체납하여 귀하의 재산 압류사항을 통지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자동차 ○○저 ○○○○		
압류일자		20○○년 ○월 ○일		
압류조서작성일자		20○○년 ○월 ○일		
압류사유		과태료 확정 전 보전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서식 10】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시장

제 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압류 해제 의뢰

### 1. 관련

가. ○○○○○○○과 - ○(20○.○.○.)

나.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2. 과태료를 체납하여 재산(자동차)이 압류된 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재산압류 해제를 의뢰합니다.

붙임 1. 압류말소 등록촉탁서 1부.

2. 압류해제조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1997.4.10.>

문서번호		<b>국세채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 압류말소 등록촉탁서</b>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2000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 과 연월일		2000년 ○월 ○일 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채납액 징수 완납에 의한 압류말소등록			
<p>(관할관서) [○○시장 (교통행정과장) 등] 귀중</p> <p style="text-align: center;">200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교육감 촉탁공무원</p> <p style="text-align: center;"><b>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b></p>					
부속서류		압류해제 조서 통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사	
		기입		대조확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b>압류해제조서</b>				
채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압류연월일		20〇〇년 〇월 〇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p>위와 같이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로 인하여 20〇〇년 〇월 〇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〇〇년 〇월 〇일</p> <p style="text-align: right;">소속 : 직 : 성명 :</p>				

【서식 11】

「현장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신문사 대표 ○○○ 귀하

제 목 압류해제 통지

1. 관련: 「국세징수법」 제54조(압류의 해제)
2.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아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완납되었기에 20○○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사람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체납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5,6)

## 제2장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I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1.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평생교육법>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 가. 의의

#### ■ 원격교육의 개념

-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 평생교육법에서는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비교

시설유형(명칭)	학력인정여부	설치요건	구별기준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학력미인정	신고대상 (교육감 신고)	-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 실시 - 10인 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특정인을 대상으로 함은 특정 직업종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당사 직원교육 이나, 회원교육을 의미함) -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학력인정	인가대상 (교육부장관 인가)	-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 인정 -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 국내의 개인·단체 등이 외국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제외

나. 해설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됨.(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
- ④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인터넷전화 또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신고지 관할의 문제

- 영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고
  - ※ 주된 시설의 범위 : 원격교육에 필요한 주된 장비(컴퓨터, 전화 등)를 갖추어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제공하는 곳을 의미함
- 현재는 메인서버를 위탁관리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주 하는 곳이 주된 사무소임. 즉 신고지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 제공 하는 곳을 의미함

## 2.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 가. 신규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4.6.30 >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6.30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4.7.28>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2) 업무흐름 및 처리방법

원격형태 평생 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별,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시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설비현황 ①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서버현황(설비 현황표에 포함 작성, 별지 작성 가능) ■ 자체소유 : 호스트서버, 웹서버, 이미지서버, DB서버 등 ☞ 설비 현황표에 서버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 서버에 관한 사항 확인) ② 기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 도메인계약서(도메인등록확인증) ■ 서버임대계약서 ☞ 자체서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진이나 세금계산서 임대서버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 콘텐츠 계약서 (자체 콘텐츠 개발한 시설 제외) ☞ 서버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콘텐츠가 없는 경우 콘텐츠 구매 계약서나 임대계약서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	
	설치자확인서류	개인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 정관(학칙)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학교인 경우 정관 대신 학칙 제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기타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담당자확인	결격사유 조회	① 나이스(시스템)-결격설립자목록 조회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조회 -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처리 ③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조회의뢰 공문 발송 ※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 및 임원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평생교육시설은 신고증 수령 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가입 기준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처리 절차	서류검토->조회->현장실사 및 소방점검요청->결제->신고증교부		

## 나. 변경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 2) 업무흐름 및 처리방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설치자 지위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계인수서</li> <li>-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li> <li>-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② 정관</li> <li>③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ul> </li> <li>-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li>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li> </ul>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위치도</li> <li>- 시설배치도</li>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ul>
	교육과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교육과정 편성표</li> </ul>
	학습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습비 내역서)</li> </ul>
	시설·설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비 현황표</li> </ul>
	평생교육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li> </ul>
	업무처리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위승계 : 서류검토→ 결격사유 조회(신규신고시 동일)→ 결재→ 신고증 교부</li> <li>② 위치변경 :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 결재→ 신고증 교부</li> <li>③ 기타 :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실사)→ 결재→ 신고증 교부</li> </ul>



### 다. 폐쇄 신고

#### 1)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업무흐름 및 처리 방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법인인 경우	- 신분증 -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 위임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순서	서류검토-> 결재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 II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1.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평생교육법>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가. 의의

#####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 나. 해설

#####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① 설치·운영자 :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1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
  - 일정규모 :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 종업원 : 정규 직원 이외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총 직원

※ 설치 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된 이유

- 사업장부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 ② 대상 :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

- 고객 등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의 학습자 등



##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 가. 신규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준용규정)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2) 업무 흐름 및 처리방법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시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임대인 경우 : 관련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제출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
	설치자 확인서류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본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직원 명부	-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① 건강보험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② 고용보험납부확인원 ③ 법인인감이 날인된 직원명부(이름, 생년월일 등)
	기타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담당자확인	결격사유 조회	① 나이스(시스템)-결격설립자목록 조회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조회 -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처리 ③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조회의뢰 공문 발송 ※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 및 임원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평생교육시설은 신고증 수령 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가입 기준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처리 절차	서류검토-> 조회->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요청-> 결재-> 신고증 교부	



## 나. 변경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준용규정)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등)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2) 업무흐름 및 처리방법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설치자 지위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계인수서</li> <li>-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li> <li>-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② 정관</li> <li>③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ul> </li> <li>-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li>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li> </ul>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위치도,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위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교육과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교육과정 편성표</li> </ul>
	학습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습비 내역서)</li> </ul>
	시설·설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비 현황표</li> </ul>
	평생교육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li> </ul>
	업무처리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위승계 : 서류검토-&gt; 결격사유 조회(신규신고시 동일)-&gt; 결재-&gt; 신고증 교부</li> <li>② 위치변경 : 서류검토-&gt;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gt; 결재-&gt; 신고증 교부</li> <li>③ 기타 : 서류검토-&gt; (필요시 현장 실사)-&gt; 결재-&gt; 신고증 교부</li> </ul>

**다. 폐쇄 신고**

## 1)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업무흐름 및 처리 방법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법인인 경우	- 신분증 -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 위임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순서	서류검토-> 결재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 III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1.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평생교육법>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가. 의의

##### ■ 시민사회단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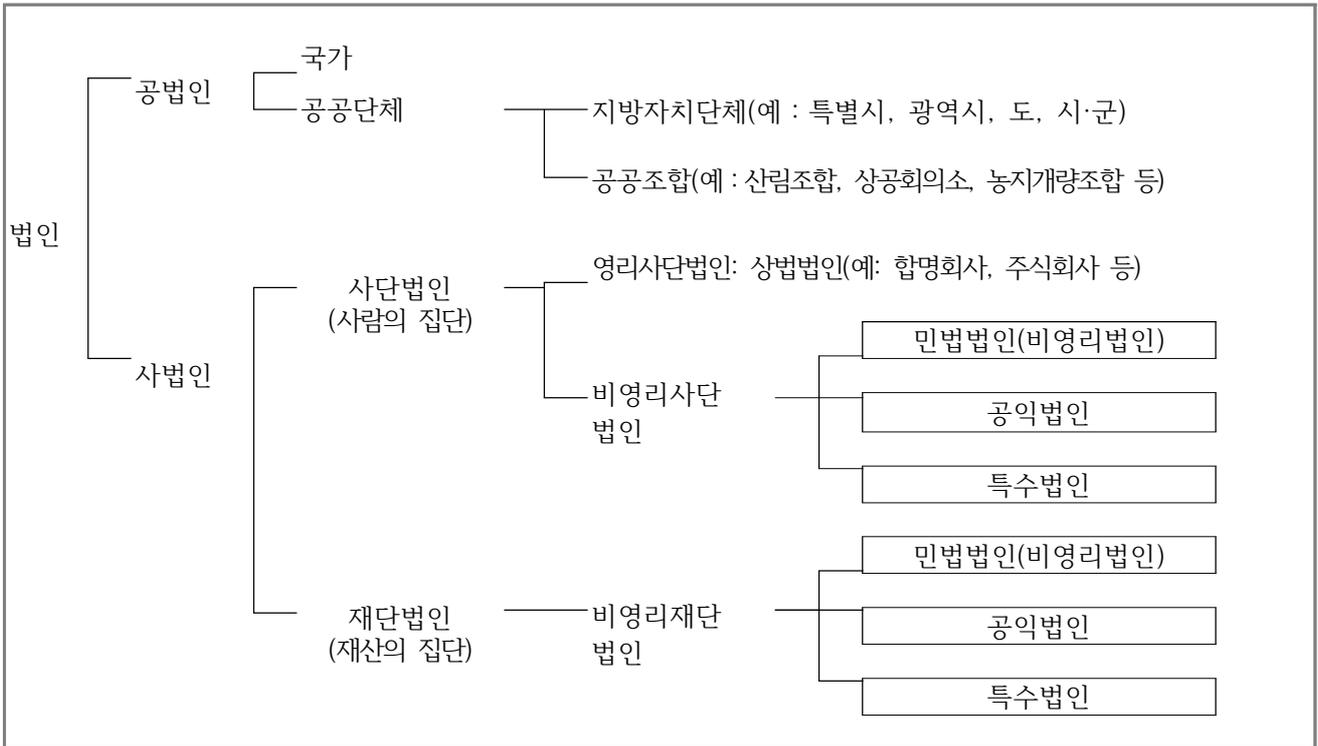
-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또는 시민사회단체로 불린다.

##### ■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 관련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시민사회단체와 차이점 :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NGO)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나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로 구분한다면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나. 법인의 정의

### 1) 법인의 형태



### 2)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구분	근거법	내 용
상법법인	상법 제169조	- 상법에 근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사) -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되는 법인(통상 비영리법인으로 칭함) -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 ex)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약칭:공익법인법) 제2조	-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인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특수법인	각종개별법	-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



### 3) 법인의 종류

분 류 기 준			내 용	
영리성 여부	근거법	성 격		
영리법인	상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사)	- 모든 사단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으므로 이윤이 귀속될 자가 없어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목적 아닌 법인 (실무상 「비영리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자체의 목적을 추구	
		공익목적이나 공익법인법 미적용 법인 (실무상 「비영리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나 공익법인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의 존재이유는 공익법인법의 적용 범위가 열거규정이기 때문	
	민법 및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적용법인 (법률상, 실무상 「공익법인」)	- 학술, 장학, 자선 법인 - 공익법인법이 보완적으로 적용되나 광의로는 민법법인에 속함.	
	특수법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허가 되는 법인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 의료법인(의료법) - 기타(각 근거법)	
		특별법으로 국가등이 직접 설립하는 법인 (좁은의미의 「특수법인」)	-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한국은행(한국은행법) 등 - 국가의 특별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설립	

대부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으로 인정

### 다. 해설

■ 전문인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 (상시근로자)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근무일, 근로시간 등 확인)

■ 신고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 (평생교육프로그램운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6.30.>

-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법인
-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 ③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①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및 확인방법 (증명서류 표 참고)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범위 및 확인사항 (증명서류)	<p>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만 제출(담당공무원이 원본 확인)</li> </ul> <p>2.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정관(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운영·확인),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 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할 것임</li> <li>-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서나 예산서 상의 공익적 활동사업</li> <li>· 공익적 행사 사진, 홍보책자, 기타 유인물</li> <li>· 신문보도 등 다양한 자료</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lt;민법&gt;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p> <p>&lt;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gt;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p> <p>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div>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평생교육법 해설서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명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과 공익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은 자동적으로 시민사회단체로 잘못 해석 될 소지가 큼.</li> <li>· 상법상 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과 특별법을 근거로 한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중앙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이며, 이들 법인들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등을 꾀하는 이익단체 또는 직능단체(예: 의사회, 변호사회)의 성격을 갖는 것이 대부분임.</li> <li>- 예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주유소협회,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사)한국바둑협회, (사)한국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사)한국항만물류협회, (사)한국모델협회, (사)한국미용산업협회,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사)인씨엠예술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도 같은 논리임. 공익법인에는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순수학문연구법인, 공중 시설관리법인 등 시민사회단체로 보기 어려운 법인들도 많이 있음. 그러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라 하여 신청 자격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적으로 시민사회단체로 인정하여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함.</li> </ul>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범위 및 확인사항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임의단체일 경우</li> <li>-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만 제출(담당공무원이 원본 확인)</li> </ul>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또는 임의단체이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할 수 있음.</li> </ul>
③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범위 및 확인사항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임의단체)</li> <li>-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임.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운영·확인)</li> </ul>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나 임의단체 중에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며,</li> <li>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한정된 이유는,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임.</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호~제3호 교육과정은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li> </ul>

②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③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 참고

- 한국에서 오래된 시민사회단체
  - 서울YMCA,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불교청년회,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대구YMCA, 대한광업회, 대한상공회의소 청주, 천도교청년회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가능?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195(2011.7.11.)

- 질의 요지: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 답변 요지: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이 지부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5조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할 수 있음.
- 답변 해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은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이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등으로만 등록을 하게 될 뿐이고,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나 지부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소나 지부 등을 비영리민간단체와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라 할 수 없음.
  -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요건은 계속성 및 공익성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안전 및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한임을 고려할 때, 주무관청에 의해 등록된 지부라 하더라도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할 수 있음.



## 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절차

### 가. 신규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준용규정)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 2) 업무 흐름 및 처리 방법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시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임대인 경우 : 관련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제출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
	설치자 확인서류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본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민사회단체 증명서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및 확인방법(증명서류 표 참고)
	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5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
	기타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담당자확인	결격사유 조회	① 나이스(시스템)-결격설립자목록 조회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조회 -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처리 ③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조회의뢰 공문 발송 ※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 및 임원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평생교육시설은 신고증 수령 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가입 기준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처리 절차	서류검토-> 조회->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요청-> 결재-> 신고증 교부	

## 나. 변경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준용규정)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등)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2) 업무 흐름 및 처리방법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 토	설치자 지위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계인수서</li> <li>-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li> <li>-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② 정관</li> <li>③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li>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li> </ul> </li> <li>-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li>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li> </ul>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정관, 회칙, 이사회 회의록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위치도,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위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교육과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교육과정 편성표</li> </ul>
	학습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습비 내역서)</li> </ul>
	시설·설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비 현황표</li> </ul>
	평생교육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li> </ul>
	업무처리 리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위승계 : 서류검토-&gt; 결격사유 조회(신규신고시 동일)-&gt; 결재-&gt; 신고증 교부</li> <li>② 위치변경 : 서류검토-&gt;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gt; 결재-&gt; 신고증 교부</li> <li>③ 기타 : 서류검토-&gt; (필요시 현장 실사)-&gt; 결재-&gt; 신고증 교부</li> </ul>

**다. 폐쇄 신고**

## 1)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업무 흐름 및 처리방법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법인인 경우	- 신분증 -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업무처리 순서	서류검토-> 결재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IV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가. 의의

#####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2008 교과부 해설자료)

#### 나. 해설

- 전문인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상시근로자)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근무일, 근로시간 등 확인)
- 언론기관 범위 및 확인방법
  - 언론기관의 범위
    -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증” 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주의! “신문 등의 언론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잡지사업 등록증” 확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주의! “잡지 등의 언론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③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확인

-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

**<방송법 제2조>**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방송: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

④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확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등록 등)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 가. 신규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준용규정)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2) 업무 흐름 및 처리 방법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시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임대인 경우 : 관련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제출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
	설치자 확인서류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 여부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본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제 포함 제출)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명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명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언론기관 증명서류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잡지사업 등록증,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증,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제출 ※ 언론기관 부설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유선방송, 음악방송, 전광판 방송사업 등
	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5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
	기타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담당자확인	결격사유 조회	① 나이스(시스템)-결격설립자목록 조회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조회 -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처리 ③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조회의뢰 공문 발송 ※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 및 임원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평생교육시설은 신고증 수령 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가입 기준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처리 절차	서류검토-> 조회->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요청-> 결재-> 신고증 교부	

## 나. 변경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준용규정)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등)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2) 업무 흐름 및 처리 방법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설치자 지위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계인수서</li> <li>-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li> <li>-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② 정관</li> <li>③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li>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li> </ul> </li> <li>-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li>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li> </ul>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위치도,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위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교육과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교육과정 편성표</li> </ul>
	학습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습비 내역서)</li> </ul>
	시설·설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비 현황표</li> </ul>
	평생교육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li> </ul>
	업무처리 순서	



## 다. 폐쇄 신고

### 1)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

### 2) 업무흐름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법인인 경우	- 신분증 -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순서	서류검토-> 결재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 V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1.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가. 의의

#####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나. 해설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근무일, 근로시간 등 확인)
- 자격 확인 방법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사업내용 확인(평생교육사업 등)
  -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 ☞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및 실적증명원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 기준에 따라 확인 가능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의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할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참고 :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산업교육기관 :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 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 2.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 가. 신규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준용규정)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2) 업무 흐름 및 처리 방법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수료와 상별,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시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임대인 경우 : 관련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제출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	
설치자 확인서류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본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식·인력개발 설치요건 증명서류	- 1년 이상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교육 실적 제출 (결산서 등 교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식·인력개발 사업이 주된 목적 여부 확인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상태표	
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5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	
기타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담당자확인	결격사유 조회	① 나이스(시스템)-결격설립자목록 조회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조회 -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처리 ③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조회의뢰 공문 발송 ※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 및 임원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처리 절차	- 평생교육시설은 신고증 수령 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가입 기준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서류검토-> 조회->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요청-> 결재-> 신고증 교부	

## 나. 변경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의2(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준용규정)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등)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2) 업무 흐름 및 처리 방법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처리기간:10일)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설치자 지위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계인수서</li> <li>-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정관</li> <li>-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l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li> <li>-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li> <li>- 임대차계약서</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li> </ul>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위치도,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위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교육과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교육과정 편성표</li> </ul>
	학습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칙(신규 대조표 포함)</li> <li>-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습비 내역서)</li> </ul>
	시설·설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비 현황표</li> </ul>
	평생교육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li> </ul>
	업무처리 순서	① 지위승계 : 서류검토→ 결격사유 조회(신규신고시 동일)→ 결재→ 신고증 교부 ② 위치변경 :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 결재→ 신고증 교부 ③ 기타 :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 실사)→ 결재→ 신고증 교부



### 다. 폐쇄 신고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준용규정)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업무 흐름 및 처리방법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신분증 -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 위임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순서	서류검토-> 결재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 VI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2. 의의

- 각급 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
-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 각급 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 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 3. 보고 방법

#### ■ 설치절차 : 관할청에 보고제

- 보고절차 : 학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 ■ 설치대상 : 각급학교

-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 설치보고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명칭, 목적, 위치, 운영규칙(별지 기재), 교육과정(별지 기재),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현황(별지 기재), 평생교육사 배치계획, 개설년월일 등
- 운영규칙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운영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

## VII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가.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나. 의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시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 설비 기준을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구분

시설유형 (명칭)	구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가. 신규 등록

#### 1)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유형·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등록절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등록 요건 검토 → 등록증 교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표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세부 기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 다.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가.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 나.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비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 나. 등록 시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

- 설치자 : 법인, 개인

※ 설치자의 자격: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명칭, 목적, 위치 등 기재사항은 운영규칙 내용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누락되는 칸이 없도록 작성



② 운영규칙

- 명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유형·목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목적을 정함
  -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 등 평생교육 실현
- 위치: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 교육과정 편성내역: 시설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함
- 정원: 과정운영별 학급 수 및 학급당 정원은 시설의 규모, 수업실 크기 등 교육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정
- 입소·퇴소
  - 운영규칙으로 정함
- 교육기간 및 휴강
  - 교육기간: 1년, 2년, 3년 등 기간 명시
  - 휴강·방학 등 기재
- 학습비: 학습비 징수방법, 한도액, 학습비 반환 규정 등 기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치도 1부(약도)

④ 교육과정 편성표 1부

- 시설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함

⑤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 예산서 또는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 수지계산서
- 학습비 수입내역, 설립자 보조금 등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기재
- 교직원 인건비, 교수학습비 등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

⑥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시설 기준 면적 산정 기준
  - 건축물 대장에 첨부하는 현황도가 있을 경우 현황도상의 면적을 인정
  - 현황도가 없거나 현황도와 실제 건축면적이 다를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의 중심선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⑦ 시설배치도 1부(시설내부 평면도)

⑧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내역 및 상환방법(능력)

⑨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 건물사용승낙서 1부(무상사용인 경우)

- ⑩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
- ⑪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또는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⑫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⑬ 건축물대장 1부
  - 용도 확인[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면적합계 500㎡미만),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 이상)]
- ⑭ 토지대장 1부
  -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함

#### 다. 기타 유의 사항

- 1) 개정 시행령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방법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각각 갖추고 모두 등록 하여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인정
    - ※ 「특수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개별 유형이었으나,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유형이 있으므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병행 등록
  - 2) 타 유형의 시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자 할 때 처리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항에 따른 독립된 평생교육시설 유형 중 하나로,
    - 기존 평생교육시설과 별개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갖추어야할 시설·설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신규 등록
- 예)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신규 등록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17- 376 호

##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경기도 관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제1호(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6. 위치도
  7. 시설배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 ② 평생교육시설의 각 유형에 따른 신고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위 제1항에 따른 각호의 서류와 중복될 경우 하나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제2조 관련)

구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 및 관리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이상, 실당 학습자 10명 이하) 나. 관리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25제곱미터이상) 다.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마. 보건실(권장)
2. 해당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별표 2]

[제1호(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제2조 관련)

구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 및 관리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이상) 나. 관리실 1실 이상 다. 자료실(관리실과 겸용 가능) 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마.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바. 보건실(권장)
2. 해당시설의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구분 [ ]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 2. 제1호(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유형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 ] 학교형태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표로 같음함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같음함			
	시설·설비 ※ 시설·설비 현황표로 같음함			
개설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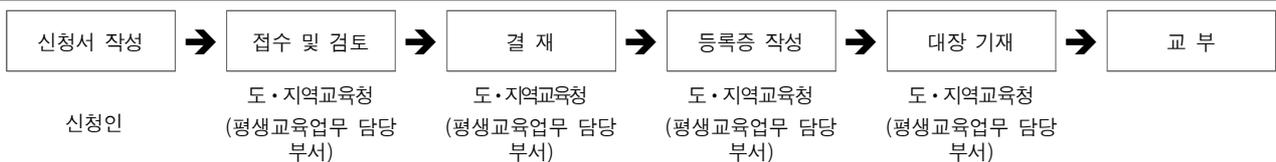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감(교육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규칙 1부</li> <li>2. 교육과정 편성표 1부</li> <li>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li> <li>4. 시설·설비 현황표 1부</li> <li>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li> <li>6. 위치도 1부</li> <li>7. 시설배치도 1부</li> <li>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li> <li>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li> <li>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li> <li>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1부</li> <li>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li> <li>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1부</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 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li> <li>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li> <li>3. 건축물대장 등본</li> <li>4. 토지대장 등본</li> </ol>	

### 처리절차



## □ 각종 서식

1. 평생교육시설 설치 상담 체크리스트 .....	134
2.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135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	137
4. 운영규칙 .....	138
5. 교육과정편성표 .....	142
6. 학습비 내역서 .....	143
7. 학습비 반환기준 .....	144
8. 시설·설비 현황표 .....	145
9. 재산목록 .....	146
10. 위임장 .....	147
11. 건물사용승낙서 .....	148
12.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	149
13. 잡지사업 등록증 .....	150
14.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	151
1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152
16.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153
17.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154
18.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	155
19. 평생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협조 요청(○○평생교육시설) .....	156
20. 출장복명서 .....	157
21. 시설평면도 .....	158
22. 시설·설비현황 .....	159
23.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수리 .....	160
24.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검토서 .....	161
25. 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신고 수리 알림 .....	162
26.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알림 .....	163
27. 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신고 반려 알림 .....	164
28.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165
29.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	166
30.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167
31. 평생교육시설 명칭 및 교육과정 변경 신고 수리 알림 .....	169
32.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 검토서 .....	170
33.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신·구 대조표 .....	171
34.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	172
35. 평생교육시설 인계·인수서 .....	174
36.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	175
37.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	176
38.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사유서 .....	177
39.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 .....	178
40.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	179



[서식 1]

## 평생교육시설 설치 상담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내용					민원인	상담인
1. 유형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 )		
2. 설치 자격 요건	<p>★ 아래 각호 모두 충족</p> <p><input type="checkbox"/> 화상강의, 인터넷강의, 인터넷 전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학원법상 원격학원 제외)</p> <p><input type="checkbox"/> 10인 이상</p> <p><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30시간 이상</p> <p><input type="checkbox"/> 학습비 징수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p>	<p>★ 아래 각호 중 하나</p> <p><input type="checkbox"/>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으로 활동한 1년 이상 실적</p> <p><input type="checkbox"/>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등록증</p> <p><input type="checkbox"/>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1년 이상 실적</p>	<p>★ 아래 각호 중 하나</p> <p><input type="checkbox"/>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p> <p><input type="checkbox"/> 「방송법」에 의해 방송하는 법인</p> <p><input type="checkbox"/>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p>	<p>★ 아래 각호 모두 충족</p> <p><input type="checkbox"/>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p> <p><input type="checkbox"/>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p> <p><input type="checkbox"/>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이상</p>		
			<p>★ 전문 인력 5명이상</p>	<p>★ 전문 인력 5명이상</p>	<p>★ 전문 인력 5명이상</p>		
3. 신고 기준 지	<p><input type="checkbox"/> 주된시설(원격장비설치 장소, 임대인경우 직원 상주 사무소)의 소재지</p>	<p><input type="checkbox"/>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p>	<p><input type="checkbox"/>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p>	<p><input type="checkbox"/>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언론기관(본사) 소재지 (지사 x)</p>	<p><input type="checkbox"/>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p>		
4. 시설 설비 기준	<p><input type="checkbox"/> 설립예정지 주소 : (평생교육시설, 학원 이중등록여부 : )</p>						
	<p><input type="checkbox"/> 건물의 용도(건축물대장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기타( )</p> <p><input type="checkbox"/> 동영상 강의: 서버 등</p> <p><input type="checkbox"/> 전화: 전화라인</p> <p><input type="checkbox"/> 기타 : 해당 설비, 콘텐츠</p> <p>★ 공동</p> <p><input type="checkbox"/> 시설 설비, 비품 현황표 및 증빙서류 제출</p> <p><input type="checkbox"/> 기타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 등은 각각 해당 법령에 적합해야 함</p>						
5. 건물	<p><input type="checkbox"/>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p> <p><input type="checkbox"/> 설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치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 설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임대사용기간 : 최소한 신고일 현재 이후 사용가능한 상태이어야 함</p>						
6. 기타	<p><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p> <p><input type="checkbox"/> 관할지역내 동일명칭 및 유사명칭(○○진흥위원회, ○○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사용 금지</p>						
	<p><input type="checkbox"/> 정관 확인 사항 : 명칭·목적(평생교육사업)·설치자·이사회 결의방법 등 작성, 공증(자산 10억원 이상)</p>						
	<p><input type="checkbox"/> 이사회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안내 공증(자산 10억원 이상)</p> <p>- 설립 및 변경에 대한 회의 내용</p> <p>-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 동의 (정관의 이사회 결의방법과 일치)</p>						
7. 제출 서류 및 준비 사항	<p><input type="checkbox"/> 운영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제외 :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학원법에 의한 학교교과 교습과정,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과정), 정원, 입학, 퇴학, 수료,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반환기준 포함),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 별첨 자료 :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반환기준표 등</p>						
	<p><input type="checkbox"/> 공동 구비서류 : ①운영규칙, ②위치도, ③시설평면도(배치도), ④시설설비 현황표, ⑤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⑥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⑦임대차계약서 사본(원격 : 서버임대계약서, 콘텐츠계약서, 홈페이지 캡처 출력물 포함), ⑧근로(고용)계약서 사본(전문인력, 평생교육사, 직원 등), 소방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input type="checkbox"/> 개인인 경우 : ⑨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p> <p><input type="checkbox"/> 법인인 경우 : ⑨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⑩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임원 현황표(결격사유 확인, 지식인력은 전문 인력 현황표 첨부)</p> <p>※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대리인 신분증</p>						
	<p><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p>						

## 【서식 2】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구분	<input type="checkbox"/> 원격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부설 <input type="checkbox"/> 시민사회단체 부설 <input type="checkbox"/> 언론기관 부설 <input type="checkbox"/>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시설·설비	* 시설·설비 현황표로 같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p>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규칙 1부</li> <li>2. 위치도 1부</li> <li>3. 시설배치도 1부</li> <li>4. 시설·설비 현황표 1부</li> <li>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li> <li>6.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li> <li>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li> <li>8.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li> <li>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li> <li>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li> </ol>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li> <li>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li> <li>3. 건축물대장 등본</li> <li>4. 토지대장 등본</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 【서식 3】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구분	<input type="checkbox"/>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input type="checkbox"/> 2. 제1호(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유형	<input type="checkbox"/> 원격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부설 <input type="checkbox"/> 시민사회단체 부설 <input type="checkbox"/> 언론기관 부설 <input type="checkbox"/>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input type="checkbox"/> 학교형태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표로 같음함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같음함
	시설·설비	* 시설·설비 현황표로 같음함
개설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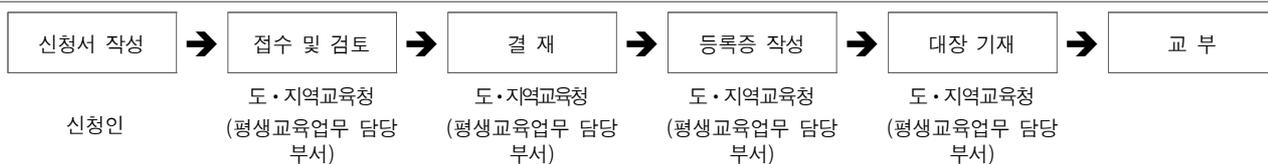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감(교육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규칙 1부</li> <li>2. 교육과정 편성표 1부</li> <li>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li> <li>4. 시설·설비 현황표 1부</li> <li>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li> <li>6. 위치도 1부</li> <li>7. 시설배치도 1부</li> <li>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li> <li>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li> <li>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li> <li>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li> <li>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li> <li>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1부</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li> <li>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li> <li>3. 건축물대장 등본</li> <li>4. 토지대장 등본</li> </ol>	

## 처리절차





【서식 4】

본 운영규칙은 예시 자료이며, 세부 내용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자유롭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 영 규 칙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최 초 시행일] 20xx. xx. xx

[제1차 개정일] 20xx. xx. xx

[제2차 개정일] 20xx. xx. xx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이하 “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문안은 예시이며,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 (이라, 라, 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시 ○○로 123, ○층 ○호(○○○동)에 둔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 【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5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6조(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단, 유·초·중·고 학생은 제외)

제7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8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경일 및 공휴일
- ② 정기휴일
-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학습비 내역은

【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④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
2. 본 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1. 제3항 가호, 나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다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 교육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해당 월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10조(수료)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과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12조(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13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 ① 운영규칙
-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③ 학습자 출석부
-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 ⑥ 수료증 교부대장
-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14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 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교육과정편성표

< 별지 2 > 학습비 내역서

< 별지 3 > 학습비 반환기준



【서식 5】

### 교육과정편성표

과정명	학습대상	강사명	교육기간	시수 (월/주)	1회당 강의시간	정원 (명)	비고
꽃꽂이	성인	강예쁨	3개월	월 4회 주 1회	60분	20명	



【서식 7】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서식 8】

## 시설·설비 현황표

## 1. 시설 현황

시설명		수 량	면적(m <sup>2</sup> )	비 고
강의실	강의실 1	실	m <sup>2</sup>	
	강의실 2	실	m <sup>2</sup>	
	강의실 3	실	m <sup>2</sup>	
	강의실 4	실	m <sup>2</sup>	
	강의실 5	실	m <sup>2</sup>	
	소계	실	m <sup>2</sup>	
사무실		실	m <sup>2</sup>	
휴게실		실	m <sup>2</sup>	
창고		실	m <sup>2</sup>	
화장실	남	실	-	
	여	실	-	

## 2. 설비 현황

설비명	규격 및 모델명	수 량	비 고
냉·난방	천정형 / 모델명	1식( 실)	강의실
	스탠드형(겸용) / 모델명	1대	로비
	전기온풍기 / 모델명	2대	창고
정수기	냉·온수 겸용 / 모델명	1대	휴게실
공기청정기	모델명	1대	휴게실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5개	강의실
	소화기	3개	강의실
네트워크 설비	라우터	1대	사무실
	스위치 허브	1대	사무실
CCTV 시스템	모니터 / 모델명	3대	로비
	CCTV 카메라 / 모델명	3대	로비

## 3. 비품 현황

품 목	규 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책상(사무용)	1200×800×700	1개	140,000	140,000	
의자(사무용)					
칠판(흑판)					
화이트보드					
책상(1인용)					
의자(1인용)					
쇼파(4인용)					
컴퓨터					
합 계					

【서식 9】

## 재 산 목 록

종 별	주 소	(연)면적	평가액 (천원)	소유 여부	증빙자료
토 지	(지번 :    지목 : )	m <sup>2</sup>		소유	토지대장
	(지번 :    지목 : )	m <sup>2</sup>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 소계	m <sup>2</sup>			
건 물		m <sup>2</sup>		소유	건축물대장
		m <sup>2</sup>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소계	m <sup>2</sup>			

종 별	내 역	수 량	평가액	소유 여부	증빙자료
현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계좌번호 :</li> <li>■ 은행명 :</li> </ul>	계좌	원	소유	통장 사본
주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발행법인명 :</li> <li>■ 액면가 :        원</li> <li>■ 지분율 :</li> </ul>	주	원	소유	주식보유 명세서
기 타					

※ 작성요령

1. 평생교육시설 명의의 재산과 사용하려는 모든 재산을 종류별로 작성
  - 토지, 건물 등 평생교육시설의 명의로 임대차 재산 포함 작성
  - 해당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비품 :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비품 목록 작성
  - 비품 현황으로 대체 가능 : 내역에 “별첨 비품목록 참고” 기재
3.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작성하고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서식 1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p>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업무(설치, 변경, 지위승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하는 사람(법인인 경우 대표)    성명 :                    (인)</p> <p style="margin-top: 20px;">구비서류 : 1.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 1부.               2.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1부.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유 의 사 항</p> <p>다른 사람의 인감도용, 본인 외의 위임장 작성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사문서 위·변조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p>				

【서식 11】

## 건 물 사 용 승 낙 서

건물 소재지		○○시 ○○로 ○○번길 ○○ ○층
건 물 소유자	성 명	이갑부
	주 소	
	연락처	
	사용자와의 관계	
건 물 사 용 내 역	사용자	나평생
	사용면적	○○㎡
	사용조건	무상
	사용용도	○○평생교육시설
	사용기간	2년(20○○.○.○.~ 20○○.○.○.)

본인 소유의 건물을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제출시 구비서류	1. 소유주와 사용자의 관계 입증서류 1부. 2. 건축물대장 1부.
-------------	--

## 【서식 12】

[별지 제3호서식]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종 별		간 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발행소				전화번호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인쇄 장소					
발행목적					
발행 내용					
보급지역					
보급대상			유가 · 무가 (有價 · 無價)		
등록일	년 월 일				
<p>「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span></p>					



【서식 1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4.17>

<b>잡지사업 등록증</b>			
등록번호		제 호	
간 별		인터넷 주소	
발행인		전화번호	
편집인			
발행소			
인쇄인			
인쇄 장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유가 · 무가			
등록일자	년 월 일		
<p>「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시 · 도지사 인</p>			

## 【서식 14】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b>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b>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편성책임자	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 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주전송장치 (전화번호:            )		
방송 개요	방송유형	방송분야	
	채널명	등록 조건	
방송개시일(방송개시 예정일)		최초 등록일	
<p>「방송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 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10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span style="color: orange;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직인</span> </div>			



【서식 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별지제2호서식]

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1. 단체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4. 주된 사업
- 5. 최초등록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서식 16】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신청 민원	동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청	

##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범죄경력 유무	
결격사유 유무	

## 3. 이용기관의 명칭 : ○○교육지원청 ○○과

본인은 위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서식 17】

「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제1호~제4호, 제6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

라. 민원서류 제○○호(20○○.○○.○○.)

2.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 설치자 지위승계) 예정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기록사항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비 고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19○○.○○.○○	남	
	○○○	19○○.○○.○○	여	
	○○○	19○○.○○.○○	남	
	○○○	19○○.○○.○○	남	

끝.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1000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abcd01@goe.go.kr / 비공개(5,6)

투명한 정보공개, 경기혁신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 【서식 18】

「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4조~제67조의2)

나. 민원서류 제○○호(20○○.○○.○○.)

3. 민원인 “○○○○” (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설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2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예정자)

나. 조회내용: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5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비 고
언론기관부설	○○○	19○○.○○.○○	남	
평생교육시설	○○○	19○○.○○.○○	여	

다. 기타사항 : 기일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전국 시도교육청교육감 및 경기도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1000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abcd01@goe.go.kr / 비공개(5,6)

투명한 정보공개, 경기혁신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서식 19】

「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소방서장(재난안전과장)

(경유)

제 목 평생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협조 요청(○○평생교육시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4조~제67조의2)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다. 민원서류 제○○호(20○○.○○.○○.)

3. 민원인 “○○○○” (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 신고가 접수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명	설치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면적
○○평생교육원	홍길동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010-1234-5678	○○㎡

붙임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위치도, 평면도 각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1000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abcd01@goe.go.kr / 비공개(5,6)

투명한 정보공개, 경기혁신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 【서식 20】

등록번호	○○○○과-○○○	주무관	○○○○팀장	○○○○과장	
등록일자	20○○.○○.○○.				
결재일자	20○○.○○.○○.	협조자			
공개구분	비공개(5,6)				

## 출장복명서[○○○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 신고]

## 1. 관련

- 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4조~제67조의2)  
 나. 민원서류 제○○호(20○○.○○.○○.)

## 2. 민원인 “○○○” (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 신고가 접수(민원서류 제○○호(20○○.○○.○○.)되어 현지를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출장목적 :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나. 출장일자 : 20○○.○○.○○.

다. 출 장 자 : 주무관 ○○○, 주무관 ○○○

라. 출 장 지

1) 명 칭 : ○○○○○○

2) 설치자(대표자) : ○○○

3)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마. 조사내용

1)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 적합[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교구 등 확충 :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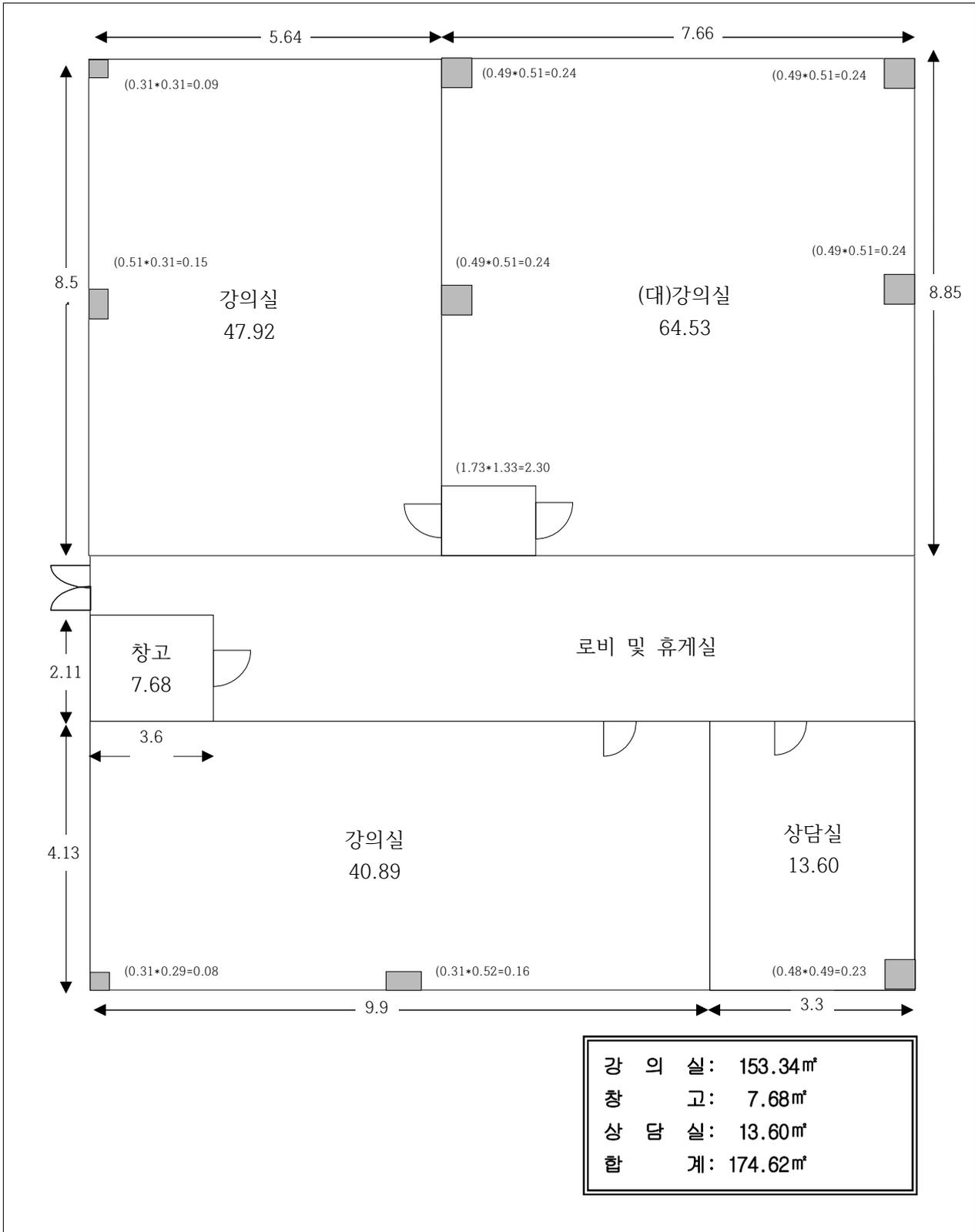
바. 출장자 의견 : 민원인이 제출한 구비서류에 의하여 현지조사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 관련 법규에 적합함

붙임 1. 평면도 1부.

2. 시설·설비현황 현지조사서 1부. 끝.

【서식 21】

○○평생교육시설 시설평면도



작성자 : 직)      성명) ○ ○ ○ (인)

【서식 22】

## ○○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현황

시설 명칭	설치자				명칭		
	위 치						
건물 현황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소유관계	임대	
	시설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시설현황	시설평면도 참조	
시설 현황	시설명	현황	비고	시설명	현황	비고	
	강의실 1	153.34㎡	1실	창 고	7.68㎡	1실	
	강의실 2	㎡	1실	상 담 실	13.60㎡	1실	
	강의실 3	㎡	1실	화 장 실	남·녀 구분		
	강의실 4	㎡	1실				
	강의실 합계	㎡	4실				
설비 현황	시설명	현황	비고	시설명	보유현황	비고	
	급수시설	적정		방음시설	적정		
	채광시설	적정					
	조명시설	적정					
	환기시설	적정					
	냉난방시설	적정					
비품 현황	비품명	현황	비고	비품명	현황	비고	
	책상	19개		TV	1대		
	의자	59개					
	에어컨	4대					
	프로젝터	1대					
	스크린	1대					
	이동형앰프, 스피커	1대					
	무선마이크	1개					
	컴퓨터	2대					
현지조사일 : 20 . . . .							
조사자 : 직) 성명) ○ ○ ○ (인)							
조사자 : 직) 성명) ○ ○ ○ (인)							



【서식 23】

「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수리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4조~제67조의2)

나. 민원서류 제○○호(20○○.○○.○○.)

2. 민원인 “○○○○” (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시설 설비 및 교육환경 등이 관계법령에 적법(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유 형 : 원격평생교육시설

나. 명 칭 : ○○○○○○

다.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번길, ○○층

라. 설치자 : (주)○○○○○(대표자 : ○○○○)

마. 규 모 : ○○㎡

- 강의실 ○○㎡(○실), 사무실 ○○㎡(○실), 기타○○㎡(○실)

- 붙임 1.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신고 검토서 1부.
-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안) 1부.
- 3. 현지조사서(시설 및 설비 및 평면도) 각 1부.
- 4. 소방특별조사서 회신서 1부(비전자).
- 5.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1부(비전자).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1000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abcd01@goe.go.kr / 비공개(5,6)

투명한 정보공개, 경기혁신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서식 24】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검토서

1. 신청 개요

평생교육시설 명칭	설립자 (대표자)	설립 예정지	비고
○○○○○○○○ (원격평생교육시설)	(주)○○ (홍길동)	○○시 ○○로 ○○번길 ○○, ○층 (○○동)	

2. 검토 내역

구분	검 토 사 항	검토(조회) 결과	적합여부		비 고
			가	부	
서류 검토	○ 설치 자격기준 ○ 구비서류 ○ 원칙의 적합성(첨부서류 포함)	☞ 법 제36조2항 ☞ 제출서류 완비 ☞ 적정	○		검토조서 참조
명칭	○ 동일명칭 사용여부 ○ 유사명칭 사용여부(법 제45조)	☞ 없음 ☞ 없음	○		평생교육시설 등록대장 확인
이중 등록	○ 주소지내 타시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이중등록 및 점유 여부	☞ 없음	○		평생교육시설 등록대장 확인
결격 사유 및 범죄 경력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5	☞ 결격사유: 이상없음 ☞ 범죄경력: 이상없음 ☞ 직권폐쇄: 무	○		회신공문 참조
건축물 용도	○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 참조
직통 계단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였는지 여부(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4호)	☞ 4층 ☞ 직통계단 2개소 설치됨	○		출장복명서 참조
소방 시설	○ 소방시설안전점검 의뢰결과 적합여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2조8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제출	☞ 적합	○		○○소방서 확인 (소방특별조사서 참조)
시설 설비 재산	○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 비품(교구 등) 현장 실사 결과 ○ 재산목록 현장 실사 결과	☞ 적합 ☞ 제출목록과 같음 ☞ 제출목록과 같음	○		출장복명서 참조

3.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서식 25】

「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 목 ○○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신고 수리 알림

###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4조~제67조의2)

나. 민원서류 제○○호(20○○.○○.○○.)

2. 귀하께서(귀 단체, 회사, 법인에서) 제출하신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에 대하여 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평생교육시설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아래 기준에 모두 충족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하시기 바라며,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①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②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나. 아래 변경신고사항 발생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사항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다. 신고한 운영규칙의 교육과정, 학습비 및 학습비 환불 규정 준수

라. 자진 폐쇄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49조제5항(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에 의거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청에 신고증을 반납하고 폐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 제4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붙임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부(제○○○○호).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1000 (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abcd01@goe.go.kr / 비공개(5,6)

투명한 정보공개, 경기혁신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 【서식 26】

「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 목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알림

##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4조~제67조의2)

나. 민원서류 제○○호(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 신고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수번호	제○○호	접수일	20○○.○○.○○.
민원명	○○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신고 신청		
당초 처리기간		처리 예정기한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담당자	소속	경기도○○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1000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abcd01@goe.go.kr / 비공개(5,6)

투명한 정보공개, 경기혁신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서식 27】

「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 목 ○○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신고 반려 알림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4조~제67조의2)

나. 민원서류 제○○호(20○○.○○.○○.)

다. 평생교육건강과-○○(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대해 20○○.○○.○○.까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서류를 반려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평생교육법」 제2조, 제3조, 제6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나. 반려 사유

1) 교육과정 부적합 다른 법령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2) 부적합 교육과정 : 청소년 예절 캠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향상 캠프, 청소년 영어캠프,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붙임 민원서류 1부(비전자).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1000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abcd01@goe.go.kr / 비공개(5,6)

투명한 정보공개, 경기혁신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 【서식 28】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lt;개정 2014.7.28&gt;

제 호

##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 명 칭 :
2. 설치자 :
3. 위 치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교육장 직인

- 주: 1.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은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증서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서식 29】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12. 29.>

제 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 1. 명 칭:
- 2. 설치자:
- 3. 위 치:

「평생교육법」 제20조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교육감(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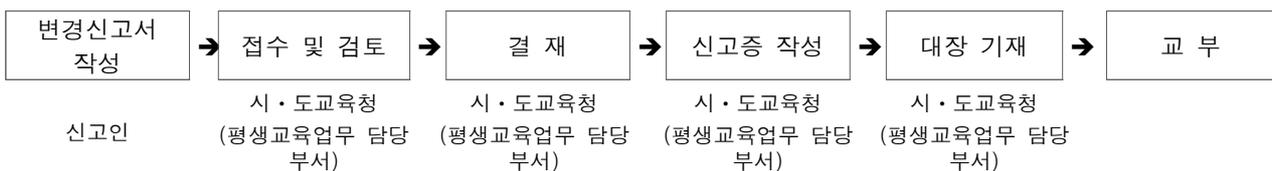
직인

- 주: 1. 관계 법령 및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증서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변경사항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칭	1.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운영규칙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위치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운영규칙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표 2. 운영규칙	
학습비	1.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운영규칙	
시설과 설비	1. 시설·설비 현황표 2.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처리절차



## 【서식 31】

「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 목 ○○평생교육시설 명칭 및 교육과정 변경 신고 수리 알림

##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4조~제67조의2)

나. 민원서류 제○○호(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변경신고에 대하여 제반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 칭			
교육과정		10개 과정 추가 (붙임 참조)	
시설 변경	강의실: 54.52㎡ 사무실: 10.61㎡ (합계: 65.13㎡)	강의실: 71.76㎡ 사무실: 13.25㎡ (합계: 91.57㎡)	확장

3. 아울러, 향후 귀 평생교육시설에 변경사항(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이 있을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검토서 1부.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안) 1부.

3. 운영규칙 신규대조표 1부. 끝.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1000 (20○○.○○.) 접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abcd01@goe.go.kr / 비공개(5,6)

투명한 정보공개, 경기혁신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서식 32】

##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 검토서

1. 신청 개요

평생교육시설 명칭 (유형)	설립자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 (시민단체부설)	(주)○○ (홍길동)	○○시 ○○로 ○○번길 ○○, ○층(○○동)	위치변경	

2. 검토 내역

구분	검 토 사 항	검토(조회) 결과	적합여부		비 고
			가	부	
서류 검 토	○ 구비서류 ○ 운영규칙 신규대조표 (첨부서류 포함)	☞ 제출서류 완비 ☞ 적정	○		검토조서 참조
명 칭	○ 동일명칭 사용여부 ○ 유사명칭 사용여부(법 제45조)	☞ 없음 ☞ 없음	○		평생교육시설 등록대장 확인
이 중 등 록	○ 주소지내 타시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이중등록 및 점유 여부	☞ 없음	○		평생교육시설 등록대장 확인
결 격 사 유 및 범 죄 경 력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5	☞ 결격사유: 이상없음 ☞ 범죄경력: 이상없음 ☞ 직권폐쇄: 무	○		회신공문 참조
건축물 용 도	○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 참조
직 통 계 단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4호)	☞ 4층 ☞ 직통계단 2개소 설치됨	○		출장복명서 참조
소 방 시 설	○ 소방시설안전점검 의뢰결과 적합여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8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시설 완비증명서 제출	☞ 적합	○		○○소방서 확인 (소방특별조사서 참조)
시 설 설 비 재 산	○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 비품(교구 등) 현장 실사 결과 ○ 재산목록 현장 실사 결과	☞ 적합 ☞ 제출목록과 같음 ☞ 제출목록과 같음	○		출장복명서 참조

※ 해당 변경내용에 맞게 추가, 삭제하여 사용

3.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서식 33】

##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신·구 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p>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u>경기도 ○○시 ○○로 123, ○층 ○호(○○○동)</u>에 둔다.</p> <p>【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p>	<p>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u>경기도 ○○시 ○○로 456, ○층 ○호(○○○동)</u>에 둔다.</p> <p>【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 (별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li> <li>- 삭제 :</li> <li>- 변경 :</li> </ul> <p>※ 교육과정명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같음 가능함.</p> <p>※ 내용이 많거나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에 변경된 내역만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p>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인수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 【서식 36】

##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유형 <input type="checkbox"/> 원격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부설 <input type="checkbox"/> 시민사회단체 부설 <input type="checkbox"/> 언론기관 부설 <input type="checkbox"/>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input type="checkbox"/> 학교 형태		
	주소		전화번호
폐쇄사항	수강생 현황		
	폐쇄 연월일		
	폐쇄 사유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또는 제33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폐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	-----------



【서식 37】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명 칭		신고번호	
주 소			
법인(단체)명		대표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재교부 신청 사유	※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상기와 같은 사유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설치자(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1. 분실사유서 1부(분실된 경우에 한한다). 2. 설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경기도○○○○교육지원청이 제공받는 상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분실사유서 정보 포함)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8】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사유서

명 칭				신고번호	
주 소					
설치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분실 내역	분실 일자	20	년	월	일
	분실 장소				
	분실 사유				

상기 본인은 ○○○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상기와 같은 사유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설치자(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9】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 대장

[ ]원격 [ ]사업장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언론기관 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신고 번호	신고 (변경) 일자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전화 번호	폐쇄 일자	폐쇄 사유	비고 (확인)	
		명칭	위치	교육 과정	정원	학습 비	시설 과 설비	평생 교육 사	기타	성명 (한자)	생년 월일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0】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보고 학교	학교명	학교장
	위치	전화번호
학교 부설 평생 교육 시설 내역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운영규칙 ※ 별지에 기재	
	교육과정 ※ 별지에 기재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별지에 기재	
	시설·설비 현황 ※ 별지에 기재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개설연월일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서명 또는 인)

(            )교육장    귀하

## 작성방법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및 시설·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은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장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I 총 칙

## 1. 목적

이 지침은 평생교육시설 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지정 업무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지도 감독 등의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평생교육시설의 건실한 발전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2.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7조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1조, 제42조 내지 제46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9조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별·과목별 교구 설비 기준
- 경기도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고시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9-434호, 2019.4.2.)
-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12.30.)
- 경기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조례 시행규칙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민원처리 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3호, 2019. 4. 4.)

## 3.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미인정)에 한하여 적용함.

## II 등록 및 지정

###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경제적 이유 등 개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 청소년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시설임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시설의 학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임

### 2. 설립주체 및 설치자 변경

#### ○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8조】

##### 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의 요건

-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개인 또는 법인
  -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 나. 설치자의 결격사유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건설하고 신뢰성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다. 설치자의 변경

-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은 기타 다른 평생교육시설처럼 설치자 지위 승계가 가능함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준용 : 【서식 5】 참조
-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변경 (지위승계)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는 당연승계 되는 것은 아니며,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법인(재단법인, 학교법인)이 해당 시설의 소유 주체로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위승계가 가능

### 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시설·설비기준

####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제10조 관련)**

구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 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2. 자료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3. 관리실	1실 이상

#### 가. 시설·설비기준의 의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학교로서 교사의 가르칠 의무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위해 시설·설비 기준을 설정함

#### 나. 학습시설·설비

##### 1) 수업실(보통교실)

- 수업실은 설치 학급수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실당 기준면적은 49.5㎡ 이상으로 함
  -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66㎡ 이상
- 수업실 설비기준 : 【서식 8】 참조
  - 학교 교구·설비기준 「보통교실」 설비기준에 준함

##### 2)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 시설은 교육 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급수시설, 채광,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 및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다음 시설·설비를 권장함
  - 보건실 1실(25㎡ 이상)
  - 특별교실 1실(25㎡ 이상)
  - 보건실의 설비기준 : 【서식 9】 참조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은 별도 적용됨 : 지정 업무 참조

#### 다. 자료실

- 1)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 2)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확보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교구 확보
- 3)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 4) 수업실이 6실 이상일 경우 다음 시설·설비를 권장함
  - 자료실(교육정보자료실) 1실(25㎡ 이상) 별도 운영
  - 교육용 컴퓨터 5대 이상 보유

#### 라. 관리실

- 1실 이상(자료실과 겸용할 경우에는 25㎡ 이상 권장)



#### 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등록

##### ○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가.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등록제(교육감에게 등록)
- 2) 등록 절차
  - 등록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 서류 검토·현장 확인 등 ⇒ 등록증 교부(처리기간 10일)
- 3)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시행규칙 제11조)
  - ① 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서식 1】 참조
  - ② 운영규칙
  - ③ 교육과정 편성표
  - ④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 방법에 관한 내역서
  - ⑤ 시설·설비 현황표
  - ⑥ 시설 배치도
  - ⑦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 각 1부
  - ⑧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⑨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 ⑩ 평생교육사 채용 관련 서류

##### 나.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검토

- 1) 등록 신청서: 【서식 1】 참조
  - 설치자 : 개인 또는 법인 인적 사항 기재
    - 설치자가 개인일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록기준지(결격사유 조회용)
    - 설치자가 법인일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
      - ② 정관 사본: 원본 지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 사업 기재 확인)
      - ③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 ④ 법인 임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결격사유 조회용)
      - 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 명칭, 목적, 위치 등: 운영규칙 내용,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 2) 운영규칙
  - 명칭
    - 등록신청 시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교

- 등록증 발급 시 : ○○○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 학교
  -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후 : 학력인정 ○○ 초·중·고등학교
  -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2830(2006. 7. 2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명칭 사용에 관한 지침 통보」
  - 목적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목적을 정함
    - 문해교육,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대상 교육,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교육, 정규 학교의 중도탈락자 등에게 교육 기회 제공 등 평생교육 실현
  - 위치 :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 ※ 대중교통 이용 등 학습자의 통학이 편리하며 교육 환경이 양호하여 교육시설로의 이용이 적정한 곳
  - 교육과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로 편성
  - 정원
    - 과정운영별 학급수 및 학급당 정원은 시설의 규모, 수업실 크기 등 교육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학급당 정원은 학력인정 시설 지정기준 이하로 함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운영규칙으로 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 대상자는 입학 대상에서 제외
  - 과정수료의 인정 : 교육 기간별로 수료 인정 내용
  - 교육기간 및 휴강
    - 교육기간 : 1년, 2년, 3년 등 기간 명시
    - 휴강·방학 등 기재
  - 학습비 : 학습비 징수 방법, 한도액을 기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3) 교육과정 편성표
- 각급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편성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로 편성
  - 시설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함
-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 방법에 관한 내역서
- 예산서 또는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 수지 계산서
  - 학습비 내역, 설립자 보조금 등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기재
  - 교직원 인건비, 교수학습비 등 경비와 시설의 유지 방법에 관한 내역
  - 보조금, 후원금에 대한 협약서 별도 첨부



- 5)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 기준 면적 산정 기준
    - 건축물대장에 첨부하는 현황도가 있을 경우 현황도상의 면적을 인정
    - 현황도가 없거나, 현황도와 실제 건축면적이 다를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의 중심선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 6) 시설 배치도
-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
  - 설치자의 재산에 해당되는 등기부등본 등
  -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내역 및 상환방법(능력)
- 8)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9)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 10)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 다. 설치자 결격사유 조회

- 1) 등록기준지 시·군·읍·면사무소에 전자문서로 신원조회(후견등기사항 포함) 확인
- 2)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타 시·도 교육청 등 확인
- 3)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 전원 신원조회
- 4) 설치자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 신청서 반려
  - ※ 설치자의 결격사유 조회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의 해당 경력 여부 병행 실시를 위해 설치자(법인일 경우 임원 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4】 징구,  
설치자가 외국인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이 불가함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5】 추가 징구

#### 라. 등록증 교부

-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등록증 【서식 2】을 신청인에게 교부
- ※ 신고증 수령 후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명서 사본 제출(담당자 확인 사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이상)

**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변경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서식 6】에 의거 교육감에게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등록 변경 신청 서류
  -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위치도
    - 시설 배치도
    -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3)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시설·설비의 설치 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 배치도
- 6)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운영규칙
- 7) 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이 경우 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
- 8)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포함)을 새로 내주어야 함
- 9) 변경등록 승인 시 별지 제10호의3 서식 【서식 7】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함

**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등**

-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서가 실효될 때에는 관할 교육청에 반납
- 2) 명칭·위치 및 교육과정 편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관리의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함
  - ①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 ② 교육과정
  - ③ 학생 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 ④ 입학 자격
  - ⑤ 교원 자격·정원
  - ⑥ 수료·졸업
  - ⑦ 시설·설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 ⑧ 교과서·교재
  - ⑨ 재무·회계 규칙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내지 제6항(요약)

다음 사항은 학력인정시설에 예외로 적용됨

- ▶ 제2항 : 1년 3학기 제 운영 및 수업연한 단축 등
- ▶ 제3항 : 초·중학교 과정인 경우 취학연령 초과자
- ▶ 제4항 :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장(6학급 미만), 교감(12학급 미만)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음
- ▶ 제5항 : 체육장 기준 완화 및 대체 가능
- ▶ 제6항 : 초·중·고교 과정 병설인 경우
  1. 체육장, 특별교실, 관리실 등은 병용 가능
  2.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구 및 도서 병용 가능
  3. 교장 1인이 겸임 가능, 교원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서로 겸임 가능

### 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대상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등록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시설
- 2) 지정 절차
  - 지정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지정기준 심의 ⇒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정 ⇒ 지정서 교부(처리기간 13일)

##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① 지정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서식 3】 참조
- ② 운영규칙
- ③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 ④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서
- ⑤ 시설 현황 및 확충 계획서
- ⑥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 계획서
- ⑦ 시설 평면도 및 시설 배치도
- ⑧ 지적도 및 위치도
- ⑨ 법인의 정관,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⑩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⑪ 법인등기부 등본

## 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심사 기준

※ 지정기준 심사는 증설과 병설에도 적용함

##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수

-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3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 수업연한 및 학기에 관한 특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등은 각종학교의 설립 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매 학년도(1년)를 3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 인정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2)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4조】

-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2015.12.30.)
  - 경기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시간 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학생 정원 · 학급수 및 학급편성

- 각종학교의 학급당 또는 학과당 학생 정원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5조】

-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 유급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귀국자녀) 및 제3호(탈북자녀)에 해당하는 자, 국가 유공자녀 등은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되, 학생의 중도탈락 등 이동의 빈번성, 학교 재정운영 형편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4) 입학 자격 및 학생관리(운영규칙으로 정함)

① 입학 자격

- 초등학교

• 입학 자격 : 초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자

• 자격 제한 :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 중학교
  - 입학 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자격 제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 고등학교

-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② 입학·전학·졸업 등 학생관리

- 학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운영규칙)으로 정함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음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로의 전학이 되지 아니함
- 신입생 모집은 시설의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따름
- 학적관리 【평생교육법 제31조제8항】
  -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준용

5) 교원 자격 · 정원 · 복무 · 보수

① 교원 관련 지정기준 개요

구분	지정기준
자격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운영 기준과 동등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자격증 소지자)
정원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함
복무	○ 설립자(개인 또는 법인)와 교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무 조건에 따름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복무사항(성실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적용의 법적 문제 제기 가능
보수	○ 사적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 지급 ☞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기준을 준용하되, 개별 학교별로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2006.3.) 가능 ☞ 교직원 공제회 가입(2006.9.) 가능

② 교장·교감 자격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 1】

[별표 1] <개정 2013. 12. 30> **교장·교감 자격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교장	중등 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li> <li>3.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li> <li>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li> </ol>
중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의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의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li> <li>4.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li> </ol>
교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의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의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3.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li> </ol>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li> <li>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年數)는 교육경력 연수(年數)로 볼 수 있다.</li> </ol>

③ 교사 자격 기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

[별표 2] <개정 2018. 12. 18.>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자 격 학 교 별	정교사(1급)
중 등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li> </ol>
초 등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li> <li>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li> </ol>
특 수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li> <li>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ol>
자격 학교별	정교사(2급)
중 등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li> <li>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li> <li>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li> <li>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敎職科) 학점을 취득한 사람</li> <li>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li> <li>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li> <li>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초 등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li> <li>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li> <li>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4.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li> <li>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li> <li>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li> </ol>
특 수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li> <li>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li> <li>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li> <li>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ol>



자 격 학 교 별	준 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중 등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li> <li>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li> <li>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li> <li>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li> <li>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li> </ol>
초 등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li> <li>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li> <li>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li> </ol>		
특 수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li> <li>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ol>		

자 격 학 교 별	사서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li> <li>2.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li> <li>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린(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 생 교 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li> <li>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 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li> <li>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li> </ol>

	<p>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 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p>	<p>성 강습을 받은 사람</p> <p>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 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p>	<p>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p> <p>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p> <p>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p> <p>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p> <p>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p>	<p>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비고</p> <p>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p> <p>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年數)는 교육경력연수(年數)로 볼 수 있다.</p> <p>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된다.</p> <p>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 ④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
- ⑤ **중등교원 배치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2조 】
- ⑥ 교감 배치의 특례
  - 교원 수급이 어려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
- ⑦ 초·중, 중·고,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
  - 교장은 1인이 겸임할 수 있음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음
- ⑧ 평생교육사의 배치 【 평생교육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제외

○ 중등교원 배치기준<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참조>

1) 교원 정원

가) 교원의 구분 및 배치(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2조)

-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 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 (3)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동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관할청)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2.3.21.]

나) 교감의 미배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 2)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학급수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계	교사	교감	교장	계
3		10	(1)	1	12	9	(1)	1	11
4		11	(1)	1	13	11	(1)	1	13
5		12	(1)	1	14	13	(1)	1	15
6		13	1	1	15	14	1	1	16
7		14	1	1	16	15	1	1	17
8		15	1	1	17	16	1	1	18

9학급 이상교	※ 교장, 교감 외 ※ 9학급:(학급 수)×1.70명+2명=17명 ※ 10학급:(학급 수)×1.70명+1명=18명 ※ 11학급 이상: (교사 수)=(학급 수)×1.70명 (단,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교장, 교감 외 ◦ 일반계교사수 : 학급당 1.95 ◦ 농업계교사수 : ㄹ 2.15 ◦ 공업계교사수 : ㄹ 2.15 ◦ 상업계교사수 : ㄹ 2.05 ◦ 외국어고교사수 : ㄹ 2.15 ◦ 특성화고(종합고) : 계열별 학급당 위 비율 적용 후 합산 (단,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특수	학급 수×1명 (순회학급을 제외한 특수학급만 3학급이상 설치교+1명) (*1학급 설치교 중 증설할 교실이 없고, 특수학급에 배치 된 학생9명이상+1명) - 2017.3.1. 기준	학급 수×1명 (학교당 1명 추가 배치) ※ 단, 1학급 학생수 4명 이하일 경우 추가 배치제외 - 2017.3.1. 기준
보건	12학급 이상 (단, 12학급 미만 학교는 예산 내에서 교육지원청별 기간제교사 인원 할당)	
교감	5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교는 교감 미배치 가능, 43학급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복수교감 배치 가능 (특수학급제외)	
진로진학	3~8학급 학교는 배정 기준에서 1명을 더하고, 9학급 이상의 학교는 정원배정 산식 에 포함(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수석교사	정원배정 산식에 포함	

6) 수료·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 수는 수업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7) 시설·설비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① 교사(제3조)

-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 환경은【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의 기준면적

학 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 이하	241명 이상 960명 이하	961명 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 열 별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인문계열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1,920+8N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특성화 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3조(교사) 및 제5조(체육장)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제12조)

② 교사용 대지(제4조)

- 건축 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③ 체육장(제5조)

- 체육장의 기준 면적 완화 및 대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 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시설·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 면적은 350㎡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대체 가능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기준 면적을 완화할 수 있음
  - 새로이 설립되는 학교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다만, 다른 학교(정규 초·중·고교)의 공동사용은 제외함

■ 제외 사유

- ▶ 학생 구성이 서로 다르며(성인 등), 학습 시간대가 유사하여 수업 운영상 또는 교육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지정 기준에만 활용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
- ▶ 학교의 관리자가 변동될 때 사용허가 지속 여부 의문

-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④ 교지(제6조)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제7조)

-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시설)를 설치·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⑥ 교구·설비기준(제8조)

- 각급 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함
-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별·과목별 교구 설비 기준】 참조
  - 【초등학교 교구·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1-65호)】
  - 【중등학교 교구·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3-36호)】

## ⑦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 등(제9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는 당해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경기도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9-434호)】

## ⑧ 급수·온수 공급 시설(제10조)

- 급수시설 설치 :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
- 온수 공급 시설 확보

## ⑨ 학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 기준 등(제17조)

-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함

## ⑩ 초·중, 중·고,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일부 시설·설비의 병용이 가능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 시설·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은 병설되는 학교 중 최상급 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되, 체육장, 관리실, 특별교실 등은 병용할 수 있음
- 교구 및 도서는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용할 수 있음

## 8) 교과서·교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함
-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9) 재무·회계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인이 학교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학교운영과 그 사업의 경영을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회계와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8조】
- 시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승인 심사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1) 심사팀 구성 운영 : 지정기준의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전문직과 행정직 3~5명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심사팀」을 구성·운영하며, 심사팀은 제반 사항의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심사팀」은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함
- 서면심사는 지정 신청서 기재 사항 및 구비서류 중심으로 지정 기준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 현장 확인은 서면 자료에 의하여 현장 확인함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성 목적 및 기능

- 심사위원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지정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며, 건설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적 운영 가능성 등을 심의

② 심사위원회 구성(임의기구)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초·중등·평생교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직, 행정직, 평생교육 관계자 등으로 구성함

- 위원장 : 주관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 위 원 : 교육과정 관련 과장 또는 장학관, 교무·학사 관련 과장 또는 장학관, 직업진로교육 관련 과장 또는 장학관,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 학교설립 관련 과장 또는 사무관, 기타 평생교육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 부득이한 경우 위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정에 맞게 직제를 조정하여 구성

- 간사 및 서기 :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장학관), 업무 담당자

③ 운영방법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승인 시 개최

## ④ 심사 내용

- 설치 목적,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등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평가 시 교육과정 담당 부서의 검토 필수
- 경기도교육청 학생 수용계획을 감안한 교육 환경 종합적 평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의 적정성 판단
- 설치 운영자의 운영 철학 및 경영능력의 평가(학식과 덕망)
-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심사표 작성

## 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서 교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 전망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 결정
-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시설·설비 구비 여부 현장 확인

##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심의 및 결정

- 지정기준의 심의자료를 종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3) 지정서 교부

- 지정 시설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지정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 【서식 4】 참조

## 바. 학력인정 시설의 증설·병설(지정사항 변경)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 1) 학급 증설·병설에 따른 지정사항(운영규칙)의 변경은 안정적이고 계획성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매 학년도 1학년 신입생 학기 시작 기준일(3월 1일) 최소 15일 이전에 신청 권고
- 2) 지정 사항의 변경 내용 검토
  - 변경 내용에 따른 교구·설비기준 확보 여부 확인
  - 운영규칙 변경의 적정성 검토
  - 교육과정 편성표, 교원 확보 계획 등 제반사항 검토
- 3) 지정사항 변경 등은 수요 공급의 비교,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부담 사항 등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시설 등 추가 투자됨을 고려하여 변경 신청 전에 기본계획을 사전 검토 또는 상담하도록 안내 또는 지도
- 4) 교육여건 개선, 운영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 결정
- 5) 초·중·고 증설과 병설 신청은 지정사항 변경으로 처리

**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인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폐쇄 연월 일, 잔여업무의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함

**아.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직인관리【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32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 내지 제8조】 준용

**Ⅲ 학습비 징수·관리**

**1. 목적**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습비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6호】 <운영규칙에 기재>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지정 신청서에 기재>

**3. 징수 원칙 및 금액**

- 학습비는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 부담 원칙과 학부모(학생)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학습비를 책정 징수하여야 함
- 학습비 책정은 정규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준용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제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 수익자부담 경비를 징수할 수 있음
- 1년 3학기 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1년 2학기 제 학습비와 비교 산출하여 적정하게 징수함

**4. 학습비 관리, 재무·회계 운영 등**

- 학습비의 징수방법·징수 기일·반환 등
  -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준용
- 학습비의 관리 및 시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준용

- 학습비, 입학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 모든 수입금은 시설(학교) 회계에 편입하여 통합 관리함
- 학습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학생 모집 시 이를 안내 하고 공고(게시)
- 학습비 등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경비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
  - ※ 학습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수익자부담 경비는 예산·결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IV 「1년 3학기제」 운영

### 1. 시행 취지

- 시간적·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근로 청소년, 성인 등에게 단기간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회 부여
- 특히 학령을 초과하였으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목표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여름·겨울 방학을 수업일수로 활용하여 신속한 학력의 보충 기회 제공 및 교육 복지 활성화 효과 기대

### 2.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② ~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3. 운영 기준

- 「1년 3학기제」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실시(운영규칙)
-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수업일수(안)는 “매 학기 80일 이상, 1년간 240일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연간 수업시수(안) : 초(1,125 이상), 중(1,260 이상), 고(1,350 이상)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안) 알림(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038, 2011. 9. 23.)
- 「1년 3학기제」 편성 대상 기준은 성인과 정규학교 학령 초과자 또는 근로청소년 위주로 운영토록 권장함
  - 성인과 학령 초과자 또는 근로 청소년도 희망에 따라 1년 2학기제에 편성할 수 있음
  - 초·중학교 과정에서는 의무교육 실시로 학령기 학생 모집 불가
  - 입학 연령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함



- 단축된 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6세를 넘은 자
    -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 시설(학교)에서는 「1년 3학기제」와 「1년 2학기제」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실시 대상기관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적절한 시설
  - 학습비 부담액이 적절한 시설
- 승인의 취소 : 「1년 3학기제」 운영이 교육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

#### 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근거 규정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12.30 참조) 】
- 교육과정 편제 및 구성 시 고려 사항
  -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기초 학력 수준을 고려한 기본 교과목의 편성
  - 선택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의 확대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흥미·적성, 진로를 고려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단위 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확대와 학습 부담 경감
  - 학생의 능력, 특성, 경험(진로/연령)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 최소 필수 학습량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
- 교과목 수
  -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및 기초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본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 수를 줄이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권장
- 학기별 수업일수 및 방학일수 (예시)
  - 학기별 수업일수는 15주 (80일) 정도, 학기별 방학일 수는 약 2주 내외

학기	기간	수업일수(주)	방학일수(주)
1학기	3월 ~ 6월	80일 (15주)	15일 (2주)
2학기	7월 ~ 10월	80일 (15주)	15일 (2주)
3학기	11월 ~ 다음 해 2월	80일 (15주)	15일 (2주)
계		240일 (45주)	45일 (6주)

○ 교육과정의 성격

- 청소년 대상의 인성 및 진학 교육과 성인 대상의 실용교육을 이원화하여 실시토록 함

○ 교육과정 총 이수 시간 (단위)

- 1단위 : 1학기(15주), 1시간 수업
  - ※ 1시간 수업은 초등학교(40분), 중학교(45분), 고등학교(50분)
- 야간 단위 수업 시간 : 40분 가능

《 고등학교과정 》

구분	이수 교육과정	
	1년 2학기제	1년 3학기제
수업연한	3년	2년
총 이수단위	204단위 이상	180단위 이상
수업일수	연 190일 이상	연 240~270일
학기당 수업 주수 (주당 평균 수업시수)	17주(34시간)	15주 (30시간 이상)
총 수업시수	3,468시간	2,700시간

《 중학교과정 》

구분	이수 교육과정	
	1년 2학기제	1년 3학기제
수업연한	3년	2년
수업일수	연 190일 이상	연 240~270일
학기당 수업 주수 (주당 평균 수업시수)	17주(34시간)	15주(28시간 이상)
총 수업시수	3,366시간	2,520시간



《 초등학교과정 》

구 분		이수 교육과정	
		1년 2학기제	1년 3학기제
수업연한		6년	4년
수업일수		연 190일 이상	연 240~270일
학기당 수업 주수 (평균 수업 시수)	5,6학년	17주(32시간)	15주(27시간)
	3,4학년	17주(29시간)	15주(25시간)
	1,2학년	17주(25시간)	15주(23시간)
총 수업시수	5,6학년	2,176시간	1,620시간
	3,4학년	1,972시간	1,500시간
	1,2학년	1,744시간	1,380시간
	계	5,892시간	4,500시간

## V 지도·감독

### 1. 운영목표

- 가. 교육과정, 학사, 인사, 예산 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지도·감독 체제를 확립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이용자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나. 시설 운영자에게는 자율 운영체제 확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
- 다. 평생교육시설의 정기적인 지도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2. 근거법령

#### 가.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나. 【평생교육법 제17조】(지도 및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8조】(보고)

-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라.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 평생교육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 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마.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 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바. 【평생교육법 제45조2】(벌칙)**

-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사.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9] 참조

**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감독)**

-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가. 목적**

-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확보하여 장학 운영 및 학사 지도, 정기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방향**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최소 기준 설정

**다. 처분기준표 【서식 10】에 의함**

#### 4. 교직원의 연수지원

- 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와 시설 운영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적극 지원함
- 나. 업무 향상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홍보물 등을 안내 지원함

#### 5. 정기 지도·점검

##### 가. 연도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

- 1) 연 2회 실시(현장점검 1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에 통보 후 추가 지도·점검 실시함
- 2) 해당과의 업무협조를 받아 장학지도 및 학사 점검을 같이함
- 3) 지도·점검 계획은 사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실태조사 결과 처리 및 관리

- 1) 실태조사 결과는 누적 관리 함
  - 시설별 관리 카드 활용: 연혁, 운영 특성, 현황 등 총괄 관리
- 2) 운영 우수교에 대한 조치
  - 특별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3)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 개별 필요한 조치를 하며, 행정 및 재정 지원 시 이를 반영함
- 4)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개별 행정처분: 등록 취소, 전부 또는 일부 운영 정지
  - 필요시 감사과에 감사 의뢰

#### 6.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지도 확인

- 가. 보조금은 시설(학교) 회계에 편성하여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 재산 증가로 이어져서는 아니 됨
  - 시설(학교)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결과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결산 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
- 나. 보조(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과 정산 등 관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사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보조금 등 회계 관계 증빙서는 5년 이상 보관
- 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정산을 실시
- 라. 보조금의 정산잔액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반납



VI

행정사항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운영
2. 현재 운영규칙을 변경하지 않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 맞지 아니하거나 이 지침에 따라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 학교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운영규칙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람.
3. 시설(학교)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결과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결산 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
4.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 보고 : 각 시설(학교)에서는 매년 4. 1. 자 현재의 시설·설비 현황 및 교직원 현황을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보고
5. 기존 시설은 등록·지정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시설·설비·교구 등이 현재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서는 학교 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함. 다만, 증설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
6.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업무 처리 후 학교형태(학력인정 포함)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지정 현황을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복지과)으로 보고

## □ 각종 서식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214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별지 제10호 서식> .....	215
3.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216
4.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별지 제12호 서식> .....	218
5.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	219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0호의2 서식> .....	221
7.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별지 제10호의3 서식> .....	223
8. 수업실(보통교실) 설비 기준 .....	224
9. 보건실 설비 기준 .....	226
10.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기준 .....	228
1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예시) .....	229
12. 교육과정 편성표(예시) .....	237
1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관련 첨부서류 양식 .....	246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범죄 전력 조회) .....	258
1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259



## 【서식 2】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1. 명 칭:

2. 설치자:

3. 위 치: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교육감(교육장)

직인

- 주: 1.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위의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은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서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각 1부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5. 교구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7. 지적도 및 위치도 각 1부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서식 4】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 1. 기관명:
- 2. 위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교육감(교육장)

직인

주: 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인수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5. 원거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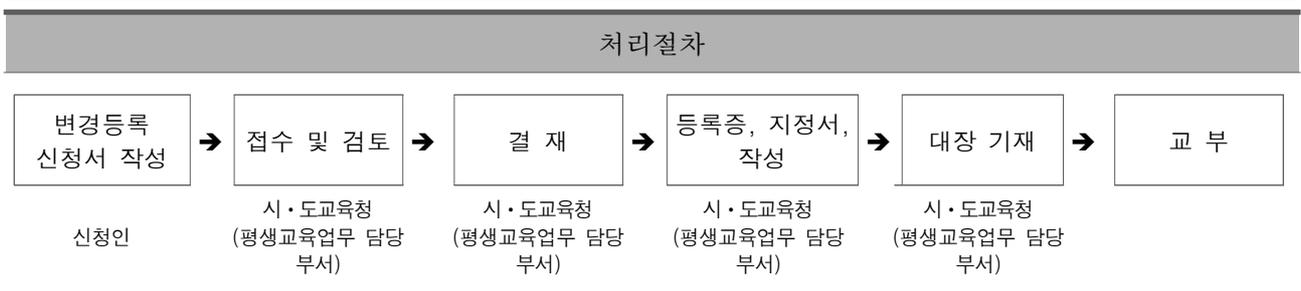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첨부서류		
변경사항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칭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위치	1. 위치도 1부 2. 시설배치도 1부(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표 1부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설비	1. 시설·설비 현황표 1부 2. 시설배치도 1부	
운영규칙	운영규칙 1부	



【서식 7】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등록· 신고번호 (등록일자)	변경 일자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전화번호	폐쇄 일자	폐쇄사유	비고 (확인)
		명칭	위치	교육 과정	경비 형태 (학습비 등)	기타	성명 (한자)				
							( )				
							( )				
							( )				
							( )				
							( )				
							( )				
							( )				
							( )				
							( )				
							( )				

【서식 8】

## 수업실(보통교실) 설비의 기준

■ 초등학교 과정

구분	설비종목	규격	사용학년	소요기준	필수	권장	기타
	①철판, 게시판		전학년	학급당1	○		
	②학생용 책·결상		전학년	학생당1	○		
	③교사용 책·결상		전학년	학급당1	○		
	④컴퓨터	듀얼프로세서 이상, LCD모니터 및 DVD 멀티 포함	전학년	학급당1	○		
	⑤LCD TV	PDP, LED TV 등 가능	전학년	학급당1	○		⑤, ⑥, ⑦ 중 택일
	⑥프로젝션 TV	56인치 이상					
	⑦LCD프로젝터	전동스크린 포함					
	⑧실물화상기		전학년	학급당1		○	⑧, ⑨ 중 택일
	⑨투시환등기(OHP)						
	⑩이동식 철판	화이트보드, 자석용	전학년	학급당1		○	
계	10				5	2	

■ 중·고등학교 과정(교과 공통)

교과	영역	설비종목	규격	사용학년	소요기준	필수	권장	기타
전 교 과	설 비 기 준	1.칠판, 게시판	보통교실, 특별교실용	전학년	학급당1	○		
		2.학생용 책·결상	보통교실, 특별교실용	전학년	학생당1	○		
		3.교사용 책·결상	보통교실, 특별교실용	전학년	학급당1	○		
		4.컴퓨터	보통교실, 특별교실용	전학년	학급당1		○	
		5.노트북			학교당3		○	
		6.플로터			학교당1		○	
		7.컴퓨터용 프린터			학급당1		○	
		8.스캐너			12학급당1		○	
		9.액정TV	PDP, LCD, LED TV 등 (43인치 이상)가능	전학년	학급당1	○		9,10 중 택일
		10.프로젝션 TV	56인치 이상					
		11.빔 프로젝터	스크린 포함		학교당1	○		
		12.실물 화상기			12학급당1		○	
		13.이동식 칠판	과목별 내용 포함	전학년	8학급당1		○	
		14.교내 방송시설	학년, 실별 방송가능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학교당1		○	
		15.디지털 캠코더			학교당1		○	
		16.이동식 앰프	마이크 포함		학교당1		○	
		17.확성기	휴대용		6학급당1		○	
계		17				5	11	



【서식 9】

## 보건실 설비 기준

구 분	시설 및 기구명	학교 규모별 구비사항		비고
		초등학교 18학급미만, 중고등학교 21학급 미만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 학교, 각종학교	초등학교 18학급이상, 중고등학교 21학급 이상 특수학교	
1. 일반시설 및 기구	사무용 책상·의자	필수	필수	
	건강기록부 및 서류보관장	〃	〃	
	약장·기기 보관함	〃	〃	
	소독(멸균)기	〃	〃	
	냉·난방시설	〃	〃	
	통신시설	〃	〃	
	컴퓨터·프린터기	〃	〃	
	냉·온장고	〃	〃	
	가습기	권장	〃	
	수도시설 및 세면대	〃	권장	손발 구분 사용
	온수시설	〃	〃	
	물 끓이는 기구	〃	〃	
	손전등	〃	〃	
	철판·교육기자재(TV, VTR)	〃	〃	
	컵 소독기	〃	〃	
2. 환자안정용 기구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칸 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필수	필수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신장계	필수	필수	
	체중계	〃	〃	
	줄자	〃	〃	
	좌고계	〃	〃	
	시력표, 조명장치, 눈가리 개, 시력검사용 지시봉	〃	〃	
	색각검사표	〃	〃	
	청력계	〃	〃	
	혈압계	〃	〃	
	청진기	〃	〃	
	혈당측정기	권장	〃	
	검안경, 검이경, 비경	〃	〃	
	펜라이트	〃	〃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 찰용 의자 등	〃	〃	
	스톱워치	〃	권장	
	비만측정기	〃	〃	
치과용 거울, 탐침, 핀셋	〃	〃		

구 분	시설 및 기구명	학교 규모별 구비사항		비고
		초등학교 18학급미만, 중·고등학교 21학급미만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초등학교 18학급이상, 중·고등학교 21학급이상 특수학교	
4. 응급처치용 기구	체온계(고막, 이마)	필수	필수	
	핀셋·핀셋통	〃	〃	
	가위·농반·가제통	〃	〃	
	소독접시, 드레싱카	〃	〃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	〃	
	휴대용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권장	권장	
	세안수수기·찜질기	〃	〃	
	켈리(지혈감자)	〃	〃	
	적외선치료기	〃	〃	
	응급처치 카드	〃	〃	
5. 환경위생 검사용기구	통풍건습계	〃	〃	
	조도계	〃	〃	
	먼지측정기	〃	〃	
	소음계	〃	〃	
6. 보건교육용 기구	성교육용 도구	〃	〃	
	흡연예방교육용 도구	〃	〃	
	안전교육용 도구	〃	〃	
	구강(치아)모형	〃	〃	
	심폐 소생술 실습용 인형	〃	〃	
	기타 태아모형 등 보건교육기구	〃	〃	
7.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시설 (보건교육실 포함)기구 등	〃	〃	

【서식 10】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기준

- 근거 : 평생교육법 제42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유형별 처분기준 : 처분기준에 없는 사항은 감사관 감사처분 기준 준용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기준							
		주의	경고	보조금		교육과정 운영중지		교육 과정 폐쇄	등록 지정 취소
				감액	지원 중단	일부	전부		
등록 지정 기준	시설·설비 무단변경 (시설확장 및 축소, 위치이전 등 포함)		○		○	○	○		
	설치자 임의변경			○	○	○	○	○	○
	학교시설, 운영권 무단임대			○	○	○	○	○	○
	기타 등록·지정 기준 임의변경	○	○	○		○	○		
	승인조건 미이행	○	○	○		○	○		
회계 운영	보조금 횡령		○	○	○	○	○	○	○
	보조금 관리 부적정	○	○	○		○			
	제장부 미비치, 관리 부적정	○	○	○		○			
	학습비 상한액 초과 징수	○	○	○	○	○			
	회계운영 부적정		○	○	○	○			
예산편성 부적정	○	○	○						
교육 과정 운영	교육과정운영 부적정(고의, 중과실)		○	○		○	○	○	
	교육과정운영 소홀	○	○	○		○			
학사 관리	법정장부관리 부적정	○	○	○		○			
	전·편입업무 부적정	○	○	○		○			
	생활지도 부적정 (고의, 중과실로 사회문제화)		○	○		○	○		
	생활지도 부적정(경미한 사항)	○	○			○			
기타	교육청 시정명령, 보고사항 등 3회 이상 미이행, 허위보고		○	○	○	○	○	○	
	시정명령, 보고사항 미이행(2회 이하)	○	○	○		○			
	명칭사용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	○	○						

- ※ 교육과정 운영정지: 학교 지정조건에 따라 주·야간, 1년 3학기제·1년 2학기제, 학년별 교육과정 중 일부 또는 전체 교육과정에 대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영 정지
- ※ 동일한 사례가 다시 지적될 경우 가중처분 가능

## 【서식 11】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0학교 운영규칙(예시)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및 경제적 이유 등 개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성인들을 정상교육으로 승화시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본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0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 ○○구 ○○로 ○○에 둔다.

###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 과정(주간)과 2년 과정(야간)을 병행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주간인 경우 :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야간의 경우(1년 3학기제)
  - 제1(4)학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 전후
  - 제2(5)학기 : 7월 2일 전후부터 10월 31일 전후
  - 제3(6)학기 : 11월 1일 전후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6조 (휴업일) :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인 경우 (1년 2학기제)
  - ① 국경일
  - ② 공휴일
  - ③ 개교기념일(10월 15일)



- ④ 하계휴가 : 7월 22일 - 8월 27일
- ⑤ 동계휴가 : 12월 28일 - 다음 해 2월 5일
- ⑥ 학년말 휴가 : 2월 24일 - 2월 말 일

2. 야간의 경우 (1년 3학기제)

- ① 국경일
- ② 공휴일
- ③ 개교기념일(10월 15일)
- ④ 하계휴가 : 6월 하순 (약 2주)
- ⑤ 추계휴가 : 10월 하순 (약 2주)
- ⑥ 동계휴가 : 익년 2월 말 (약 2주)

- ◎ 제4호, 5호, 6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 전항 각호 이외에 비상 재변 기타 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과) 본교에서는 경영정보과, 미용예술과, 자동차과를 둔다.

제8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학년 당, 경영정보과 2학급, 미용예술과 2학급, 자동차과 2학급 남녀혼합 6학급씩 총 18학급

제9조 (학생 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학급당 40명씩 (주간) 720명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고사 · 과정수료 · 졸업

제10조 (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경기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 · 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 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 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학생 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 (수료)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6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제15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고등학교 과정 입학 자격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6조 (입학 시기)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재입학) 본교를 퇴학(자퇴) 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 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전·편입학 방법) 전·편입학 방법에 관하여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제19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해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은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자퇴)

- ①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공휴일 포함)의 숙려 기간을 둔다.

제21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및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4조 (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본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6조 (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기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학칙을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장 학 습 비

#### 제27조 (학습비 등 징수)

① 학습비는 학습자가 학업의 대가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의미한다.

② 학습비와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타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학습비 반환) 학습비의 반환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별표 3]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29조 (학습비·입학금의 면제·감액) 학교장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학습비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학습비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제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 (학급회) 학생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학급마다 학급회를 조직·운영한다. 학급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32조 (학생회) 학급회의 기초 위에서 전교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33조 (기타 학생 자치 활동) 학급회, 학생회 외의 학생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 자치 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지도한다.

### 제10장 보칙

제34조 (학칙 개정 절차)

- ① 학칙의 개정은 기획위원회, 교직원회 등의 건의가 있을 때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이 발의한다.
- ② 발의된 조항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의견 수렴 및 기획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하여 자구 수정 후 최종안을 작성한다.
- ③ 작성된 최종안은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35조 (지도점검)

- ① 【교육기본법 제17조】, 【평생교육법 제42조, 제42조의 2】 에 의한 지도·점검 시 성실하게 지도·감독을 받는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 학생 선발 규정

1. 모집 정원

- ① 모집 지역: 전국 단위 모집
- ② 모집인원(안): 1학년 1학급 40명, 2학년 1학급 40명, 3학년 1학급 40명

2. 기본 지원 자격

- ①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국외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②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 입학에 희망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졸 업 장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과) 3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학교 교장 ○○○

학 교 장  
직 인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서식 12】

## 교육과정 편성표(예시)

## 1. 초등학교 과정

구분	교과	지침 기준 시간 (1~2학년까지)	○○ 학교 교과과정 이수시간 편성		
			1학년	2학년	계
1.교과(군)	국어	448			
	수학	256			
	바른 생활	128			
	슬기로운 생활	192			
	즐거운 생활	384			
2.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336 (64)			
총 수업 시간 수(1+2)		1,744			

구분	교과	지침 기준 시간 (3~4학년까지)	○○ 학교 교과과정 이수시간 편성		
			3학년	4학년	계
1.교과(군)	국어	408			
	사회/도덕	272			
	수학	272			
	과학/실과	204			
	체육	204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136			
2. 창의적 체험활동		204			
총 수업 시간 수(1+2)		1,972			

구분	교과	지침 기준 시간 (5~6학년까지)	○○ 학교 교과과정 이수시간 편성		
			5학년	6학년	계
1.교과(군)	국어	408			
	사회/도덕	272			
	수학	272			
	과학/실과	340			
	체육	204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204			
2. 창의적 체험활동		204			
총 수업 시간 수(1+2)		2,176			

※ 교육과정은 실정에 맞게 편성할 것



2. 중학교 과정

구분	교과	지침 기준 시간 (1~3학년까지)	○○ 학교 교과과정 이수시간 편성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 (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	170				
	소계	3,060				
2.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1+2)		3,366				

※ 교육과정은 실정에 맞게 편성할 것

## 3. 고등학교 과정

구분	교과	지침 기준 (1~3학년까지)		○○ 학교 교과과정 이수단위 편성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 교과 (군)	기초	국어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0					
		영어	10					
		한국사	6					
	탐구	사회 (역사, 도덕포함)	10					
		과학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86			
2.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1+2)		204						
총 수업 시간		3,468						

※ 총 수업 시간수 : 총 이수 단위수×17시간

※ 교육과정은 실정에 맞게 편성할 것

4. 고등학교 과정(특성화고)

구분			교과(군)	지침 기준 (1~3학년까지)		○○ 학교 교과과정 이수단위 편성			
				필수이 수단위	자유편성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 교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영어						
			한국사	6					
	탐구	사회 (역사,도덕포함)	12						
		과학							
	체육 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전문 교과 II	17개 교과(군) 등	86	28						
2.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총 수업시간				3,468					

※ 총 수업 시간수 : 총 이수 단위수×17시간

※ 교육과정은 실정에 맞게 편성할 것

## 참고

##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① 초등학교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 군 및 교과(군) 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 ② 중학교

구 분		1~3학년
교 과 (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 군 및 교과(군) 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③ 고등학교(일반고, 특목고)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 로 공통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 를 의미한다.

4] 고등학교(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전문 교과II	17개 교과(군) 등			86	28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 를 의미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 를 의미한다.



□ 시간표

※ 작성요령(고등학교 과정 예시)

- 수업 시간 50분 준수(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해당 과목 시간표 작성 후 수업 들어가는 반을 표시

○ 선생님 시간표

- 000 선생님(국어, 한문 - 교육과정 편제표상 과목과 일치)

교시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08:50-09:40		국어 (3-1)	국어 (1-2)	국어 (1-4)	한문 (3-3)	한문 (3-4)	체험활동 (1-1)
2교시	09:50-10:40		국어 (3-2)			한문 (3-2)	국어 (1-1)	체험활동 (3-1)
3교시	10:50-11:40		국어 (3-3)					체험활동 (3-1)
4교시	11:50-12:40				국어 (1-1)		한문 (3-1)	
5교시	13:40-14:30		국어 (1-2)	국어 (1-1)		국어 (3-4)	국어 (1-4)	
6교시	14:40-15:30							
7교시	15:40-16:30							

- 000 선생님(수학)

교시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08:50-09:40		국어 (3-1)	국어 (1-2)	국어 (1-4)	한문 (3-3)	한문 (3-4)	체험활동 (1-1)
2교시	09:50-10:40		국어 (3-2)			한문 (3-2)	국어 (1-1)	체험활동 (3-1)
3교시	10:50-11:40		국어 (3-3)					체험활동 (3-1)
4교시	11:50-12:40				국어 (1-1)		한문 (3-1)	
5교시	13:40-14:30		국어 (1-2)	국어 (1-1)		국어 (3-4)	국어 (1-4)	
6교시	14:40-15:30							
7교시	15:40-16:30							

※ 작성요령

- 반별 시간표 작성 시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 표시
- 작성 후 선생님 시간표와 반별 시간표 일치 여부 검토 후 제출

## ○ 반별 시간표

- 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시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08:50-09:40		컴퓨터일반 (나훈)	음악 (이기쁨)	수학 (이영숙)	영어 (윤정원)	상업경제 (배주원)	체험활동 (윤정원)
2교시	09:50-10:40		컴퓨터일반 (나훈)	수학 (이영숙)	한국사 (김남희)	음악 (이기쁨)	국어 (김소영)	체험활동 (윤정원)
3교시	10:50-11:40		상업경제 (이소정)	상업경제 (배주원)	기술 가정 (김영규)	기술 가정 (김영규)	한국사 (유지현)	체험활동 (윤정원)
4교시	11:50-12:40		수학 (이영숙)	한국사 (김남희)	국어 (김소영)	상업경제 (이소정)	상업경제 (이소정)	
5교시	13:40-14:30		한국사 (유지현)	국어 (김소영)	컴퓨터일반 (문지연)	컴퓨터일반 (문지연)	영어 (윤정원)	
6교시	14:40-15:30		컴퓨터일반 (나훈)	음악 (이기쁨)	수학 (이영숙)	영어 (윤정원)	상업경제 (배주원)	
7교시	15:40-16:30		컴퓨터일반 (나훈)	수학 (이영숙)	한국사 (김남희)	음악 (이기쁨)	국어 (김소영)	

- 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시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08:50-09:40		컴퓨터일반 (나훈)	음악 (이기쁨)	수학 (이영숙)	영어 (윤정원)	상업경제 (배주원)	체험활동 (윤정원)
2교시	09:50-10:40		컴퓨터일반 (나훈)	수학 (이영숙)	한국사 (김남희)	음악 (이기쁨)	국어 (김소영)	체험활동 (윤정원)
3교시	10:50-11:40		상업경제 (이소정)	상업경제 (배주원)	기술 가정 (김영규)	기술 가정 (김영규)	한국사 (유지현)	체험활동 (윤정원)
4교시	11:50-12:40		수학 (이영숙)	한국사 (김남희)	국어 (김소영)	상업경제 (이소정)	상업경제 (이소정)	
5교시	13:40-14:30		한국사 (유지현)	국어 (김소영)	컴퓨터일반 (문지연)	컴퓨터일반 (문지연)	영어 (윤정원)	
6교시	14:40-15:30		컴퓨터일반 (나훈)	음악 (이기쁨)	수학 (이영숙)	영어 (윤정원)	상업경제 (배주원)	
7교시	15:40-16:30		컴퓨터일반 (나훈)	수학 (이영숙)	한국사 (김남희)	음악 (이기쁨)	국어 (김소영)	

※ 1단위는 50분 기준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예를 들어 국어 1학년 1학기 이수단위가 4단위라면 4단위×17회=68시간이므로 해당 학기 반별 시간표에서 수업 시간 합이 68시간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함

※ 담당 선생님이 없는 과목의 경우 없는 사유(근거)와 향후 충원 계획서 등 작성

- 사유 : 필요한 시간에만 시간제 강사 채용 운영 등(예시)

- 00년 00월에 채용할 계획임(예시)

【서식 13】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관련 첨부서류 양식

일반현황

○ 설치자 현황

평생교육시설명	설립자	소재지	비고

○ 법인연혁(법인인 경우)

- 설립일 :
- 설립자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목적

- 평생교육 이념에 따라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습과 실천의 일상화, 올바른 사회비판력 함양.
- 정의, 민주, 평등 정신에 입각한 완성된 인간교육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계획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

○ 평생교육시설 일반현황

평생교육 시설명	학력인정		계열	학급수			학생 정원			모집	학교형태 지정일시	개교 예정일	소재지	비고
	인정	미인정		주	야	총	주	야	총					

- ☞ ① 계열 : 인문계, 실업계, 가사계, 예체능계 구분
- ② 모집 : 남자, 여자, 남녀공학 구분
- ③ 비고 : 기존, 신설 구분

## □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 ○ 소요경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소요자금
① 교육용기본재산	㉗ 교지구입비	
	㉘ 교사건축비	
② 수익용기본재산(신설학교 기준액+기설학교 기준액)		
③ 교구·설비 확보		
④ 기 타(실험·실습 시설·설비 포함)		
합 계		

### ○ 학교회계 운영계획서(0000년)

구분	관	항	목	예산	비율 (%)	비고	
세입	의무금	수업료	수업료			00명×342,900원×4분기	
			현장학습비			00명×150,000원×2회	
	보조금	학교운영 지원금	학교운영지원금			00명×73,860원×4분기	
			운영보조금	운영자보조금		0,000,000원×12개월	
	잡수입	후원금	일반후원금			기업, 단체 후원금	
			이사회 후원금			0,000,000원×12개월	
	잡수입	잡수입	기타수입			후원의 밤 행사, 기타	
합 계				0			
세출	재산조성비	시설비	임대비				
		자산취득비	건축준비금				
	사무비	인건비	교원				교원 00명×월0,000,000원×12개월
			직원				직원 0명×월0,000,000원×12개월
			상여금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월0,000,000원×12개월
		관리운영비	냉난방비				0,000,000원×12개월
			각종공과금				0,000,000원×12개월 (전화, 수도 전기요금등)
			영선비				0,000,000원×12개월
	차량유지비					0,000,000원×12개월	
			교직원훈련비			연 2회×0,000,000원	
	사업비	학생연수비					
		현장학습	현장학습비			00회×000,000원	
		홍보비	학교홍보비				
예비비							
합 계				0			



□ 보충소요경비 조달계획서

○ 소요경비 부족내역

[단위: 천원]

구분	소요액	확보액	부족액
① 교사건축비			
② 교구·설비			
③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④ 기타			
합계			

○ 부족소요경비 보충계획

[단위: 천원]

재산의 구분	조달방법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계
① 교사건축비					
② 교구·설비					
③ 실험·실습 시설·설비					
④ 기타					
합계					

[붙임]

1. 조달방법 증빙서류
2. 출연증서

## □ 시설·설비 현황표

## ○ 학생 현황

학 과	학급수	학생 정원	총 정원	비 고
계	-	-	-	

## ○ 시설 현황

구 분			확보계획 (A)	확보현황 (B)	확보율 (B/A)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1	교 지	m <sup>2</sup>					
2	교 사	m <sup>2</sup>					
3	체육장	m <sup>2</sup>					
합 계			-	-	-	-	

※ 교지면적에 체육장 포함하고, 체육장 별도 기재



○ 교지(校地)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등기상 소유자 (법인 또는 설립자 개인)	확 보 면 적 (㎡)				지 가 (천원)
				증여	매입	임대	계	
계								

[붙임]

1. 지가 산출기초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 중 택일
2.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서
3. 지방자치단체와의 임대차계약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4. 매입비 기지급금 및 미지급금 내역서

- ※ ① 등기상 소유자 : 임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② 확보계획 당시 설정된 담보물권 및 용익물권 등은 해지

○ 교사(校舍) 건축명세서

시 설 명	건축내역(㎡)			건축소요금액 (천원)		비고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당 건축단가	총소요금액	
계						

[붙임]

1. 교사(체육장 포함) 배치도 및 평면도
2. 건축허가서 및 사용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 시설 확보명세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수업실	보통교실1						
	보통교실2						
	보통교실3						
	보통교실4						
관리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자료실	도서실						
특별실	과학실험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기타	보건실						
	식당						
	체육관 및 강당						
	화장실						
계							

○ 시설 세부내역

[단위:㎡]

구 분	시 설 명	가로	세로	면적	비고
수업실	보통교실1				
	보통교실2				
	보통교실3				
	보통교실4				
관리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자료실	도서실				
특별실	과학실험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기타	보건실				
	식당				
	체육관 및 강당				
	화장실				
계					

※ 실안에 기둥이 있는 경우 기둥 면적 제외



○ 층별 시설 현황

층	설치 년도	완공 년도	실별 구분														비 고
			보통교실		관리실		자료실		특별실		기타		...		총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지하																	
1																	
2																	
...																	
옥상																	
계																	

※ ① 보통교실(수업실), 자료실(도서실, 교육정보검색실 등),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가사실, 시청각실 등), 관리실(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숙직실 등), 기타(복도, 창고 등 공유면적 포함)

② 각실 면적의 계는 교사연면적과 일치

## □ 교구·설비 확보명세서

## ○ 보통교실

구 분	설비 종목	규 격	보유현황 (수량)	비고
보통교실	1. 칠판, 게시판	보통교실, 특별교실용		필수
	2. 학생용 책·결상	보통교실, 특별교실용		필수
	3. 교사용 책·결상	보통교실, 특별교실용		필수
	4. 컴퓨터	보통교실, 특별교실용		권장
	5. 노트북			권장
	6. 플로터			권장
	7. 컴퓨터용 프린터			권장
	8. 스캐너			권장
	9. 액정TV	PDP, LCD, LED TV 등 (43인치 이상)가능		필수
	10. 프로젝션 TV	56인치 이상		필수
	11. 빔 프로젝터	스크린 포함		권장
	12. 실물 화상기			권장
	13. 이동식 칠판	과목별 내용 포함		권장
	14. 교내 방송시설	학년, 실별 방송가능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권장
	15. 디지털 캠코더			권장
	16. 이동식 앰프	마이크 포함		권장
	17. 확성기	휴대용		권장
:				
:				
:				

## ○ 체육장

영역	설비 종목	규격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체육장	농구대						



○ 특별교실

구 분	설비 종목	규 격	소요기준	보유현황	비고
특별교실					
과학실험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도 서 실					

○ 보건실

구 분	설비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 화장실

구 분	층	남		여		비고
		좌변기	소변기	좌변기	소변기	
학생용 화장실	지상1층	3개	5개	1개		
	지상2층		5개	4개		

□ 시설 배치도

교장실 (51.17㎡)	(남) 화장실 (18.95㎡)	관	(남) 화장실 (18.95㎡)	도
행정실 (112.29㎡)	(여) 화장실 (13.79㎡)		(여) 화장실 (13.79㎡)	
		부	도	
가사, 실습실 (136.99㎡)			도서실 (46.82㎡)	미술실 (25.95㎡)
		도	부	
교구 준비실 (80.45㎡)			제1교실 (53.38㎡)	제2교실 (53.74㎡)
매점 (53.51㎡)		제3교실 (54.0㎡)	제4교실 (53.7㎡)	제5교실 (52.95㎡)
상담실 (27.09㎡)		도		
제2전산실 (99.78㎡)		제6교실 (50.13㎡)	제7교실 (55.78㎡)	제8교실 (51.37㎡)
		부		
		제2전산실 (80.91㎡)	자료실 (19.17㎡)	
		음악실 (53.71㎡)	교무실 (62.16㎡)	
		방송실 (26㎡)	휴게실 (26.67㎡)	
		소강당(다용도실) (215.23㎡)	휴게실 (22.00㎡)	
		기자재실 (55.4㎡)	휴게실 (22.00㎡)	



## 재산 목록 및 증빙자료

### ○ 재산목록

구 분			확보계획 (A)	확보현황 (B)	확보율 (B/A)	소요금액 (백만원)	비고
1	교 지	m <sup>2</sup>					
2	교 사	m <sup>2</sup>					
3	체육장	m <sup>2</sup>					
합 계			-	-	-		

### ○ 건축물대장 등본

### ○ 토지대장 등본

## 교직원현황

### ○ 교직원 확보 계획

구분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비고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				
평생교육사				
계				

※ 교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자격증 소지자

### ○ 교직원 임용 현황

과 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최종학력	전공	임용 (예정)일	비고
계							

※ 교원확보 증빙서(이사회 회의록, 교원 임용증빙서류)

## □ 평생교육사 현황

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격증 고유번호	자격증 발급일시	자격증 발급기관	임용 (예정)일	비고
계								

※ 평생교육사 확보 증명서(이사회 회의록, 평생교육사 이력서, 고용계약서, 채용계획, 자격증사본, 근무중일 경우 재직증명서 등)

## □ 도서목록(500권이상)

순번	도서명	저자	발행년도	출판사명
1	파우스트	괴테	0000년도	00출판사
2				
3				
4				
5				
6				



## 【서식 15】

■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응답 사례





## I. 평생교육시설 총괄

### ◆ 평생교육법 해석 [평생학습 기관, 단체, 시설 등록에 대하여]

저는 ○○시청 평생학습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평생교육법」을 근거하여 우리시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관계 법령 해석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니 정확히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중 다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라는 문항을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에 평생학습시설을 시장이 따로 고시코자 합니다.

조례(안) :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관 단체 및 학습시설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2조 다항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이란 ‘「도서관법」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미술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청소년기본법」 - 한국청소년수련원’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조 다항에 기술된 ‘다른 법령’의 의미를 ‘조례’로 해석하여 ‘평생학습기관 등’을 조례로 고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을 인정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3. 19.

### ◆ 평생교육법 관련 문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된 평생교육법상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각 개별법에 의한 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비영리민간단체(국가기관 등록 시 주된 목적이 평생교육인)의 자체 회원을 위한 연수 시설 및 노인관련시설 등에서 자체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상기 시설들이 학원법 제2조1호바목상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학원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아닌지?
2. 또한 상기 시설인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평생교육의 대상은 전 국민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나 학교 학생 연령대의 국민은 평생교육기관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 먼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의 증진을 통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는 시설 또한 평생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조항 제2호에서는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 및 기타 프로그램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받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6. 9.



◆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 시설 기준 문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층을 달리해 세 층을 쓰는 경우, 평생교육법을 보면 강의실 기준이 없는 바, 그럼 학원법을 준용하여 단위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 평생교육법에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많은 학습자에게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습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실 확보 등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6. 7. 19.

◆ 평생교육시설의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폐교시설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원으로는 “학원법”에 따른 ‘기숙학원’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3. 12.

◆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문의

시설확충과 더불어 평생교육시설을 기존의 법인에서 별도의 신설법인(영리 또는 비영리)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신설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있는지, 지위승계 시에도 최초 설치 시와 동일하게 지식·인력개발분야 주된 목적사업으로 의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설치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요?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는 새로운 설치자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요건 및 자격을 갖춘 자만이 지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지위승계는 시도교육청에 이양된 사항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0. 7. 2.

◆ 평생교육시설 설립 과정 문의

평생교육원 설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부설로 설치하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시도교육청(실 업무는 주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에서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등록을 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설치 요건은 시도교육청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설치 하시고자 하는 주소지 소재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5. 25.

##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원어민 수급

저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향후 저희 수련원에서 원어민을 직접 수급하여 영어캠프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원어민수급을 직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저희 같은 단체가 원어민을 직접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2. 평생교육시설로의 등록이 가능한지요?

- 귀 수련원은 평생교육 관련 개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로서 평생교육 시설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수련원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바, 교과부에 등록신고하는 평생 교육시설로 지정하여 명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원어민 수급문제는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와 직결되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5. 22.

## ◆ 평생교육시설 수강료 환불 문의

평생교육원 접수 후 사정으로 환불을 문의했으나 환불은 3분의 2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강 시작일이 아니라 중간등록을 했는데 제가 듣기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학습비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습을 포기하게 된 경우는 별도 방식에 의해 학습비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는 첫 학습이 시작된 후 추가 접수를 하신 상태이나, 학습비는 첫 학습부터를 기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학습이 시작된 첫날부터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날까지의 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만약 학습을 포기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그 달의 총 수업시간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미 낸 학습비의 2/3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1/2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학습비의 1/2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2이 지난 후라면 그 달의 학습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때 총 수업시간이란 1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3월 7일 시작된 과정은 4월 6일까지 1개월로 봅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강좌가 3개월 과정이나 6개월 과정이라면, 3월 21일에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그 다음날을 기점으로 그 달의 수업시간을 계산하여 1/2이 지났으면 첫 1개월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고 나머지 달의 수업료는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1/2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달의 학습비 1/2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를 합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3. 31.

## ◆ 법인의 정관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에 평생교육시설운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 등에 평생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의 정관 등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시설 중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교육부 질의답변 2006. 7. 25.

◆ 직업전문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한지

「평생교육법」 4장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가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의하여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면 이를 시설 지정받을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법」 상의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단, 재단법인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평생교육시설과 설치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 대상으로 보이는 바,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할 교육청에서 협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7. 6.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간편화

첫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지위 승계신고서도 법의 취지나 다른 부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류의 간소화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인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시설이다 보니 평생교육 설치 신고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대형 교육기관의 경우엔 여러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신고가 아닌 한 개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지위승계 시 제출하는 서류는 인계 인수서,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설치 요건(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등) 및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항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의 적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시설을 각각 신고(원격 별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시설 요건 등)을 갖추게 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미신고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실시 가능 여부

성인을 대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육습과정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신고할 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내고 평생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5조에 의거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한 동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하여 폐쇄 조치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도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

저희 기관은 5개월 과정 교육비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강 전에 일괄 수강신청을 받아 인원을 확정하고 있으나 취소자가 종종 발생하여 추가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습자가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 학습비 징수(수업)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 문구를 근거로 중간 등록자에게 동일한 수강료를 징수 및 환불하고 있는데 적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에는 수강이 시작된 이후 추가모집에 따라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 조항관련 별표3에 따르면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추가 모집 시 “교육기간은 처음 시작일로 소급적용하며, 수강료도 일할계산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을 공지하시더라도, 추가모집기간에 신청 후 취소하는 수강생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 수강료 환불금액 기준

당사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고 해당 시설을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환불 발생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원래 수강료 정가가 90,000원이고, 수강생이 이벤트 할인을 받아서 60,000원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발생 시 수강료 기준은 90,000원인지, 60,000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귀 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료를 해당 학습자에게 안내하였다면 할인된 가격이 해당 과정의 수강료가 되는 것이므로 학습비 환불도 그 수강료에 맞게 환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 대해 귀 시설에서 학습자에게 개인사정을 반영하여 수강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안내하였다면 환불 시에는 연장된 수강기간을 고려해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 참고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3 서식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II. 교육과정

## ◆ 평생교육의 명확한 범위

장학재단에서 지자체내 고등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주말 및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의 정의에 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도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어 혹시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위와 같은 교육이 평생교육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교육관계자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이 아니고 영재교육이며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에 해당된다고 해서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장학재단”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 사항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3. 29.

◆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문의[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

현재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교과목과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설치자가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과정이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운영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5. 19.

◆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질의

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초·중고)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체험활동 중심의 청소년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3조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범위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원법에 의한 교습과정을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습과정과 교육대상은 관할교육청에서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 교과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10. 7.

◆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 대상 교육 가능 여부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은 개설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7. 13.

## ◆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대상 교육 가능 여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
- 특히 영·유아 대상 및 특수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학원법과 보육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놀이학교의 경우 “부모와 함께하는 형태” 라면 부모를 교육대상자로 볼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5. 3.

## ◆ 평생교육시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가능 여부

평생교육시설인가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2의 제1항 1의 다항목을 적용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연령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에게 특별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듯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이란
  1.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
  3.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
  4.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설 설비기준, 강사기준, 교습비 기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학원이 적절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 편법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적용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12. 12.

## ◆ 병원코디네이터 과정 등 가능한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 가능한지? (병원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환자진료 시간예약, 전화상담, 내방환자관리, 접수 수납, 병원 실내외 환경 조성, 친절교육, 홍보 방향 설정, 병원 마케팅, 직원 관리 및 인사관리 등)

-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 의료, 보건인력 중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마케팅 관련 직업훈련 과정이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5. 5. 26.



◆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관한 질의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로 아동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기관도 있으나 법 제38조의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교육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 인문교양교육, ...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에서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이란 다의적이고, 불확정 개념인 바,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의 경계를 구별할 수 없어 개념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 부탁

-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고 「평생교육법」(제4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평생교육의 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취학 전 아동 또한 평생교육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은 평생 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법 제6조)에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음과 관련된 내용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조에 따른 '유아대상 교습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교습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등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업무는 교육감 소관 사항이므로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인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6. 17.

◆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과정 편성 가능한지 여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아닌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는 과정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요양보호사의 양성과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없으며 직무교육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연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지정한 직무교육기관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합니다.(보건복지부 답변)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과정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무·보수교육과정의 명칭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Ⅲ. 평생교육사

#### ◆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현재에는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없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사 배치 요구를 강제할 만한 관계 법령은?

- 「평생교육법」 제26조는 ‘동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기존인지 신규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며,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한다는 의무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5. 6.

#### ◆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업무 겸임 여부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사가 타부서 업무를 겸임할 수 있나요?

- 현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별표 2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채용시 정규직/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고용 형태 역시, 상기 서술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법상 고용 형태는 전임, 비전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10. 17.

#### ◆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및 고용형태는?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는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의 고용 형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체결한 고용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IV. 명칭

##### ◆ 평생교육시설 명칭 사용 문의

제가 현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케이블 TV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방송 프로를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상호 명칭에 [영어방송문화원] 또는 [영어 방송교육원]으로 개칭하고자 하는데 방송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은 없으나 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 사용에 관련 사항은 평생교육시설을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11. 8.

##### ◆ 동일명칭의 평생교육기관

○○지역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서 저희와 같은 이름으로 비영리시민사회단체로 평생교육시설을 허가받으려는 곳이 있습니다.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상대방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평생교육법에서 같은 지역 내에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시설의 동일명칭 사용에 관해서는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보아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있다면 동일 구역 내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2. 25.

#####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명칭 문의

우리 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오셨는데 그 명칭이 “한국산업안전 교육연구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있는데, 평생교육시설로 “산업안전” 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어도 되는지? 그리고 각종 “교육연구원” 또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지만,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는 기관과 유사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시 시설명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시설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 규정(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령상 설립 운영자가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6. 7. 18.

## V. 교육장 및 시설

### ◆ 평생교육시설 시설 임차 가능 여부

평생교육시설을 단기간(3~4일) 임차하여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자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의 훈련장소를 임대하여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상」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평생교육시설을 그러한 용도(고용보험 환급과정 진행을 위해)로 임차하는 행위가 위법인지도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은 이를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8. 8.

### ◆ 평생교육시설장소 [인가장소] 외에서 또는 해외에서 과정운영 가능한지

저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내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발판이 된다고 판단이 되나, 현 상황에서 평생교육시설법에는 위배 되는게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며, 다른 하나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평생교육원 과정이나 부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해외 기관 또는 협회와의 MOU를 맺음으로써 과정운영 개설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기여토록 한 것이므로 보고(신고)된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학 소재지 이외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임차를 통해 분원을 설치하면 가능하나, 권역별로 분원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권, 대전충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평생교육법은 국내법이므로 해외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해외에서의 평생교육은 해당국가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8. 21.

### ◆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소를 달리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법」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이나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 설치목적이나 교육운영 등을 고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7. 9.

### ◆ 교육장 타인에게 임대 가능한지 여부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 등을 타인에게 교육장 등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자가 신고한 위치에서 신고목적(교육)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2007.10.



◆ 평생교육시설 이전 관련 문의

타 도에서 서울로 평생교육시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서식이 없어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다르면 이전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와 폐쇄, 설치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 이전 등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을 달리하여 위치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통보하고 새로운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3. 9.

◆ 평생교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지

저희 시민단체를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으려고 하는데, 교육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칙까지 찾아보았는데, 그런 규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규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원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평생교육시설의 외부시설에서 교육 가능한지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훈련을 저희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업장에서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육의 주체가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고,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계약에 의해 강사 혹은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평생교육시설의 장소를 벗어나서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기관간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VI.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 문의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인터넷원격교육(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과정은 단일과정이 보통 16시간과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에서 ‘불특정 학습자 대상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이라는 규정에서의 30시간보다 적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조항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30시간 이상’의 법적의미를 질의합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에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2008년에 발행한 “평생교육법 등 해설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란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시간의 교육과정이 연 12회 반복된다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3. 27.

####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 관련 질의

본교에서는 부설기관으로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자 관련 교육청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신청당시 신고인을 대학교총장 명의로 하고 대학주체가 학교법인이므로 법인 관련서류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고증에 설치자가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 명의로 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설치자가 대학교가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학교법인이 맞다고 합니다. 설치자가 법인이 맞는지, 대학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장은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법인이 설치주체가 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 등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 신고를 하시면 되고, 대학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는 법인 정관 대신 학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법인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되며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는 대학부설로서 대학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는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6. 4.

#### ◆ 원격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 매체를 통하여 모집해서 수강료를 받고 1년의 과정(월2회)으로 인간에 유익한 식물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방법(음료용)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청에 신고, 등록해야 하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내용이 학원의 정의에 해당된다면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업무를 위임받은 지역교육청과 의약품 조제행위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이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다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의료 교육을 받은 자가 약용식물 등 의약품 조제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23조 및 제62조 위반사항으로 「약사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4. 29.



◆ 평생교육법 제26조의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의 의미

원격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법인은 교습과정을 멀티미디어 (동영상, 음성) 강의가 아닌 텍스트(문자) 강의로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의 화상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텍스트에 의한 경우도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한 원격교육일 때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관할 및 메인 서버의 임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고 하는 법인의 주 사무소는 A교육청 관할이고 메인서버는 B 교육청 관할의 건물을 임대해 서버를 법인소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주 사무소와 메인서버가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도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메인서버를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요?

- 신고지 결정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신고지로 하는 것은 사무소가 여러개일 때 주된 사무소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주된 사무소에 메인서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최근 서버의 관리 및 네트워크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IDC(Internet data center)에 메인서버를 위탁관리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주 하는 곳이 주된 사무소가 되며 신고지의 기준이 됩니다. 즉 주된 사무소 또는 신고지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 제공하는 곳이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대리점형태의 운영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을 해당 관할 교육청에 신고는 한 곳만 하고, 자체적으로 대리점 형태를 많이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지?

- 원격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가상)공간을 주된 학습장으로 하는 바, 이는 대리점 형태와는 다르므로, 또 다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생 가입범위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을 서울시에 있는 해당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수강생의 가입 범위는?

-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의 가입범위는 해당 관할 교육청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설비 임대

원격교육 설비인 기본설비(강의서버 학사행정서버 백업용서버, 방화벽서 무정전장치, 멀티미디어 제작 장비 프린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지원설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관리 등 설치자가 관리하는 주된 시설을 주된 사무실에 설치 관리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 할 경우에도 원격 평생교육시설 시설 설비로 인정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가 가능한 지?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시설을 데이터센터 등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 콘텐츠 임대사업

운영방식은 서울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는 본사가 있고 저는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 지방에서 회원관리 및 1:1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주된 시설(메인서버 등)이 관할 지역에 있지 않고, 교육컨텐츠를 임대하는 방식이라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의 신고사항 중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서버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역교육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교육 콘텐츠의 임대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시도교육감에게 설치 신고를 하여야하며, 동 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실시를 하고자하는 경우임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사 배치

원격교육기관 신고 시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므로 저는 그 학원의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우 및 일반적인 업무 마찰로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허가가 난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유효한지요?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에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배치 계획서에 개인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다면 변경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 채용된 평생교육사가 퇴사했는데도 그대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원격교육의 범위

당사는 평생교육법 22조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 26조의 학습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서 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타 교육기관 사이트를 통해서도 당사의 사이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이버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역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업체이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교육기관이 동법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당사의 사이버교육을 타 교육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동법의 원격교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원격평생교육시설은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을 가르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교습과정을 자체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든 상관없이 자체 도메인을 갖고 운영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가 되어있는 두 업체가 있다면 콘텐츠의 쌍방제공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일 한 업체가 콘텐츠 제작만을 전문으로 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 콘텐츠를 제공한 업체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원격평생교육시설 홈페이지 주소 몇 개나 가능한가?

홈페이지 주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홈페이지를 몇 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

- 「평생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은 설치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설치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홈페이지는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공간이므로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도메인 이름 변경(추가)에 대하여 별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2009. 8.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지위승계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교육청 내 신고 된 교육청에서 관할이 다른 교육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의 범위에 있어서 시설, 설비, 교육과정, 인적인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평생교육원. 이라는 명칭만을 지위승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통보와 지위승계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시설”) 신고는 평생교육사가 “원격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의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시행규칙(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에 따르면 “원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교육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2. “원격시설”의 지위 승계는 신규 “원격시설” 신고와 달리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배치, 운영규칙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 승계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원격시설” 위치에 설비되어 있는 시설, 평생교육사, 운영규칙(교육과정 등)을 인수인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지위 승계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 3. “원격시설” 지위승계 신고와 위치변경 통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해당 업무별로 각각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분점(가맹점) 운영에 관한 문의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주)○○○이라는 곳은 전국적으로 가맹점(분원)을 모집하여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일반상가, 자택, 교회에서 공간을 만들어 학습콘텐츠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학습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관리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강사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점(가맹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한 예로 적용되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이 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분점 설치는 부적절하고, 각 설치 장소별로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7. 4.

## ◆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및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 설립, 설립자변경, 폐쇄에 대한 관계법령은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에 관한 관계법령 등이 없기에,

1. 평생교육시설(원격)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설립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면, 설립신고에 준하여 위치변경신고를 받고 위치변경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은 기존 시설 폐쇄 후 신규 설립신고를 받아 처리해야 하나요?
2. 그리고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현재에는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사 배치를 요구할 강제할만한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 변경 등을 원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가 있을 경우
  - 가. 기존 시설 폐쇄 후 신규설립신고를 받는다면 당연히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해야겠지만,
  - 나. 위치변경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경우,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치변경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설시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기존인지 신규 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며,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치변경신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5. 6.



◆ 부설 평생교육원과 동일기간에 원격평생교육원 설치할 수 있는지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동일기관에서 원격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지,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과 동일건물내에 존재하여 주출입문이 동일한 경우(다른 출입문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각각의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물리적으로 두 시설이 분리 되어야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언론기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설치 신고가 필요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는 주소지 소재 교육지원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서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51조와 시행규칙 제17조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학점은행은 이미 설치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기간 운영된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 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인정 기준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 게재된 원격기관 평가인정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비기준이나 기타 평가기준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집합기반) 평생교육원과의 출입문 분리에 관해서는 두개의 평생교육원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설립되어야하기 때문에 시설과 설비 등이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원격평생교육기관 설립 방법

영리법인입니다. 새로운 사업진출기회를 보다가 어느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기반 온라인교육과정을 개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 정식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격평생교육시설은 개인과 법인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수리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호 서식인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소지 소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고 신고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 등은 제14호 서식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면세 조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인터넷원격교육(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 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과정은 단일과정이 보통 16시간과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에서 ‘불특정 학습자 대상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 이라는 규정에서의 30시간보다 적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조항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30시간이상’ 의 법적 의미를 질의합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에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 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208년에 발행한 “평생교육법 등 해설자료” 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란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시간의 교육과정이 연 12회 반복된다면 “30시간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합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유아 대상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2012년 3월 7일부로 원격평생교육시설 내에서는 주니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사이트 내에 주니어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격평생교육 서비스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2)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사이트 내에서는 아예 별도 상품으로라도 주니어 교육과정을 등록하면 안 되는 것인지,
- 3) 그렇다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별도의 사이트에 별도의 브랜드로 별도로 사업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4) 아예 해당 법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외에 타 교육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등이하 학생을 대상으로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개설할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경과 규정: 제5조(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 및 신고를 하시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 4)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등록(학원)하시고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인에게 영어 ‘토익’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데, 총 50시간이고, 학습비 대신 콘텐츠 사용료로 총 9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습비 아님!)이 때, 평생교육법22조2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48조에 의한 ‘신고’ 대상인가요? 즉, 동법의 학습비와 사용료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무엇 인가요?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경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비는 학습자가 학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를 의미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콘텐츠 사용료는 학습비로 여겨집니다.

2014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VII.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문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청 시 서류중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로 되어 있는데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해 당 교육청에서는 또한 공증까지 요구하는데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령 어떤 것을 찾아봐도 공증에 대한 내용은 없을 뿐더러 주식 회사의 정관은 원시정관 하나만 공증대상이 며 수정, 추가, 변경 시에는 공증이나 등기 사항이 아니며 정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를 열어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공증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정관상 사업 목적에 평생교육시설을 꼭 넣어야 하는지요? 또한 등기부상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 원시 정관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정관사본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법제289조에 정관에 법인의 목적을 명기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므로,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업 수행과 정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의 권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9. 12. 8.

###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문의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와 관련 법인의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되는 “운영하려는 자” 는 대표이사 1인에 한정되고, 다른 이사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 입니다. ‘경영자’ 는 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을 말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위해 법인 전체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1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를 운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법인 임원 중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 부설뿐 아니라 학교 및 학교법인 부설, 언론 부설, 기업부설, 지식·인력개발 부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5. 2.

###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위치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백화점 등 사업장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위치가 반드시 사업장 내에 위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의 인접 지역도 신고가능한지요?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내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예술의전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할 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 개별법(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소독 및 방역기준 여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방역(소독)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수업에 사용되는 교구의 경우에도 소독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설치신고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신고절차 등에 대한 것으로, 평생교육법에서는 정기적인 방역(소독)의 의무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방역(소독)에 대한 타 법령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VIII.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문의

시민사회단체부설 신고 시 상사법인 등 모든 법인 포함 여부?

- 상사법인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민사회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령 해설 및 업무처리 절차 2000. 4. 14.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부 설치 가능 여부

시민사회단체의 본부가 있는 서울에서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였는데, 지방에 지부를 두고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별도 신고 여부?

- 평생교육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임.  
예컨대 각종단체(예:한국청소년연맹)의 경우 그 지부도 해당 지부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 신고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령 해설 및 업무처리 절차 2000. 4. 14.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법제처 및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2011. 7. 11.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부 설치 가능 여부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하여 전국연합회(본부)의 회원이 300명이상인 사회단체 대표자와 지역의 지부 약정서를 체결한 지부장(개인)이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 가능 여부?

- 지부가 당해 단체의 정관 또는 단체규약 등에 따라 정식 인준을 거쳐 설치되어야 하며, 회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평생교육 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300명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지부장이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회원이 30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2001.04.25.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고생 교육 가능 여부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할 경우 일반시민의 범위에 성인 및 초·중·고생이 포함되는지와 초·중·고생을 포함할 경우 학원에서 교습하는 예능, 한자, 수학 등을 교습할 수 있는지?

- 평생교육법 제6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유아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학원법을 따라야 하며, 예능이나 수학 등은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과목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아·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5. 5. 30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유아과정 교육 가능 여부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유아, 초·중·고 학생들일 경우 피아노, 바이올린, 한자, 미술 등을 회원에게 교육할 수 있는지?

-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비영리성을 추구하며 그 회원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2005. 5. 30

◆ 종교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민간단체의 구성 요건으로 동법 제2조 제3호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2004. 10. 25.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회원에 한해 초·중·고 과정 운영 가능 여부

시민사회단체(교육인적자원부등록)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두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회원이 유아, 초·중·고학생 및 성인일 경우 피아노, 바이올린, 한자, 미술 등을 모든 회원에 한해서 수강이 가능한지요?
2.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 또는 학원 등과 같이 건축법상의 용도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경우(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항의 질의내용과 같이 초·중·고 학생이 회원이라 하여 수강이 가능할 경우 동일층에 유해시설(게임방)이 있는 경우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비영리성을 추구하며 그 회원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갖추고 있을 때 공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에 단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시·도 지부는 상시회원이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중·고생이 회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단체의 교육시설에서는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과정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도 교육용 시설이므로 교육감이 유해환경시설을 배제하여 설치·운영토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질의회신사례집 2006. 8

◆ 회원수 300명이상의 의미는?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시 회원수 300명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의미는?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수가 300명이상인 시민사회단체라면 가능한 데. 여기서 회원수가 300명이상인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 첫째로, 회원수 300명이상은 일정기간(최소 1년이상) 민간단체로서의 회칙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회비 납부실적이 있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고 명확한 회원수 파악이 가능해야함.
  - 둘째로, 시민사회단체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움.



- 학자들간에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부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자함. 즉 연대·공감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관심 등에 매개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가운데 공적영역(public sphere)에 속한 단체를 말하며,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치적 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변단체나 기성종교, 사회복지단체, 혈연. 지연 및 학연으로 모인 단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노동조합, 각종 직능단체 등은 배제된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지난 4.14 시·도교육청 실무자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01.12. 공포) 제2조를 참고하도록 한 바 있음.
- 평생교육법령에 의하면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가능함.

평생교육 업무추진 관련 해설 2000. 9. 21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조에 ‘회원이 3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정확한 의미와 요건, 시민사회단체 예시를 알려주세요.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를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하는 이유는 시민사회단체의 평생 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조의 회원수가 3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민사회단체 회칙,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예로 서울YMCA, 대한상공회의소 청주,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통합검색에 ‘평생교육 해설자료’로 검색하시면 정보마당란에 PDF파일로 탑재되어 있는 해설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평생교육시설 설치

모법인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등기부상 지회 관할 교육청에 추가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자격을 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별도의 자격을 득하지 못하면 지회 이름이 아니라 모법인의 이름으로 신청하면 가능한지요? 모법인의 이름으로 하면 전국에 복수의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를 한정하는 이유는 사회적 공신력 확보 및 무분별한 교습과정 운영 등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여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은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며, 1단체 1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부(지점)가 본원과 별도로 해당지역 주무관청(시청 등)에 등록되었거나 지부(지점)의 회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등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별도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으로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시, 도마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3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IX.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에 관한 문의

법인의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점의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입증해야겠으나, 지점 등기부등본상에는 자본금에 관한 항목이 없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인력이란 순수하게 해당 교습과목의 전문경력을 가진 강사만을 뜻하는 것인지, 강사 및 교육의 운영인력도 포함하여 5명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함에 있어 자본금 확인 방법과 전문인력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자본금은 해당 법인의 직전 기말 대차대조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및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은 제외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5. 28

###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지위 승계

저는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된 현재는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인수하여 위치와 교습과정을 변경하고 싶은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법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여 지침에 명시된 지위 승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정확한 해석을 문의합니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면 지위승계가 가능합니다. 위 신고절차를 이행하신 후, 위치·명칭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청에 이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은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설치·운영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용성을 존중, 반영하여야 하며, 개별 평생교육시설의 자체 “운영규칙”에 넣어 교육청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설치자의 자격조건에서 “1년 경영실적이 있는 자”란 현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시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라함은 법인으로서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운영한 실적을 말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4. 16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 문의

교육내용은 ‘선박제조검사’ 관련 내용인데, 특정 자격증을 따기 위한 내용은 아니고, 선박제조검사를 할 때의 노하우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사가 외국의 법인이고 국내에 지사 사업장이 있는데, 외국 법인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등록해야 하는지요?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외국인 강사도 전문인력으로 가능한지요?(외국어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 교육과정 등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 평생교육법 해설서(2000.4)를 참고하면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 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요건에서 국내외 법인의 구별 없이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을 가진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계 법인으로서 법인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전문인력 또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노무자나 계약자 제외)이므로 강사가 계약직이 아니고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동 시설에서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사자라면 전문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6. 9. 8.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비 기준 문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으려고 합니다. 학원법에는 시설·설비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비의 기준을 알려 주세요.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설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시설 운영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여기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이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2.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3.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관련 신청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 설치되므로, 구체적인 설립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평생 교육담당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9. 2

##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료분야 관련 과정 설치 여부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신청 중 의료분야와 관련하여 개인의 몸 상태를 진맥하여 진맥된 결과에 따라 생체자기를 몸에 부착하여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생체자기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 평생교육법 제6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의료보건에 관한 정부방침은 개별법령으로 의료 인력양성 (유사의료, 의료기사포함)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인력의 양성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며 이외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격기본법에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관련교육을 제한하고 있기에 대학의 정규전공 과정만 개설이 가능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 업무편람 2009. 7. 13

## ◆ 직업전문학교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한지

「평생교육법」 4장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가 제2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의하여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면 이를 시설 지정받을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법」 상의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단, 재단법인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평생교육시설과 설치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대상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할교육청에서 협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7. 6

## ◆ 타 지역의 법인 명의로 다른 지역에 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1개의 법인이 여러 지역에 동일한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합숙을 하는 시설로 하려는데 가능한지? 전문인력 5명은 따로 따로 해야 하는지?

- 한 법인이 2개 이상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는 설치요건(평생교육시설 당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2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한정된 시설에서 일 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육토록 되어 있는바, 합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부 질의응답 2006. 9. 8



◆ 동일지역 내 동일한 목적으로 2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1.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동일 시 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2. 그리고 합숙을 하는 시설로 하려는데 평생교육시설로 가능한지요?
3.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전문인력으로 새로운 시설에 활용하여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새로 5명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정보 제공 사업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이상이고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 1항에 대해, 동일한 시 지역내에 동일한 목적으로 한 법인이 2개의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는 위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법인의 자본금이 3억원이라면 2개의 시설 설치는 불가합니다.
  - 2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한정된 시설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육토록 되어 있는 바, 합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귀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당해 교육청이 신중히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3항에 대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확보는 한 개의 평생교육시설 요건에만 해당되므로 별도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할 경우, 따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이라 함은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이어야 함(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교육부 질의회신사례집 2006. 8.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문의

당사는 ○○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청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지점 법인등기부등본을 요청했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점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 3억원이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기본 자격요건이 미달이라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등기법상에서 지점등기부등본에 자본금 항목이 나와 있지 않다고 거듭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평생교육시설이 ○○지점에 설치되므로 ○○지점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원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이러한 답변이라면 지점에서는 절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관련법 규정을 봐도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너무 지나친 원론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여,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질의하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은 자본금(자산) 3억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한 법인 1곳당 1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이 가능하며, 분원 형태로 추가 설립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3. 31

## ◆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조건

시설확충과 더불어 평생교육시설을 기존의 법인에서 별도의 신설법인(영리 또는 비영리)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신설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지위승계 시에도 최초설치 시와 동일하게 지식·인력개발분야 주된 목적사업으로의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설치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요?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는 새로운 설치자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 및 자격을 갖춘 자만이 지위승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지위승계는 시·도교육청에 이양된 사항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 평생교육원 부설 체험공간 등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지식인력개발형태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부설로 다문화체험 등 테마공간을 설치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원 형태에서 이러한 설치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현재 지식인력 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평생교육원 이외에 부설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청으로부터 신고 수리된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 시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014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X.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역 문의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근거 언론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주소 관할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까?
2. 평생교육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타 시도에 분원 설치가 가능합니까?

- 우리 부가 발행한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253쪽에서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게 신고하며,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처리는 교육감의 업무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0. 7. 29.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역별 개설 가능 여부

A도시에서 평생교육신문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취지가 너무 소중하여서, B도시에 평생교육신문지점을 개설하고, B지역에서도 A지역과 같은 상호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기관당 1시설을 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 목적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별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별도의 언론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6. 8.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평생교육법 제37조의 해설과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을 구분지어 주십시오.

-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로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설치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역 내에서 관할청에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등은 시도교육감 사무이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XI.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관한 질의

우리 한국에서 현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이 얼마나 되는지요. 있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 요청하신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08년 현황)자료를 붙임 문서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2.

###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편성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과정)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관계법을 제시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전문계 교육과정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문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도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가 학력인정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인문계, 전문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여부는 교육감에게 이양이 된 사항이므로 해당 관할청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7. 3.

### ◆ 미술영재교육 목적의 중·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가능 여부

미술영재 평생교육시설 학교 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미술영재교육으로의 학력인정시설 설립이 가능한지요? 중·고등학생 대상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가 기준인가요?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및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거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참고하시어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영재교육으로의 학력인정시설의 설립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설 및 기준에 충족여부를 확인하신 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2등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시행규칙 별표2) 】**

- 1. 학습시설 :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 2. 자료실 :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 3. 관리실 : 1실 이상

끝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업무로 시도조례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 설립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5. 29.

◆ 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전학 가능한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학이 가능한지요?

- 현행법상으로는 전출입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제89조에 근거하는 데, 초중등교육법에서 언급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다양한 학교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 학교입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전학 규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시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퇴 후 편입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일반 특성화고의 차이와 교사 채용 및 지위

학력인정 고등학교는 일반 특성화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얼핏, 인가형 대안학교와 같은 것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학교들의 교사는 일반 사립고와 같은 채용방식으로 뽑히며, 일반사립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며, 이들 시설 중 특성화고 형태는 교육과정 운영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고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치면,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상급교 진학 등에 있어 타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받습니다.

- 한편, 특성화고에 주어지는 혜택 등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을 하는 기관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해당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 과정 및 대우는 해당 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자격 제한을 두는지 여부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 미인정 시설의 경우 입학 자격의 제한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학력 미인정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중학교 과정의 경우 연령 제한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는 것과 의무교육 대상 연령인 경우 입학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요?
- 또 다른 하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할 때도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학아동 연령의학생인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입학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제외한 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제1항·제3항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4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소득세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해당여부

1년 간 인천 ○○평생 교육원에 다녔습니다. 교육비 영수증이 필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가능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법(기획재정부 소관)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의 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또한 이와 관련한 법령 해석 등은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제5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2. 회답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신고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및 각종 세제 관련 법령에서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신고를 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해당 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1. 11. 04

## 3. 이유

「평생교육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학력보완교육, --- 등”은 그 규정의 형식상 한정적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체육교육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수영 등 체육교육을 평생교육 과정의 하나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다른 법률”에 체육시설법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체육시설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생교육법」과 체육시설법은 입법목적에 달리고 있을 뿐 그 적용에 있어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을 다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다고 해서 체육시설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의 진흥 등 「평생교육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같은 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67 해석례 참조), 이는 평생교육 “사업”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순수하게 영리목적을 가진 수익 “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사안에서와 같이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 “시설”을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해당 시민사회단체가 그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면서 평생교육 “사업”의 관점에서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체육시설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신고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및 각종 세제 관련 법령에서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신고를 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해당 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 질의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등록된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支部)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보아 별도의 등록 없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 2. 회답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1. 09. 01

##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 장관은 상시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등으로만 등록을 하게 될 뿐이고,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나 지부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소나 지부 등을 비영리민간단체와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 같은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부를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내부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체로 볼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같은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및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및 공익성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등에 따른 학습자의 안전 및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한임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 2. 회답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2007. 09. 03

### 3. 이유

-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라 함은 정보의 모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매체로서, 원격지의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는 원격지의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므로 원격교육매체인 정보통신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단순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 2.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09. 07. 03

### 3. 이유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학기, 입학자격, 교원, 시설·설비 등)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입학자격, 교원자격·정원, 수료·졸업, 시설·설비, 교과서·교재, 재무·회계 규칙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고,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제2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은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 이러한 「평생교육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등을 명시하여 교육감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위와 같은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습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권한을 주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6조에서는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등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이 요구되어 실질적으로 각종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이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1. 질의요지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는 “중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위 부칙 제3조에 따라 (1) 학급증설 또는 (2) 학급증설 없는 학교시설의 확충이 가능한지?

## 2. 회답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중전의 규정에 따라 학급증설을 할 수는 없으나, 학교시설의 확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제처 2009. 07. 03

## 3. 이유

개정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한다)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제28조제5항),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31조제1항), 교육감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제5항).



한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한다)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20조제1항), 교육감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제2항,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내용임).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규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데, “종전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과조치의 문언표현 및 도입배경이나 개정법률의 입법취지 및 개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개정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개인의 설치·운영권을 배제하고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만 그 설치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이나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구 「평생교육법」과 비교하여 다른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데, 이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신법에 따라서는 더 이상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개인 설치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종전에 지정받은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는 개인이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을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지정받은 기준대로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만일 “종전의 규정”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령상의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고, 이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그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학급증설이나 시설확충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조건을 강화한 것은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정법령에 따라 향후 법인이 주된 주체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상 부칙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학습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의 의미는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을 당시 그 지정기준의 범위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본질적인 지정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학급증설이 “종전의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학급증설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교원증가와 교사(校舍)의 증설을 수반하고 학생수의 증원도 필요시 수반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안은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변경지정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이”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급증설은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정기준으로서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설확충의 경우에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육운영이나 학생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학습환경 개선이나 학습효율화 증진을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이는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을 위한 외부적인 환경여건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확충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영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도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학력인정지정 신청 시 제출사항으로 학급 수, 정원, 교원 정수 등은 확정적일 것을 요구한 반면,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정신청 시 시설현황 외에 시설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학력인정시설 지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정신청행위 없이도 해당 시설을 확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에도 개인 운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개인 운영자가 개정 법률의 시행 이후에 설립주체 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면 학력인정시설의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학력인정시설의 저해로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인격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에도 위배되므로, 시설확충은 학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법인으로서의 전환없이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전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급증설을 할 수 없으나, 시설확충은 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요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과를 감축·폐지 또는 신설·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 2. 회답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폐지하거나 신설·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09. 10. 05

## 3. 이유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과정, 정원 및 학급 수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치,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제5항), 이에 따라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2항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평생교육법」은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그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감축하거나 신설·증설하는 학과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가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평생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과 「평생교육법」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 변경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166). 더 나아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이 그 이전의 지정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같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기준의 운영이 “종전의 규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는 종전의 해석례와 앞에서 살펴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이상, 학력인정시설이 사회의 교육수요나 학력인정시설 이용자의 선호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타당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을 당시 그 지정기준의 범위에서만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사회의 교육수요나 해당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선호가 바뀌어 더 이상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수요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교육수요나 선호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폐지 또는 신설·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폐지하거나 신설·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요지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한 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만 같은 자치구(自治區) 또는 행정구(行政區)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2. 회답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10. 10. 01

## 3. 이유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이라 함)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 이라 함)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이라 함)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치, 시설·설비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위치 등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치 등이 기재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 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치, 시설·설비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에 위치 등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제1항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치 등이 기재된 지정신청서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규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 경과 규정을 둔 취지는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의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이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서 학력인정시설 지정 당시 위치를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여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당초 교육감의 학력인정시설 지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학력인정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이나,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는 당초 교육감의 학력인정시설 지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지정 당시와 다르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학력인정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이나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지정기준 충족에 있어 중요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해당 학력인정시설 지정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 2. 회답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11. 06. 02

## 3. 이유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시설인 중학교를 말하고, 이러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을 통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가능할 뿐, 이를 대신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중학교 취학연령의 보호자 등은 그의 자녀 등을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여 이들 기관에 선택적으로 취학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의무교육 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자격 및 운동장 등의 시설·설비 등이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운영기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비하여 엄격한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에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보조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취학연령 이후의 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설립·운영·폐쇄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입학자격으로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 1. 질의요지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 2. 회답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8. 11. 26

## 3. 이유

-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개인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정 평생교육법에서 제28조제5항이 신설되었고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2008. 2. 15.) 후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만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는 타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한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통상 종전 법률에 없던 자격요건을 개정 법률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바, 이러한 경과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는 종전 법률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자격기준을 배제하여 개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개정 법률 시행 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즉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설치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까지 개정된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개정 평생교육법 및 구 평생교육법 모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둔 바는 없으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시설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서는 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필요하기도 하므로 법규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설치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 그런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는 종전 설치자에 갈음하는 새로운 설치자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 법령 하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지위 승계를 받으려면 개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설치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할 것이고, 그 지위를 승계하는 상대방은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개정 평생교육법에 제28조제5항을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취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 및 책무성과 함께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법령상 사인(私人)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설립자 유고시 학교 승계 문제, 자의적 폐쇄로 인한 학습자 피해 발생, 학생 공납금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금의 개인 상속 문제점의 해결, 투명한 회계 관리로 부정비리 가능성의 예방, 기관의 임의적인 학교 폐쇄 폐단의 개선 등 시설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인바, 만약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개인 간 설치자 지위승계를 허용한다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위 규정의 취지 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인 아닌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요지

- 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2.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제처 2014. 11. 10

## 3. 이유

###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 제3호에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가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에 따른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1조제7항),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사전에 폐쇄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 제3호에서 주(註)를 두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가 위 서식에 따른 폐쇄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시설 폐쇄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폐쇄통보는 단지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의 달성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행정청으로서의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외에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가” 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의 달성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행정청에 대한 폐쇄통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폐쇄통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상속한 망인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망인의 배우자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려면 먼저 지위승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 폐쇄통보와 함께 지위승계 신고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교사(校舍)와 교지(이하 “교사등”이라 함)는 학력인정시설 설치·운영자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19. 03. 13.

##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등은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 이어야 한다(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고 규정하면서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한하여 직접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써 해당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주석: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례 참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관리청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인바,[주석: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참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소유권 없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일정 기간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등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의 변경·소멸로 인하여 학력인정시설이 폐쇄되거나 타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학력인정시설 설치자가 시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등 교육환경이 불안정하게 되거나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주석: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 337 결정례 참조]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제13조 본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한정되어(제21조제1항 본문)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며(제21조제2항), 귀책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항·제2항).

따라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교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없어 앞에서 살펴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1. 질의요지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 시설” 이라 함)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19. 02. 01

### 3. 이유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방법·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주석: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1.1.가. 참조]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주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교육과정” 과 “학급” 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과정” 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학급수” 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 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급” 마다 교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에서도 “교육과정” 과 “학급” 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바,[주석: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1. 질의요지

-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 나. ○○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 2. 회답

-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나. ○○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2018. 03. 28.

## 3. 이유

###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란 같은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나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헌법」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직접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사인(私人)이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동일시하여 사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와 동등하게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고,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그 사무의 수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제5호),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제6호),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제6호의2)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의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방송공사법」에 따른 ○○방송공사(이하 “○○방송공사”라 함)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공사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방송공사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텔레비전·라디오·위성 교육방송의 실시와 같은 원격교육을 ○○방송공사의 업무로 하고 있어(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방송공사법」에서는 ○○방송공사가 학습비를 받고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공사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방송공사가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하지 않는다면, ○○방송공사의 원격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행정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방송공사는 「○○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불과하여 그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 나.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016. 08. 26

##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5409호로 일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으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그 취지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을 강화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종전부터 전문인력요건을 규정해왔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과 형평성을 갖추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일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기관 등의 종사자가 본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두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관리·운영 등 행정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인력이 5명 이상 상시적

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아 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는 그가 담당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교수요원으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폐지·변경에 따라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인력이므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교육을 전담하는 업무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전담강사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 같은 영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평생교육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교육전담강사로 충당하여 설치신고를 한 후 평생교육사 1명만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서는 업무의 종류와 전담여부를 전문인력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와 전담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니면 통상근로자인지 등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전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을 제외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전문인력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전문인력이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일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인력요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에는 단시간근로자가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



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관리·운영 등 행정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력의 교대 없이 반드시 고정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차이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은 인원수를 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며, 근로형태에 따라 전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는지?

## 2. 회답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16. 08. 19

###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면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만 16세를 넘은 자(제1호),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제2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제1호), 교육과정(제2호), 교원자격(제5호)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운영기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학자격을 초·중·고등학교과정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령에서 그 지정기준, 절차, 입학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미인정시설”이라 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학자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그 교육과정 운영이나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의 사항도 정규학교에 준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데 비하여, 학력미인정시설은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학력인정시설과 학력미인정시설의 규정 체계를 달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학력미인정시설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에 적용되는 입학자격 등의 규정이 학력미인정시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학력미인정시설은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평생교육법」 제6조)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하여(「평생교육법」 제4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의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법령에서 학력미인정시설의 입학자격을 제한하거나 학력미인정시설에 대하여 학력인정시설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학력미인정시설의 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 등의 사유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상의 각급 학교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운영되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습하기 곤란한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만 학력미인정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정해야 하고, 개인사정으로 학력 취득의 기회를 상실한 자에게는 정규학교나 학력인정시설에서 교육받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학력 취득의 기회를 상실한 자를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평생교육법」상 학력미인정시설의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학력미인정시설의 교육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평생교육법」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실시자로 하여금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하도록(「평생교육법」 제6조)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1. 질의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 2. 회답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16. 04. 27

##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법인

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법인이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일 것과 같이 그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범위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도 같이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비록 사회영역 중 경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보다는 근로자의 기본 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평생교육법」 제4조제3항에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평생교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총연합체인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의 도모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인 동시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 그 목적 및 행위 내용이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일반 시민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 2 회답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015. 12. 07

##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개수에 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문언상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가 1개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제한사항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2014. 6. 30. 대통령령 제 254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만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101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2. 회답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015. 03. 09

##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령에 따라 주어지는데, 행정권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1. 10. 회신 14-0669 회신례 참조), 지방교육자치법령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감의 권한도 해당 관할 구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령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1항),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위치,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위치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증을 내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항). 이러한 평생교육법령의 규정들을 볼 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자신이 관할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만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평생교육법」 제4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허위신고 여부, 자격 여부, 적정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는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초에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은 그 감독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감도 해당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를 수리하였던 교육감이 관할하는 시·도 내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 2. 회답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2. 02. 23

## 3. 이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나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평생교육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등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금치산자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였는바, 위 조항의 취지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학원을 사인(私人)이 통상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제1호)과 평생직업교육학원(제2호)으로 구분하여, 이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그 교습내용이 학교교육과정이면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건간에 모두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이 「평생교육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나목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한 취지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자체에서 제외하여 「평생교육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서 학원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보더라도,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학원법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학원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그 입법취지는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면 학원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외국인강사의 경우 제13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검증 필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교습비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학원법에 따른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정책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위의 학원법 각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제6장

##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101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0상,146]**

**【판시사항】**

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 그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다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정한 자본금 또는 자산,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위 법령에서 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시설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형식 및 표현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란, 관련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평생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고법 2009. 7. 14. 선고 2009누1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위 법령에서 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시설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형식 및 표현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란, 관련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 ○○ ○○구 ○○동 ○○○-○ ○○빌딩 ○층 ○호에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평생교육원’을 본점으로 설치·운영하면서, 2008. 2. 19. ○○시 ○○동 ○○ ○○상가 ○○호에 지점인 ‘○○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위 지점 설치에 관하여는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위 지점 설치신고는 적법한 설치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08. 2. 29. 같은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데도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인 이상,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추가하여 수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자본금 또는 자산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 원고의 위 지점 설치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 원심 판단에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3.6.1.(179),1199]

#### 【판시사항】

-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 [2]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명의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3]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변경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그 신청을 수리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명문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지위승계를 금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이 설치자의 지위승계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지위의 승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은 제8조, 제20조 제4항, 제29조 등에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규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설치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신청인에게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명의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등에 비추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 신청은 종전 설치자에 갈음하는 새로운 설치자에 대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의 신청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평생교육법령하에서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변경 신청을 수리하기 위하여는 설치자가 그 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자이어야 한다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평생교육법 제8조, 제20조 제4항, 제2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3]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현행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참조), 제21조(현행 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참조), 평생교육법 제8조, 제2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 【전 문】

【원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교육감

【원심판결】 ○○고법 2001. 11. 9. 선고 2001누15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지정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학력인정시설’ 이라 한다)로 되었다)인 ○○고등학교(등록 당시의 명칭은 ○○학교였으나 1999. 10.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자인 ○○○가 2000. 6.경 그 설치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인계하고,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설치자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00. 7. 19. 평생교육법(이하 ‘개정법’ 이라 한다) 제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7조가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은 학력인정시설 지정기준의 하나로 그 교사 및 교지가 설치·운영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로의 설치자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위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위 신청과 같은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소송은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설치자 변경 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가게 할 뿐이므로 그 신청이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2) 구 사회교육법령과는 달리 개정법 제20조 제2항, 제3항, 개정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운영규정 제7조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고,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지정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개정 법령이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그 설치자변경에 관련된 구 조항들을 모두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개정 법령의 취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은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변경은 원칙상 허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교사 및 교지 등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로의 설치자지위 인계에 의한 설치자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에게 위 설치자 변경 신청의 수리를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신청서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은 법령상 수리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

가.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2) 개정법은 평생교육시설을 그 형태 및 설치·운영자에 따라 세분하여 규정하고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자에게 그 설치에 있어서 등록, 인가,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개정법시행령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은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자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도 같다).

그러나 개정법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명문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지위승계를 금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법이 설치자의 지위승계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지위의 승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개정법이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제8조)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의 설치자의 결격사유(제20조 제4항)를 규정하고 당해 시설의 등록이나 설치인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로서 설치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설치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제29조)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규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설치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인에게 등록·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명의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반려처분의 행정처분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법령상의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민의 어떤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법령하에서는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시설기준의 하나로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고,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설치자변경승인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어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이 법령상 수리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한편, 구 사회교육법령과는 달리 개정법 제20조 제2항, 제3항, 개정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운영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운영규정 제7조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고,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은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변경 신청은 종전 설치자에 갈음하는 새로운 설치자에 대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의 신청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 법령하에서 학력인정시설



의 설치자 변경 신청을 수리하기 위하여는 설치자가 그 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자이어야 한다는 개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위 운영규정 부칙 제3조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 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교지·교사의 소유관계에 관하여는 그 정함이 없으며, 이 사건 교육시설은 위 운영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록·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부칙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 신청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설치자의 지위를 인계받은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개정 법령하에서는 원고에로의 설치자 변경은 결국 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13두3887, 2016. 6. 10.]

### 【판시사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

### 【판결요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운영 규정 제7조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전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고법 2013. 1. 21. 선고 (○○)2011누1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 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지정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학력인정시설’ 이라 한다)로 되었다]인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의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원고에게 피고의 ○○고에 대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처분 및 ○○고의 학생모집 중지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가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관리 운영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학생 생활지도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및 ‘학교회계 운영의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2)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① ○○고가 피고로부터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시점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교지가 설치자 소유이어야 한다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 규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전이었던 점, 이 사건 운영 규정은 부칙(1997. 9. 23.,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중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 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운영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 귀속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의 교사 및 교지가 설치자의 소유임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1 처분사유 중 ‘교사와 교지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고, ② 나아가 제1 처분사유 중 나머지 처분사유, 즉 ‘원고가 적법한 설치자 지위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설치자 결격사유가 있다’ 라는 사유 및 ‘○○고가 교육활동 장소로 부적합하다’ 라는 사유 또한 적법한 처분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한편, (3) 제2, 3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라고 본 다음, (4) 결국 제2, 3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운영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등 참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운영 규정 제7조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의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인계받은 원고는 ○○고의 교사 및 교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에로의 설치자 변경은 결국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5. 2. 10.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12. 7.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제1 처분사유 중 나머지 사유를 제외한 ‘원고가 학력인정시설인 ○○고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라는 사유와 제2, 3 처분사유만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평생교육법」 제42조 제3호의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임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운영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7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 I 평생교육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b>제1장 총칙</b>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 5. 29.&gt;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4. 23.&gt;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5. 29., 2019. 4. 23.&gt;</p>		
<p>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p>	<p>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p>	<p>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b></p>	<p><b>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b></p>	
<p>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6. 5. 29.&gt;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29.&gt;</p>	<p>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평생교육 시설·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p>	
	<p>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p>	<p>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lt;개정 2018. 2. 20.&gt;</p> <p>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복수 차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p> <p>2.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8. 2. 20.&gt;</p> <p>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차관의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p> <p>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2년</p> <p>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lt;개정 2008. 3. 4., 2008. 9. 29., 2013. 3. 23.&gt;</p> <p>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lt;개정 2008. 3. 4., 2008. 9. 29., 2010. 8.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p>[본조신설 2015. 12. 31.]</p>	
	<p>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p> <p>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p> <p>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6. 5. 29.&gt;</p> <p>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6. 5. 29.&gt;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b>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b></p>	<p><b>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b></p>	
<p>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lt;개정 2013. 12. 30.&gt;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13. 5. 22., 2016. 2. 3.&gt;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관리·운영 9의2.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p>	<p>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12.30]</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2. 20.]</p> <p>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① 진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해의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li> <li>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li> <li>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li> </ol> <p>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제9조(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19. 4. 23.&gt;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p>	<p>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p> <p>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p> <p>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23.]</p>	<p>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li> <li>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li> <li>3.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li> <li>4.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10. 22.]</p>	
<p>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19. 4.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li> <li>2. 평생교육 상담</li> <li>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li> </ol> <p>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li> <li>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p> <p>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p> <p>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유형·목적</li> <li>3. 위치</li> <li>4. 교육과정 편성내역</li> <li>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li> <li>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li> <li>7. 개설예정일</li> </ol> <p>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li> <li>2. 교육과정 및 정원</li> <li>3. 입소·퇴소</li> <li>4. 교육기간 및 휴강</li> <li>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li> <li>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ol> <p>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5. 29.]</p>	<p>제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7. 12. 29.]</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li> <li>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li> <li>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li> <li>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li> <li>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li> <li>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li> </ol> <p>[본조신설 2017. 5. 29.]</p>	
<p>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lt;신설 2014. 1. 28., 2016. 5.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li> <li>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li> <li>2. 평생교육 상담</li> <li>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14.1.28&gt;</p>		
<p>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중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lt;2016. 5. 29.&gt;]</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lt;2016. 5. 29.&gt;]</p>		
<p>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7. 12.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li> <li>2. 학력</li> <li>3. 자격증</li> <li>4. 강의·연구실적 및 저서</li> <li>5. 그 밖에 특기할 사항</li> </ol>
<p>제23조(학습계좌)</p> <p>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5.8. 2013.3.23&gt;</p>	<p>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09. 8. 11.,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lt;개정 2010. 12. 20.&gt;</p>	<p>제4조(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7. 12.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lt;신설 2009.5.8, 2013.3.23&gt;</p> <p>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신설 2009.5.8,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li> <li>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li> <li>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li> </ol>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신설 2009.5.8, 2013.3.23&gt;</p> <p>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신설 2013.12.30&gt;</p>	<p>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신설 2012. 1. 6.,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학력</li> <li>3. 자격증</li> <li>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li> <li>5. 그 밖에 특기할 사항</li> </ol>
	<p>제14조의2(평가인정) ①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4조의2(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에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12. 29.&gt;</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p>

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p>1. 교육시설 및 설비</p> <p>2. 교수과정</p> <p>3. 교원·강사</p> <p>4.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p> <p>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⑤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 [전문개정 2010. 12. 20.]</p>	<p>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 [본조신설 2011. 1. 27.]</p> <p>제4조의3(학습계좌 자문위원회)</p> <p>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기준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계좌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 [본조신설 2011. 1. 27.]</p> <p>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과정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과정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 [본조신설 2011. 1. 27.]</p>
	<p>제14조의3(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에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을 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12. 20.,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12. 20., 2013. 3. 23.&gt;</p> <p>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이 법 제2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 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lt;개정 2010. 12. 20., 2013. 3. 23.&gt;</p> <p>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 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 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 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⑤ 평생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 하는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시 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 으로 본다. &lt;신설 2010. 12. 20.&gt; [본조신설 2009. 8. 11.]</p> <p>제14조의4(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 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 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lt;개정 2010. 12. 20., 2013. 3. 23.&gt; [본조신설 2009. 8. 11.]</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b>제4장 평생교육사</b></p>	<p><b>제4장 평생교육사</b></p>	
<p>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lt;개정 2008.2.29, 2009.5.8,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li> </ol>	<p>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9. 8.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09. 8. 11.&gt;</li> <li>2. 삭제 &lt;2009. 8. 11.&gt;</li> <li>3. 삭제 &lt;2009. 8. 11.&gt;</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li> <li>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li> <li>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p>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lt;개정 2017. 5. 29.&gt;</li> </ol>	<p>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8. 3. 4., 2013. 3. 23.&gt;</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lt;신설 2009.5.8, 2013.3.23&gt;</p>	<p>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p>	
	<p>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19조(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p>	<p>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1. 1. 27., 2017. 12. 29.&gt;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 2013. 11. 22.&gt;</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1. 최종학력 증명서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lt;2010. 8. 19.&gt; ④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3. 4., 2013. 3. 23., 2013. 11. 22., 2014. 7. 28., 2016. 8. 10.&gt;</p> <p>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10. 8. 19., 2013. 3. 23.&gt; 1.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li> </ol>	<p>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19., 2013. 3. 23., 2013. 11. 22.&gt;</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p> <p>5.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p> <p>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p> <p>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p> <p>8.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p> <p>②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6. 3. 25., 2017. 5. 29.&gt;</p> <p>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p> <p>1의2.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p> <p>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p> <p>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시설의 지정·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p> <p>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8.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9.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사무</p> <p>11.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p> <p>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p> <p>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p>&lt;신설 2018. 2. 20.&gt; [본조신설 2014. 6. 30.]</p>	
<p>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 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 한 경우</li> <li>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 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li> <li>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ol>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 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 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 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 ② 삭제 &lt;2013.5.22&gt;</p>	<p>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 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 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 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 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lt;개정 2016. 2.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li> <li>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 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li> <li>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 수기관</li> <li>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 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li> </ol> <p>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 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p>	<p>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 정의 신청) ① 영 제21조제2 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08. 3. 4., 2008. 9. 29.,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li> <li>2. 시설·설비 현황표</li> <li>3. 교육과정 편성표</li> <li>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목적</li> <li>3. 위치</li> <li>4. 대표자의 성명·주소</li> <li>5. 개설예정일</li> </ol> <p>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p> <p>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p> <p>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p> <p>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p> <p>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p> <p>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5. 29.&gt;</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b>제5장 평생교육기관</b></p>	<p><b>제5장 평생교육기관</b></p>	
<p>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lt;개정 2016. 5.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li> <li>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p>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2. 3.&gt;</p>	<p>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6. 8. 2.]</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p> <p>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p> <p>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p>		
<p>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 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 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 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 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 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 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 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 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68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 교육감 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 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 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부설 평 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 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 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4.6.30&gt;</p> <p>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 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4.6.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 육 프로그램</li> <li>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li> <li>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 육 프로그램</li> <li>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 해교육 프로그램</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정한다. &lt;개정 2014.6.30&gt;</p>	<p>제9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 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 식에 따른다.</p>
<p>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 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① 법 제31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 설·설비를 말한다.</p>	<p>제1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 설·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5. 3. 27.&gt;</p> <p>③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gt;</p>	<p>1. 학습 시설·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3.27&gt;</p> <p>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5.3.27&gt;</p> <p>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p>	<p>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목적</li> <li>3. 위치</li> <li>4. 교육과정 편성</li> <li>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li> <li>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li> <li>7. 개설예정일</li> </ol> <p>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 목적 및 위치</li> <li>2. 교육과정 및 정원</li> <li>3. 입학·퇴학 및 수수료와 상벌</li> <li>4. 과정수료의 인정</li> <li>5. 교육기간 및 휴강</li> </ol>	<p>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규칙</li> <li>2. 교육과정 편성표</li> <li>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li> <li>4. 시설·설비 현황표</li> <li>5. 시설배치도</li> <li>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li> <li>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li> </ol>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3.27&gt;</p>	<p>6. 학습비</p> <p>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19.&gt;</p> <p>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위치</li> <li>3. 교육과정 편성</li> <li>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li> <li>5. 시설·설비의 설치내역</li> <li>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li> </ol> <p>[본조신설 2014. 6. 30.]</p>	<p>제11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2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0호의2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치도</li> <li>나. 시설배치도</li> <li>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li> </ol> </li> <li>3.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li> <li>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5. 시설·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li> </ol>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p> <p>6.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포함한다)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p> <p>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 10호의3서식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p> <p>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다. &lt;개정 2015. 11. 26., 2016. 3.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li> <li>2. 교육과정</li> <li>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li> <li>4. 입학자격</li> <li>5. 교원자격·정원</li> <li>6. 수료·졸업</li> <li>7. 시설·설비</li> <li>8. 교과서·교재</li> <li>9. 재무·회계 규칙</li> </ol> <p>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 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 16세를 넘은 자</li> <li>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li> <li>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li> </ol>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p> <p>④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p> <p>⑤ 제1항제7호의 시설·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lt;개정 2019. 7. 2.&gt;</p> <p>1. 시설·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함께 쓸 수 있다.</p> <p>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p> <p>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p> <p>[제27조제2항제1호, 적용 2011. 2. 15.부터]</p>	
	<p>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목적</li> <li>3. 위치</li> <li>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li> <li>5. 교육과정 편성</li> <li>6. 교원의 정수</li> <li>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li> <li>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li> <li>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li> <li>10. 개설예정일</li> </ol>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p>	<p>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08. 3. 4.,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규칙</li> <li>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li> <li>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li> <li>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li> <li>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li> <li>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li> <li>7. 지적도 및 위치도</li> <li>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li>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li> </ol>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19.&gt;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p>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p>	<p>제12조의2(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법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8.]</p>

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p>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④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3. 25.]</p>	
	<p>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p> <p>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법인일 것</li> <li>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li> <li>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li> </ol>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인가 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p> <p>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할 것</p> <p>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p> <p>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p> <p>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p>	
	<p>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목적</li> <li>3. 설치자</li> <li>4. 위치</li> <li>5. 학칙</li> <li>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li> <li>7. 향후 2년간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li> <li>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li> </ol>	<p>제1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4. 7. 28.&gt;</p> <p>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08. 3. 4.,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칙</li> <li>2. 재정운영 현황표</li> <li>3.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li> <li>4.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li> <li>5. 향후 2년간 교육·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li> <li>6.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li> <li>7. 교원확보 계획서</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lt;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gt;</p>	<p>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 지적도 및 위치도 10.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19., 2013. 3. 23., 2014. 7. 28.&gt;</p>
	<p>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5. 11. 26.&gt; [본조신설 2014. 6. 30.]</p>	<p>제1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09.5.8,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lt;개정 2013.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li> <li>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li> <li>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t;신설 2013.12.30&gt;</p> <p>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12.30&gt;</p> <p>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gt;</p>	<p>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 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11.]</p> <p>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09. 8. 11.,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목적</li> <li>3. 설치자</li> <li>4. 위치</li> <li>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 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li> <li>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li> <li>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li> <li>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li> </ol>	<p>제14조(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li> <li>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li> <li>3.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li> <li>4. 지적도 및 위치도</li> </ol> <p>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9. 교원 확보계획</p> <p>10. 개교예정일</p> <p>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 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 되어야 한다.</p> <p>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 1항을 준용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 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 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 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 보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gt;</p> <p>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 획서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 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 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 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 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p>	<p>의 확인으로 같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 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 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12. 29.&gt;</p> <p>④ 삭제 &lt;2017. 12. 29.&gt; [전문개정 2014. 7. 28.]</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⑧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목적</li> <li>3. 설치자</li> <li>4. 위치</li> </ol> <p>[본조신설 2014. 6. 30.]</p>	<p>제14조의2(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3. 설치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치도</li> <li>나. 시설배치도</li> <li>다.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li> <li>라.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li> </ol>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p>
	<p>제37조 삭제 &lt;2008. 10. 20.&gt;</p>	
	<p>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 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lt;개정 2014. 6. 30.&gt;</p>	
	<p>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4. 6. 30.&gt;</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p> <p>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p>	
	<p>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 8. 11.&gt;</p> <p>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③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 방법 등) ①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p> <p>② 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8. 3. 4.,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li> <li>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 관리실</li> <li>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① 사내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누는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2019. 6.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한다)</li> <li>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li> <li>3. 사업장의 임직원</li> </ol>	<p>제16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p>
	<p>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② 삭제 &lt;2014. 12. 30.&gt;</p> <p>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gt;</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9. 8. 11.&gt;</p> <p>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p> <p>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p> <p>④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p> <p>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p> <p>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p> <p>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목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p> <p>③ 사내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에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해당 사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14. 12.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해당 사내대학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li> </ul> </li> <li>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li> <li>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li> </ol> <p>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lt;개정 2009. 8. 11.&gt;</p> <p>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lt;개정 2013. 11. 20.&gt;</p> <p>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쇄사유</li> <li>2. 폐쇄연월일</li> <li>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li> </ol> <p>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gt;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2019. 7. 2.&gt;</p>	
	<p>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lt;개정 2014. 6. 30.&gt;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p>	<p>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08. 3. 4., 2008. 9. 29., 2011. 1. 27., 2013. 3. 23., 2014. 7. 28.&gt;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p>	<p>3. 입학·퇴학 및 수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p>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p>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p>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p> <p>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p> <p>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19., 2013. 3. 23., 2014. 7. 28., 2017. 12. 29.&gt;</p> <p>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p> <p>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p> <p>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p> <p>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p> <p>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p> <p>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lt;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7. 28.&gt;</p> <p>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 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 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 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p> <p>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계인수서</li> <li>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li> <li>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li>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li> <li>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 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 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 약서의 사본</li> </ol> <p>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 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 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 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위치</li> <li>3. 교육과정</li> <li>4. 학습비</li> <li>5. 시설과 설비</li> <li>6. 평생교육사</li> </ol> <p>[본조신설 2014. 6. 30.]</p>	<p>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19., 2013. 3. 23., 2014. 7. 28., 2017. 12.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li> <li>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li> </ol> <p>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나. 운영규칙</li> </ol> </li> <li>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치도</li> <li>나. 시설배치도</li> <li>다. 운영규칙</li> <li>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li> </ol> </li> <li>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교육과정 편성표</li> <li>나. 운영규칙</li> </ol> </li> <li>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나. 운영규칙</li> </ol> </li> <li>5.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설·설비 현황표</li> <li>나. 시설배치도</li> </ol> </li> </ol>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 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2008. 6.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li> <li>2. 학교법인</li> <li>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li> </ol>	
	<p>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p>	<p>제1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p>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p>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목적</li> <li>3. 설치자</li> <li>4. 위치</li> <li>5. 학칙</li> <li>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li> <li>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계획</li> <li>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설비 확보계획</li> <li>9. 교원확보계획</li> <li>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li> <li>11.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li> <li>12. 개교예정일</li> </ol> <p>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p>	<p>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lt;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gt;</p> <p>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 8. 19., 2013. 3. 23.&gt;</p> <p>[제목개정 2008. 9. 29.]</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lt;개정 2008. 2. 29., 2008. 6. 5., 2008. 10. 20., 2013. 3. 23.&gt; [제목개정 2008. 6. 5.]</p>	
	<p>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p>	
	<p>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gt;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gt; [제목개정 2008. 6. 5.]</p>	
	<p>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8. 6. 5.&gt;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목개정 2008. 6. 5.]</p>	
	<p>제54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설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lt;개정 2008. 6. 5.&gt;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gt; [제목개정 2008. 6. 5.]</p>	
	<p>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t;개정 2008. 6. 5.&gt;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6. 5.&gt;</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12. 2. 29.&gt;</p> <p>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6. 5., 2013. 3. 23.&gt; [제목개정 2008. 6. 5.]</p> <p>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①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8. 6. 5.&gt;</p> <p>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8. 6. 5.&gt; [제목개정 2008. 6. 5.]</p> <p>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p>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p>용하되, 제43조제2항 본문 중 “2년 또는 4년 이상”은 “4년 이상”으로 본다. &lt;개정 2008. 6. 5.&gt;</p> <p>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lt;신설 2008. 6. 5.&gt;</p> <p>[제목개정 2008. 6. 5.]</p>	
	<p>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영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6. 5., 2019. 7. 2.&gt;</p> <p>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6. 5.&gt;</p> <p>[제목개정 2008. 6. 5.]</p>	
	<p>제59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편입학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lt;개정 2008. 6. 5.&gt;</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6. 5.&gt;</p> <p>③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8. 6. 5., 2013. 11. 20.&gt;</p> <p>④ 제62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08. 6. 5.]</p>	
	<p>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6. 5.&gt;</p> <p>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제목개정 2008. 6. 5.]</p>	
	<p>제61조(수업료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p>	<p>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받을 수 있다. &lt;개정 2008. 6. 5.&gt; ②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 6. 5.&gt;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p>	<p>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lt;개정 2008. 9. 29., 2013. 11. 22.&gt; [제목개정 2008. 9. 29.]</p>
<p>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p>	<p>제63조(재무·회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p>	<p>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lt;개정 2008. 9. 29., 2013. 11. 22.&gt; [제목개정 2008. 9. 29.]</p>
<p>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lt;개정 2011. 3. 29.&gt;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p>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p>	<p>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lt;개정 2014.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li> <li>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li> <li>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li> </ol> <p>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p>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p> <p>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08. 2. 29., 2008. 12. 3., 2010. 1. 27., 2014.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li> <li>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li> <li>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li> </ol>	<p>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 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p>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lt;개정 2014. 6. 30.&gt;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p>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p>	<p>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p>	<p>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7. 28.]</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p>	<p>5.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6. 30.]</p>	
	<p>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5. 11. 26.&gt; [본조신설 2014. 6. 30.]</p>	
	<p>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본조신설 2014. 6. 30.]</p>	
	<p>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본조신설 2014. 6. 30.]</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p>	
	<p>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p>	
	<p>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p>	
	<p>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p>	
	<p>제67조의2(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p>	
<p>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8.]</p>		
<p><b>제6장 문해교육</b></p>	<p><b>제6장 문해교육</b></p>	
<p>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8조(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독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4.1.28&gt;</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4.1.28&gt; [제목개정 2014.1.28]</p>	<p>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4. 6. 30.&gt;</p> <p>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4.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li> <li>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li> <li>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li> <li>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lt;개정 2014. 6. 30.&gt;</p>	
	<p>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p> <p>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li> <li>2. 목적</li> <li>3. 위치</li> <li>4. 과정별 학급수·정원·학습비</li> <li>5. 교육과정 편성</li> <li>6. 교원의 정수</li> <li>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li> </ol>	<p>제21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4. 7. 28.&gt;</p> <p>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치도</li> <li>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li> <li>3. 시설·설비·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제목개정 2014. 6. 30.]</p>	<p>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19., 2014. 7. 28., 2017. 12. 29.&gt;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4. 7. 28.&gt;</p>
	<p>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4. 6. 30., 2016. 8. 2.&gt;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p>	<p>제22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li> <li>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li> </ol> <p>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li> <li>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것</li> <li>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제목개정 2014. 6. 30.]</p>	<p>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lt;개정 2014. 7. 28.&gt;</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14. 7. 28.&gt;</p> <p>④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7. 28.&gt;</p> <p>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해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해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7. 28.&gt; [제목개정 2014. 7. 28.]</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 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li> <li>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 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 해교육센터” 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문해교 육센터(이하 “시·도문해교육 센터” 라 한다)</li> <li>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li> <li>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li> <li>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지 정하는 연수·교육 기관</li> </ol> <p>[본조신설 2016. 8. 2.]</p>	
	<p>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 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 정 2014. 6. 30.&gt;</p> <p>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6. 30.&gt;</p> <p>[제목개정 2014. 6. 30.]</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4.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li> <li>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li> <li>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lt;개정 2014. 6. 30.&gt;</p> <p>[제목개정 2014. 6. 30.]</p> <p>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 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6. 30.&gt;</p> <p>[제목개정 2014. 6. 30.]</p>	
<p>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li> <li>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li> <li>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li> </ol>	<p>제73조의 2(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li> <li>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li> <li>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li> <li>4.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및 지원 등</li> </ol>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5. 시·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p> <p>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본조신설 2016. 8. 2.]</p>	
	<p>제73조의3(시·도문해교육센터) ①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li> <li>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li> <li>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li> <li>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li> <li>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p>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8. 2.]</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4.1.28&gt; [제목개정 2014.1.28]</p>	<p>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gt; [제목개정 2014. 6. 30.]</p> <p>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4. 6. 30.&gt;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p>	<p>제2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7. 28.&gt;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그 확인을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19., 2017. 12. 29.&gt; ③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p> <p>제23조의2(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① 영 제75조제3항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 받으려면 해당 과정의 이수</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0. 12. 20., 2013. 3. 23., 2014. 6. 30.&gt;</p> <p>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4. 6. 30.&gt;</p> <p>[제목개정 2014. 6. 30.]</p>	<p>를 증명하는 서류를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7. 28.&gt;</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이수 내용이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7. 28.&gt;</p> <p>[본조신설 2011. 1. 27.] [제목개정 2014. 7. 28.]</p>
<p>제40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p> <p>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2. 3.]</p>	<p>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li> <li>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li> <li>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li> <li>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li> <li>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li> </ol>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p> <p>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8. 2.]</p> <p>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lt;개정 2014. 6. 30.&gt;</p> <p>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lt;개정 2014. 6. 30.&gt;</p> <p>[제목개정 2014. 6. 30.]</p>	
<p>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p>	<p>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p> <p>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lt;개정 2015. 3.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li> <li>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li> <li>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li> <li>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li> <li>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li> </ol> <p>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p>		
<p><b>제8장 보칙</b></p>	<p><b>제8장 보칙</b></p>	
<p>제42조(행정처분)</p> <p>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li> <li>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li> <li>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li> <li>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li>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li> </ol>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lt;신설 2015. 3. 27.&gt;</p>		
<p>제42조의 2(지도·감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li> <li>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li> </ol> <p>[본조신설 2015. 3. 27.]</p>	<p>제76조의2(지도·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3. 25.]</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16. 5.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li> <li>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li> </ol>		
<p>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gt;</p> <p>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lt;신설 2013. 5.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li> <li>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li> </ol> <p>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신설 2013. 5. 22.&gt; [제목개정 2013. 5. 22.]</p>	<p>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lt;2014. 6. 30.&gt;</p> <p>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lt;신설 2013. 11. 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li> <li>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li> </ol> <p>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신설 2014.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li> <li>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li> <li>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p> <p>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p> <p>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p> <p>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p> <p>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p> <p>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사무</p> <p>10.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p> <p>[제목개정 2013. 11. 20.]</p>	
<p>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lt;개정 2014. 1. 28., 2016. 2. 3.&gt;</p>		
<p>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7.]</p>		
<p>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13. 12. 30., 2015. 3. 27., 2016. 2.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li> <li>1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li> <li>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li> <li>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삭제 &lt;2018. 12. 18.&gt;</li> <li>④ 삭제 &lt;2018. 12. 18.&gt;</li> <li>⑤ 삭제 &lt;2018. 12. 18.&gt;</li> </ol>	<p>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9.]</p>	
	<p>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2. 9., 2015. 12. 31., 2017. 5.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li> </ol>	<p>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생 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014 년 1월 1일</p> <p>1의3. 삭제 &lt;2018. 12. 24.&gt;</p> <p>2. 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p> <p>3.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 준: 2014년 1월 1일</p> <p>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 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p> <p>5. 제39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 치기준: 2014년 1월 1일</p> <p>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 사 기준: 2014년 1월 1일</p> <p>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 원 기준: 2014년 1월 1일</p> <p>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 원 기준: 2016년 1월 1일</p> <p>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p> <p>7의4. 제47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p> <p>8.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 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p> <p>9.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2014년 1월 1일</p> <p>10. 제51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 가: 2014년 1월 1일</p> <p>11.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 준: 2014년 1월 1일</p> <p>1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p> <p>1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p>	<p>2. 제16조에 따른 검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p> <p>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 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lt;신설 2015. 12. 31.&gt;</p> <p>1. 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p> <p>2.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 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 년 1월 1일</p> <p>3. 제13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절차: 2016 년 1월 1일</p> <p>4. 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 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 년 1월 1일</p> <p>5. 제21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 절 차: 2016년 1월 1일</p> <p>6.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의 배치 기준 등: 2016년 1 월 1일</p> <p>7. 제23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 정 절차: 2016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4. 12. 31.]</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교원 등: 2014년 1월 1일</p> <p>1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p> <p>15.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 상: 2014년 1월 1일</p> <p>16.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 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p> <p>17.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 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p> <p>18. 제67조에 따른 지식·인력개 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p> <p>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lt;신설 2014. 12. 9., 2018. 12. 24.&gt;</p> <p>1.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p> <p>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 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p> <p>2. 제49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 시설의 신고절차 등: 2015년 1 월 1일</p> <p>3. 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 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 년 1월 1일</p> <p>4. 제52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p> <p>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p>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p> <p>6. 제58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2015년 1월 1일</p> <p>7. 제59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편입학 등: 2015년 1월 1일</p> <p>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p> <p>9. 제6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2015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p> <p>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li> </ol>	<p>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p> <p>&lt;개정 2008. 3. 4., 2008. 9. 29., 2013. 3. 23., 2013. 11.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li> <li>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li> <li>3.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li> <li>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li> </ol>



<p>평생교육법 [시행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p> <p>5.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p> <p>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p> <p>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p> <p>8.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p> <p>②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6. 3. 25., 2017. 5. 29.&gt;</p> <p>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p> <p>1의2.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p> <p>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p>	

<p>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p>	<p>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p>
	<p>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p> <p>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시설의 지정·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p> <p>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8.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9.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p> <p>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사무</p> <p>11.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p> <p>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p> <p>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p>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개정]
	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0.> [본조신설 2014. 6. 30.]	

## II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12.] [경기도조례 제5838호, 2018. 1. 12.,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031-820-05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 21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4.>

제2조(평생학습관 설치·지정과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경기교육도서관 중에서 지정·운영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5.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4.>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재학생의 입학금 및 학습비
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
4. 교재·교구 구입비
5.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신설 2018.1.12.>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 <개정 2018.1.12.>

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2.24.>

부칙 <제5838호,2018.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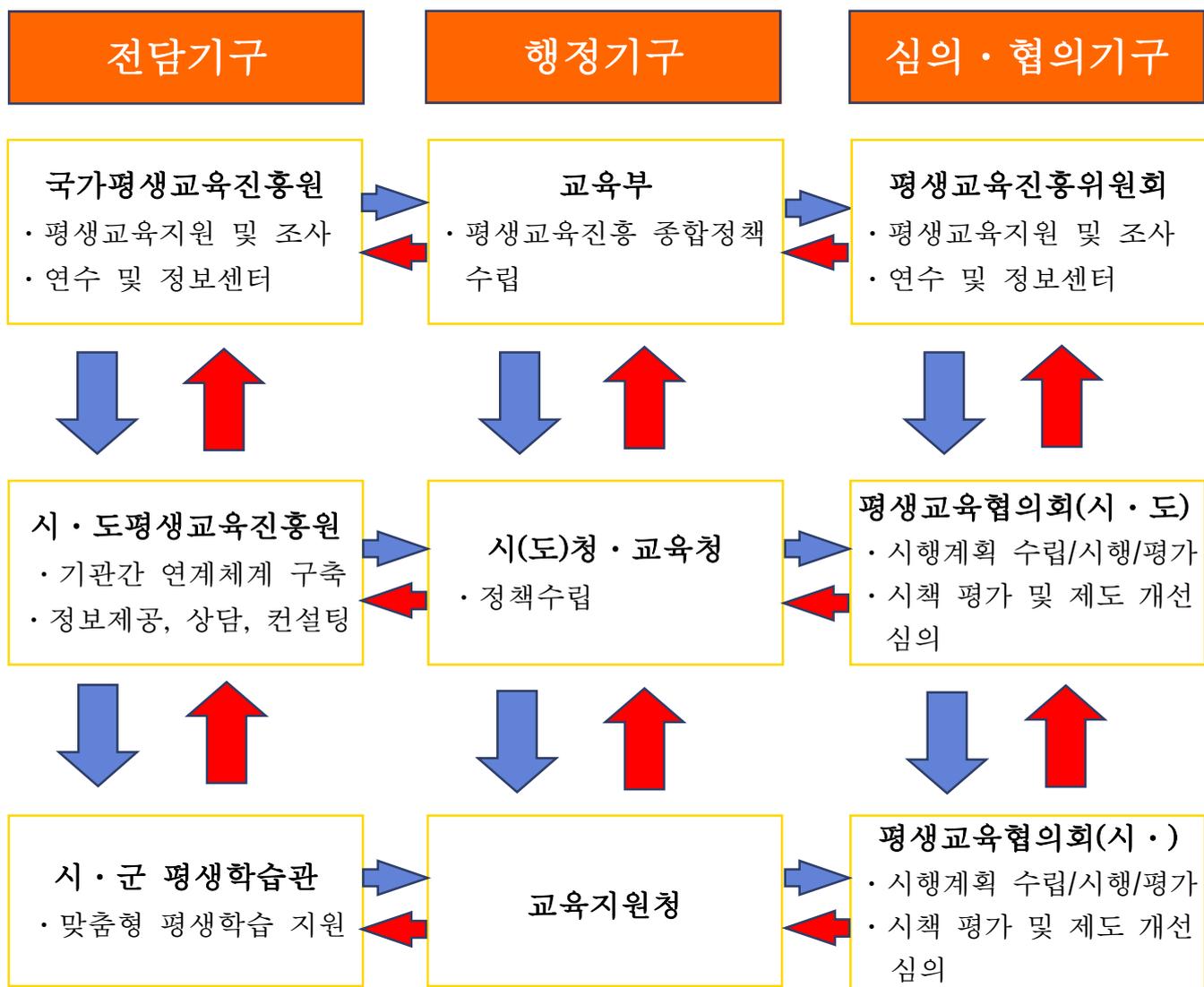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8장 기타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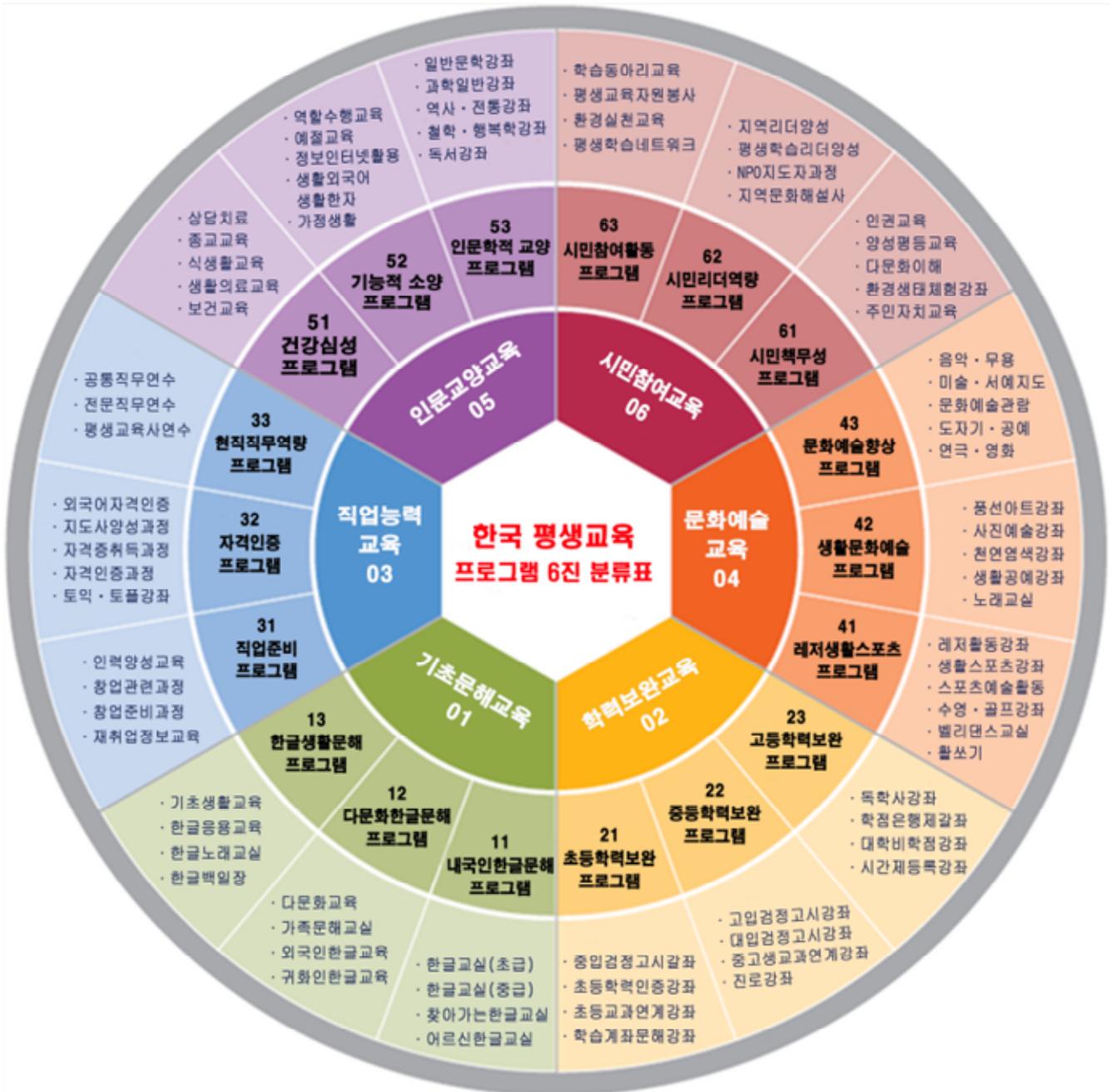


I 평생교육 체계도



## II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진화, 2009)란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누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범주화시키는 위계적 준거 틀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대한 정의와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규정하였음
- 단, 아래 그림의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대상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정의

6진 분류표	프로그램 정의
01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 및 활용이 목적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02 학력보완교육	학력조건과 인증이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03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 및 직무역량개발이 목적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04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이 목적으로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05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과 소양개발이 목적으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06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성 활용이 목적으로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유형 분류

6대영역	중분류명	정의 및 프로그램 예
1. 기초 문해 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11. 문자해득 프로그램	•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한글교실, 글 배우터,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프로그램, 모국어로 진행되는 한글교실, 새터민 한글사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야간 한국어공부방, 이주여성의 행복한 한국어교실
	12. 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 기초 생활 및 공동체 활동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체험을 통한 한글 교육, 삶을 여는 새터민 글쓰기와 화법,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부모 독서논술 지도, 코시안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라이프 스킬 코칭 스쿨)
	13. 문해학습계좌 프로그램	• 평생학습계좌제 인증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학력인정대비 계좌제반,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에서 취득하는 첫 자격증’
2. 학력 보완 교육	21.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초등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입검정고시과정



6대영역	증분류명	정의 및 프로그램 예
(학력 조건과 인증)	22.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li> </ul> 고입검정고시 과정, 대입검정고시 과정 중등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23.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li> </ul> 독학사강좌, 학점은행제강좌, 시간제등록강좌, 대학 비학점강좌
3. 직업 능력 교육 (직업 준비와 직무역량 개발)	31. 직업준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li> </ul> 간병사 양성, 내외적 이미지혁신을 통한 성공리더과정, 노인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 - 지키미, 독서글쓰기 사서도우미 교육, 찾아가는 문해교육 강사 및 실버말벗도우미 양성과정
	32. 자격인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li> </ul> 모래놀이치료사, 부동산 공경매 과정, 소비자 상담 전문가과정, 소외계층 미용자격증, 수산 전문가 평생학습, 신용경제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유제품 가공사 과정, 은퇴준비 지도사 과정, 장류산업전문가 양성(심화), 전자상거래 운영관리전문가양성과정, SAP ERP 전문가 과정, 모더레이터 과정
	33. 현직 직무역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li> </ul> 방과 후 활동 실무자 재교육 및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기초/심화), 전산 기업언어(회계)이해, 텔레마케터소양교육, EAP 아카데미 “근로자능력개발과정” “Employee Assistance, 창조적 파워 리더십과 역량향상을 위한 감정의 컨트롤과 마인드 경영코칭,
4. 문화 예술 교육 (문화 예술 향유와 활용)	41.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li> </ul> 다이어트댄스, 마장스키교실, 밀알 생활체조 교실, 밸리 댄스, 브라보 실버라이프 포크댄스, You & I 축구교실, 외국인 노동자 수영교실, 장애인 수영교실, 재즈발레댄스, 점핑클레이, 탁구교실, 토탈 댄스 교실, 펜싱교실, 프리테니스, 활력충전 몸치탈출실용댄스, 힙합, 타이치(태극권)
	42.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li> </ul> 리본 아트과정, 미니정원 만들기 과정, 생활도자기 만들기, 선물포장 및 꽃꽂이, 손으로 배우는 POP WORLD, 스킨트리밍, 아로마 천연제품, 아트플라워, 압화 공예, 야생화 분경 만들기, 유리공예, 은 점토공예, 전통매듭공예&폴리머 클레이, 한지공예, 종이공예, 천연화장품 [비누 만들기, 풍선아트, 흡사랑 공부방, DIY러브하우스, 북 아트, 와이어/비즈 공예활동, 포크아트(장식미술)]
	43.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 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li> </ul> 물레심화과정, 민요교실, 서예, 수묵화 교실, 야생화부, 연필초상화, 이지파스텔화, 입체조형, 애니메이션 교실, 도예문화교육, 전통목공예 교실, 칠보공예, 통영나전칠기교실, 한국화-풍물패 어울림, 화전 매기 한마당, 가야금 및 드럼교실, 월요플룻, 클래식기타, 목공, 전통서각, 전각·서각교실, 연극교실

6대영역	중분류명	정의 및 프로그램 예
<b>5. 인문 교양 교육</b> (교양 확장 및 소양 개발)	<b>51.</b> 건강심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인 안정을 촉진하고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b></li> </ul> 기체조교실, 뇌 체조와 웃음 건강교실, 생활수지침, 생활스피치웃음치료, 테라피, 스포츠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가족미술 심리지도, 원예치료, 치매 예방과정
	<b>52.</b> 생활소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b></li> </ul> 은퇴 후 생애설계교육, 생활코칭 / 멘토링, 스킬스트리밍, 인생3막과 10만 시간의 자유를 찾아서, 자녀를 위한 커리어 코칭, 자산관리, 21세기 여성리더교육, 택시 실용 영어 회화, 관광 일본어 회화, P.E.T 교실(부모교육),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 활용교육, 지역민컴퓨터교실
	<b>53.</b>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b></li> </ul> 동양철학과 오늘의 삶, 해피투게더 학습문화여행, 시 문예대학, 시랑 노래랑, 신비한 역사 속 펜! 펜! 문화세상, 신화와 현대문화, 세계문화 학습 여행, 실용문학,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b>6. 시민 참여 교육</b>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b>61.</b>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b></li> </ul> 결혼이민자 사회적응력향상프로그램, 공동체의식교육,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프로그램 “내 목소리로 세상에 여행을 떠나자”, 다문화가정문화체험, 문화 간 훈련을 통한 문화 이해교육, 새터민·다문화이해 교육, 유토피아를 꿈꾸는 우리의 “자연탐사대”
	<b>62.</b> 시민리더 역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b></li> </ul> 농촌지역 평생학습지도자 양성, 은퇴 실버 리더십 아카데미, 마을평생학습리더과정, 전통시장 CEO과정, 주민자치 리더십아카데미,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학습동아리 [자원 활동 디자이너]' 양성, 학습리더 500인 육성 프로그램, 평생교육강사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b>63.</b> 시민참여 활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b></li> </ul> 지역사회 관계형성 프로그램, 다문화 북 스타트 프로그램, 문화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도시 만들기), 반딧불대학, 지역 만들기 협동 실천,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데미, 학습투어 프로젝트



- 감수            서 기 관    조 성 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 기획            사 무 관    김 기 훈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 편집총괄      주 무 관    강 병 진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 주 무 관    여 기 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 주 무 관    문 민 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 제작, 편집    팀 장    백 승 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팀 장    이 광 훈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팀 장    구 현 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주 무 관    김 영 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 주 무 관    김 다 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 무 관    한 인 숙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 무 관    손 종 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주 무 관    김 일 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 무 관    조 태 숙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주 무 관    김 영 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 무 관    주 유 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 발행일 : 2019. 12.

○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